



75

2020 Spring

〈궈두언〉

04 | 한·일갈등의 뿌리 조정남

〈특집〉 한일갈등의 민족주의

12 한국의 영토-국경문제 연구에 대한 시론(試論)	이성환
34 후세 타츠지의 이념적 재평가	최운도
60 신우익의 등장과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탄생	석주희

〈일반논문〉

76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류석진
108 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강화전략 연구	송문석·황기식
142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과 그 특징 연구	안병삼ㆍ김수진
170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손영기

Minjok yeonku

Vol. 75

Articles

M	An Essay on Studying the Korean Territorial and Border Issues
M	Reevaluation of Husse Tatsuji's Ideology: Communist vs. Democrat
M	Formation of Shinuyoku and 'Everyday' Nationalism in Japan 60 Suk Juhee (Hallym University)
W	A Study on the Manifestation of Nationalism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a focus on the conflicts among and identities of Korea/China/Japan Netizens
M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Song Moonseok (Kyung Sung Universit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M	Analysis of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 School's School Songs in Japan
	An Byungsam (SahmYook university), Kim Sujin (SahmYook university)
M	A Study on the Present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ing to Multi-cultural Societies in Korea
	Son Younggi (Daegu Catholic University)

권두언

한·일갈등의 뿌리

조정남



한-일갈등의 뿌리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한·일갈등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기와 뿌리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원인의 추적 작업에서는 흔히 그것들의 진정한 원천으로 자리 잡은 내재적인 갈등 요인을 놓치기 쉽다. 이 글은이러한 한일갈등의 개별적인 내용과 원인을 찾아들기 전에 그들 간에 오래전부터내재되어온 의식갈등의 원류를 추적,이번 호 특집 개별 내용들의 마중물이되었으면 한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만큼 얽히고설킨 양국관계도 드물다.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수많은 마찰을 거듭해 왔고, 직접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타력으로 지배와 복종 관계를 청산하고서도, 여전히 서로 간의 경쟁과 시샘, 견제와 교류를 공존시키고 있는 양국. 이들 두 나라가 최근 과거 일제에 의한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직접적인 계기로 다시 전에 없던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형성된 한일 간의 긴장이 한고비를 넘긴 듯하나, 여전히 수면 아래서는 그 치열성을 낮추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일제의 한인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빗어진 한일 간 긴장의 핵심적 쟁점은 배상 판결이 1965년에 이미 체결된 한일협정에 위배 된다는 일본 측과, 당시의 협약사항이 정부 간 배상 책임의 종결이기는 하나, 이는 개인들의 개별적인 배상 책임까지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 측의 반발이 그 주된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이고 표피적인 명분이고, 그 내면적인

실체는 한일 간에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복잡한 갈등적인 요인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현재적 한일갈등의 내면 깊숙이 상존하는 본원적인 갈등 요인들을 의식갈등 의 뿌리에 초점을 맞춰 다음 몇 가지로 단순화해서 살피려 한다.

첫째, '패배의식의 내재화'가 한일 갈등구조의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민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패배의식이 양국 간 갈등을 만들어 내는 원천의 하나다. 한일 양국은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상대국으로부터의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패배의식의 완전한 극복을 이뤄내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국에 대한 긴장감과 내면적인 두려움이 그들 정부나 민중들의 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한일갈등의 뿌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상 최대의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의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대면 장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사안이든 간에 가장 먼저 과거 식민지피지배에 대한 기억과 함께 이에 대한 앙갚음 의식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한국인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 줄기를 언제나 가슴 속에 존치 시키면서, 그 강을 건너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교류와 대화의 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일본제 일용품을 즐겨 사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애착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 일본이 번안했거나 만들어 낸 언어, 문자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일본이 만들었거나, 일본에 의해 소개된 개념인 것을 거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한다. 일찍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근대화 작업을 선행한 일본이 먼저 개발한 여러 가지 근대적인 사고, 기준, 개념들이 여타 동양권에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여기에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일본의 뿌리를만드는데 한반도가 기여했던 과거만을 강조하고, 일찍 근대화한 일본으로부터의 문화유입은 애써 부인하려 한다. 이것은 다분히 한국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에서 만들어진 대항심리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한반도)에 대한 깊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지금도 일본정부나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패배의식의 내재화 정도는 생각 이상으로 크고 깊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對韓 관계에서 경험한 대표적인 패배는 두 차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오래전의 白村江전투에서와, 또하나는 1592년부터 시작되었던 임진왜란에서의 패배가 그것이다. 일본국 건국 전인663년 왜(倭)가 백제와 연합한 羅唐 연합군과의 전투는 사상 첫 외국과의 본격적인

전투로, 이 전투에서의 패배는 일본의 건국과 대외개방을 결과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패배의 충격은 대단했다. 그리고 이 전쟁 패배에 대한 기억은 그 후의 일본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은 치욕적 상처로 내재 되어 왔으며, 그것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한 수용(渡來人, 외래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함께 이의 일본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요시켰다. 두 번째의 패배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에서의 패배였다. 개별전투에서 서로가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이어온 이 싸움에서도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성 대첩' 등으로 이어지는 '3대 대첩'을 거치면서 결국 일본은 패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두 차례에 걸친 對韓戰에서의 패배는 1948년8월에 있은 태평양전쟁 패배로 1910년 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식민지지배가 타의에 의해 종식됨으로써, 다시 한번 對韓 패배의식을 뇌리에 되색일 수밖에 없었다. 진주만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이 총력을 기우린 사활적인 도발이었으며, 총력전이었기에 1945.8.15일의 패배선언은 단순한 한 전쟁의 패배 이상의 충격이자 절망이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이 패배를 통하여 가장 커다란 손실감을 맛본 것이 바로 '한반도의 상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배가 갖는 對韓 패배의식의 또 다른 뿌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또 현대 일본의 왜곡된 정체성을 만들어 낸 살아있는 상처이기도 했다.

이렇듯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백촌강, 임진왜란, 거기에 더해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와 그것이 만들어 낸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상 존재했던 과거사가 아니라, 다시 세계적 강국으로 일어선 현재의 일본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마음속의 아픈 기억이자, 한시도 잊지 못할 일본과 일본인들의 잠재적인 초조와 불안감의 발원 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일본은 강력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며, 화려하면서도 초라하고, 부유하면서도 여전히 궁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패배의식은 탈냉전의 현금의 국제정세 아래서도 일본과 일본인들이 국제사회나 대외관계에서의 그들의 처신을 떳떳하지도, 자주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항상 과거지향적이며 대외의존적이며 종속적으로 왜곡시키고 있기도 하다. 최근의 한일갈등 관계에서 보이는 일본의 태도 또한 이같은 그들 특유의 패배의식과 무관치 않음은 물론이다.

둘째, 한일 갈등구조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충적인 또 하나의 측면이 바로 '우월의식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며,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팽팽한 긴장으로 양국 사이에 계속되어왔고, 바로 이 같은 우월의식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일 갈등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예부터 중국에서 전래 된 대륙 문화가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열도로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문화의 뿌리가 상당 부분 한반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우월감은 당연하다. 그리고 문화 뿐 아니라, 고대 특히 백촌강전투 이후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이들 소위 '渡來人'들이 일본국 건설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인이라는 인간집단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渡來人' 즉 한반도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기원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천황가의 역사에서도 한반도의 존재는 역사학계는 물론 직전 천황 스스로가 직접 인정한 사실이기에, 이것이 가지는 한국의 우월의식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강력하다.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는 우월의식의 또 하나는 it 반도체 분야 등의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일본 추월 현상과도 깊이 관련된다. 특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의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앞지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영역에서의 일본 추월은 점점 격차를 넓혀가면서 한국의 우월의식을 배증시키고 있다. 한국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의 정점은 지리적 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약점을 가진 것에 더해, 빈번한 지진과 지반침하의 계속 등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일본열도가 갖는 취약성에 대해 한국이 갖는 상대적 우월감도 부인키 어렵다.

일본 또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월의식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으며 오히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커다란 무게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일본은 근대 문명의 전파자로서의 우월적 위치에서 한국은 그들을 따라 배우거나 모방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서구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온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앞선산업화을 이뤄냈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획득한 선진 기술 문명을 여타 동양권으로 전파하고 보급 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산업기술 영역뿐 아니라근대적인 정신문화의 수용과 발전에서도 동양권에서 일본은 앞장 서 있었으며, 각종 근대적인 개념이나 이론 또한 가장 먼저 번역하고 재정립하여 이를 동양권으로 전파하고 전승하는 전승국의 역할을 수행, 그 대상은 한반도는 물론 기존 동양문명의 발상지이자 종주국이던 중국에까지 미쳤다. 제2차대전 패배 후에도 일본은 전후의 비무장 원칙을 자국의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하여, 폐허 상태로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비약했고, 세계 정상의 기술 강국으로서의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첨단 기술력의 확보와 유지는 후발 산업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모방의 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기에, 바로 이 같은 면에서 일본이 가지는 우월의식의 실질적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우월의식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들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배였으며, 이는 그들의 가지는 우월의식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1910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태평양전쟁 패배 후 한국의 독립에 이르기까지이어졌다. 한반도 지배를 위해 조선충독부를 설치, 명실상부한 내선일체를 달성키 위한 갖가지 동화정책을 펼쳤고, 드디어는 한국인을 '日本國民'화하여 국가, 국민, 영토 모두를 일본화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제의 식민통치는 광복 이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남아 있다. 패전으로 식민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 한 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때 식민지 지배국으로서의 강한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더하여, 현재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가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현상에서 더한층 힘을 받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가깝게 느끼는 '近親性'을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근친성이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갈등의 뿌리로 작동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인종적으로 서로가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기반을 두고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서로가 퍽 닮아 있는 보기 드문 이웃이다.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가까움은 두 나라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이상으로 서로를 혈연적인 친족관계로 마져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사이가 늘상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사이로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사이도 바로이 같은 근친성에서 상호 간의 평화로움보다는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픈'식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갈등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일 간 서로가 서로에게 퍽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이상의 바람이나,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바라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 됨과 동시에 항상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훨씬 더한 상대방에 대한 시샘과 경쟁적인 심리를 배양시키는 환경도 만들어 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근친성에 대한 한국의 집착도 만만치 않다. 주로 역사적, 지리적 접근으로 이뤄지는

일본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은 대단히 오래되고 끈질긴 것이기도 하다. 먼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흘러간 사람과 문물에 의하여 성립된 나라로써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원류와 같은, 혹은 형과 같은 혈연적인 친근성을 가진 나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열도는 원래 한반도와 연결된 땅이었으나, 그 후 지진 등 지각 변동의 결과로 떨어져 나간 즉 한반도라는 모체로부터 분리 이탈된 섬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열도의 모태는 한반도이며, 그렇기에 일본의 고향은 한반도라는 것이며, 그만큼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모자와 같은 근친성, 본류와 방류와 같은 동근성으로 규정 지울수 있기에 일본은 한국보다는 부족하고, 뒤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반도는 일본에 대륙의 문물을 전해 준 전달자이며 한국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기술, 종교 등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의 여러 가지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듯 제반 영역에서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남다른 가까움과 친밀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일간에 만들어진 근친성이 오랫동안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 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즉 부정적인 저주의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으며, 그의 연장선상에서 현금에 나타나고 있는 양국 간 갈등구조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뿌리로 파악할 수 있다.

근친성의 저주를 먼저 발동시킨 것은 제국일본에서 였다. 일본은 한반도 강점기에 이른바 '日鮮同祖論'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그것으로 그들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한반도의 고대 민족 즉 韓人은 일본인들의 선조들이 사용하던 彌生 토기를 사용한 집단으로 일본의 고사에서 輯人으로 지칭된 인종집단이라는 것이며, 일본인의 선조인 倭人과 한반도의 선조인 韓人은 같은 부류라는 것이 일제에 의해 조작된 일선동조론의출발이다. 이들 천손민족론자들은 고대 일본열도 주변이 잡다한 민족적 요소가 천손민족으로 동화 융합되어 황실을 종가로 받드는 민족집단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국 천손민족은 잡다한 민족집단을 포괄한 복성민족이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정책을 통한 일본의 이민족 지배는 이미 과거에 형성되었던 천손민족적 관계의 회복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우리 민족과 조선 민족은 본래의 요소가 같았을 뿐 아니라, 서로간의 통합과정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틀림없다는 埔原和郎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선동조론에는 위의 천손민족론 이외에도 도래인설, 기마민족설, 혼혈설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본인들의 원류를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일본인들의 생성이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고향이 한반도이거나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진출이나, 심지어는 그곳의 복속도 고향 땅의 회복을 위한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는 억지 논리로 조작되기도 했다. 바로 이 점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 '근친성 저주'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다(조정남, 〈일본의 민족문제〉(교양사, 1999) 참조).

세계대전 패배에서 분연히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 한국과는 비교조차되지 않을 정도의 번영을 유지해 오던 일본. 그 일본이 최근 들어 저 멀리 아득한 거리에서 허우적거리며 있어야 할 한국이 발걸음을 빨리하면서 자기들과의 거리를 차곡차곡 좁혀오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키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에 의한 충격에 일본은 당황해했고,이에 대해 보다 원천적이고 항구적인 한국과의 거리 설정을 모색하려 안간힘을 쓰지않을 수 없었다. 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며 잃어버린 20년을 마감하고 새롭게 '전후총결산' 작업의 마지막 종결자로 자처하고 나선 아베수상으로서는 최근의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그 구실을 찾으려 했고, 반도체 생산원료의 한국으로의 수출 통제라고 하는 화살을 날리는 과격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반도체 부품의 공급제한 조치를 통해 한국이현재 국제적인 무역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IT분야의 성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한국자체의 능력이 아니며,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품 조립국의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로 삼으로 하는 한편, 그동안 이 분야에서의 시장이탈에 실망하고 있던 자국민을 다독거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IT기술의 선도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일석이조의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집

한일갈등의 민족주의

한국의 영토-국경문제 연구에 대한 시론(試論)	이성환
후세 타츠지의 이념적 재평가	최운도
신우익의 등장과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탄생	석주희



한국의 영토

- 국경문제 연구에 대한 시론(試論)

이 성 환 (계명대학교) 〈shl@kmu.ac.kr〉



국문요약

17세기 이전 한국은 북방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고, 동쪽 섬들에 대해서는 소유가 다소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 1699년(숙종 25년) 일본과의 외교적 합의(울릉도쟁계합의)와 1712년(숙종 38년)에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를 통하여 압록강, 토문강(송화강 지류), 독도를 경계로 하는 영토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근대민족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편입하고, 1909년 간도(현재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영유권을 중국에 인정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적 통일성을 파괴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은 식민지로 전략하면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간도문제와 독도문제는 발생과전개과정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영토문제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은레벨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백두산정계비는 국경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울릉도쟁계합의는 독도문제 연구에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독도문제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울릉도쟁계합의는 울릉도 영유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울릉도쟁계합의가 독도 영유

권을 포함하고 있다면, 한국의 독도연구에서는 왜 이 점을 부각시키지 않는가. 또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는 무주지 선점의 부정 및 편입에 대한 통고의무 불이행 외에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없는가.

주제어: 영토문제, 독도, 간도, 울릉도쟁계, 조일국경체제

I. 서 론

영토문제에 있어서 한국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국가나 민족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영토문제는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영토문 제는 독도문제만이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간도(연변조선족자치주)문제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 영토문제라는 관점에서 간도문제와 독도문제를 포괄적으로 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 또 독도와 간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시기적으로 근대민족국가로 의 이행기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독도와 간도라는 영토문제가 한국의 근대국민국가의 성립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크게 두 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 영토문제의 관련성을 간도 및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후반부는 다소 역설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인가라는 라는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분석한다. 독도에 관련한 자료가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한국의 입장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가 적다는 것이 영유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으로 조선인의 독도 왕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형사일 뿐이다). 그리고 영토문제 및 독도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¹⁾ 필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김호동과 감석민은 숙종조 시대에 발생한 독도문제와 간도문제의 상호 관련성의 검토를 시도했다(김호동 2009; 감석민 2006).

Ⅱ.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 영토문제

1. 근대민족국가와 영토적 통일성

그러면 한국의 영토-국경은 언제 획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어디 까지 일까. 17세기 이전 한국은 북방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동쪽 섬들에 대해서는 소유가 다소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93년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안용복이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울릉도쟁계(일본에서는 죽도일건 [竹島—件]이라 함)라 불리는 치열한 외교교섭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699년(숙종 25년) '朝日' 간에 일종의 외교적 합의(울릉도쟁계합의)가 성립하여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땅으로 인정되었다(이성환 외 2016). 한편 북방지역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국인의 범월문제가 빈발하자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양국의 국경을 명확히 하였다(이성환 2009). 정계비에는 동쪽은 토문강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한다(東爲土門 西爲鴨綠)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압록강— 백두산정계비—토문강으로 이어지는 경계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유로 확정된 것이다. 종래 다소 애매하게 존재했던 국경이 명확히 확정됨으로써 한국은 영토적 통일성(territorial integrity)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 이행기에 접어들어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국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영토적 통일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노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세기에 들어와 두만강 이북에 있는 간도(間島)에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土門江)'의 해석을 둘러싸고 중국과 논란이 일었다. 조선은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지류)로 간주하고 그 이남의 두만강 이북지역의 사잇섬(間島)을 조선 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중국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여 두만강 이북에 있는 간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조중 간의 논란은 1885년과 1887년에 두 번의 국경회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간도 영유권 다툼은 계속되었다(이성환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대한제국)정부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는 등 간도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직후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정부는 간도에 대한 관할권을 일본에 넘겨주어야 했다. 일본은 이를 배경으로 1907년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중국과 간도 영유권 교섭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본은, 1909년 9월, 만주에서의 철도와 광산

등의 이권과 교환하는 형태로 중국과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노영돈 1995, 75-77). 이 협약으로 두만강 이북의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축소되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정부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한편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 이후 일본은 1877년 당시 일본의 국가최고통치기관인 태정관의 지령(指令)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했다(태정관지령).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영유권이 다소 모호한 상태에 있는 주변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하여 근대 영토국가의 토대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취해진 것이었다(柳原正治 2012, 46-50). 일본은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홋카이도와 쿠릴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확정하고, 1876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를, 1879년에는 중국과 양속(兩屬)관계 있던 오키나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센카쿠를 편입하여 국경을 확정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본은 쿠릴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등 영유권이 다소 애매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반면에,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자국의 영토에서 배제하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이 명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청일전쟁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일본은 울릉도에서의 거주권을 요구하고 1901년에는 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울릉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갔다(堀和生 1987, 108). 당시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입도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조선 정부는 칙령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1905년 2월 러일전쟁 와중에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여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을 부정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사실을 그 다음해 3월에야 알 수 있었다. 시마네 현의 독도(다케시마) 조사단이 풍랑을 피해 울릉도에 들러 심흥택 울릉군수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알게 된 것이다. 이른바 독도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일본의 한국 통감부가 설치되는 등 일본의 '보호국'이 된 상태에서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 영토적 통일성의 붕괴와 민족국가형성의 실패

근대국가의 형성은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명확한 영토에 대해 정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시작된다. 유럽에서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조약에서 영토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면서 세계는 타자와 구분되는 배타적 영역을 단위로 하는 국가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 영토를 토대로 국민(민족) 만들기가 이루어지면서 근대민족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형성된다. 이탈리아 통일기에 회자되었던 "이탈리아는 만들어졌다. 이제부터는 이탈리아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경구는 이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민족국가의 가장기본적인 토대는 국경의 확정을 통한 영토적 통일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Diener 2102, 33-40).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은 지속적인 국경형성의 과정이며, 근대 민족국가를 영토국가라 하는 이유이다. 근대민족국가가 영토(국경) 만들기와 민족(국민) 만들기를 축으로 하면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영토문제가 쉽게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인한 간도의 중국 영토로의 편입과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으로 한국은 영토적 통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근대민족국가가 영토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간도와 독도의 분리는 한국의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토대를 붕괴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병합을 통해 한국이 식민지로 전략함으로써 한국의 근대 민족국가 형성은 실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병합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간도를 분리하여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영토적 통일성 위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는, '종족 민족주의(tribal nationalism)'(한나 아렌트 2006, 427; Hannah Arendt 1973, 227)를 형성해온 한국은 근대 국민-민족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영토적 통일성이 붕괴되면서 민족 국가의 형성도 미완의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근대 중국이 할양과 조계지 설치 등을 통해 영토적 통일성을 상실하면서 반식민지 상태로 전략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岩下哲典 외 2014, 178-179).

근대민족국가가 영토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에서 독도문제와 간도문제가 민족주의와 강하게 결합된 형태로 노정되고 있는 것은 근대민족국가의 형성단계에서 실패했던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반동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간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란은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맥락 속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토문제를 매개로 발현되고 있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이행기에 실패했던 영토적 통일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화 내지는 국민국가화의 재등장으로 볼 수 있다(임지현 2004. 33). 한국이 독도문제를 민족문제, 역사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 것이다. 또 담화문에서 우리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한 것은, 독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토적 통일성을 갖춘 온전한 근대민족국민국가를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3. 영토(간도, 독도)의 분리와 식민지화

간도 포기와 독도 편입을 통해 일본은 근대민족국가 형성단계에 있던 한국의 영토적 통일성을 해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왜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고 있던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넘겨주었는가? 이러한 일본의 조처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한국의 영토적 통일성을 파괴함으로써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토대를 붕괴시켰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한 8개월 후에 한국을 '보호국'화했으며, 간도를 조선의 영토에서 분리하여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꼭 1년 후에 한국을 식민지화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시기적으로 한국의 영토로부터 독도와 간도의 분리와 일본의한국 식민지화 조처는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한일병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합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유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국을 병합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영토의 일부인 간도까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한국 병합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일병합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더라도 한국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했을 것이다(이성환 2000; 최덕규 2009). 간도협약 체결직전에 일본 정부가 '조선 병합에 관한 건(1909년 7월)'을 각의 결정 한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일본의 간도 포기는 대륙(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확보라는 의미가 있다. 일본이 만주에서의 철도와 광산 등 이른바 '만주 5안건 협약'과 '간도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간도와 만주의 권익을 교환하는 형태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에 대한 권익확보를 위해 한국 영토의 일부를 중국에 양여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의적으로 편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그 28년 후인 1905년 갑자기독도를 편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1905년 1월 28일의 일본 각의(각료 회의) 결정문은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 메이지 36년(1903)이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시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진 바이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소속으로"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독도는 무주지였으며, 2년 전부터 나카이 요자부로가 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이다(최철영

2019, 104-110).

그러나 무주지 선점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본질적인 이유는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부각된 독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즉 나카이 요사부로가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편입을 요청했을 때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조선 영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입에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외무성의 야마자 엔지로 정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전쟁관련자들은 "(독도의) 영토편입을 급히 필요로 하며,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에 대단히 요긴하다.… 서둘러 청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김수희 외 2014, 400-412). 그 결과가 위의 각의결정이다. 러일전쟁이 한국 식민지화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전쟁기간 중에 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영토적 측면에서 한국 식민지화의 전초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전후의 탈식민지화와 영토문제

한국의 근대민족국가 형성은 근대 이행기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침략과 피침략의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도와 간도는 한국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결국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초래했다.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간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는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맥락 속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岩下哲典 2014, 127).

이 문제는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태평양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동아시아에 형성되어 있던 일본 중심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아시아 태평양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일평화조약의 기초가 된 카이로선언은 대만 및 팽호도(膨湖島)의 중국으로의 반환과 한국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일전쟁이후 동아시아에 형성되었던 구체제를 청산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냉전을 배경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후체제는 일본 중심의 구체제를 청산하지 못했다. 미일동맹관계 속에서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국가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중심의 구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했던 독도와 간도, 다오위다오(센카쿠) 등 동아시 아의 영토문제는 미해결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 구체제의 최대의 피해자였던 중국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체결에 초청받지 못했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샌프란 시스코 조약 제2조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를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기는 했으나, 귀속처(歸屬處)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독도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에 관한한 일본 중심의 구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Dower 2012).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규정함으로써 한일 간에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2차대전 이전의 구체제에서 일본에 의해 발생한 독도문제와 간도문제도 재검토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법사관(國際法史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는 제1차계대전을 경계로 그 이전을 식민지화 시대, 그 이후를 비식민지화 시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 행위는 완전히 위법적인 것이 된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헌장하에서 강제규범(jus cogens)으로 확립된 비식민지화 원칙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확립(유엔헌장 1조 2항, 11, 12, 13장, 그리고 1960년의 식민지독립부여 선언을 거쳐)으로 그러한 후진 식민국가가 (행한-인용자) 국제연맹 시대(戰間期)에서의 새로운 식민지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급적 무효화(사실상 de facto의 승인의 적용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가 의무로 되었다."고 주장한다(広瀬善男 2007, 294).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까지의 식민지정책에 대해서는 "비식민지화의 법리 효과로는 원천적 무효는 아니고 유효성을 인정한 위에 청산(문제에 따라서는 보상을 동반함)의 효과에 머무른다.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한일협약 등은 국제법상의 효과는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내지 협약 등은 유효하지만 보상을 포함한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같은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독도는 19세기를 통해 제1차세계대전까지 유효한 국제법리였던 강국 일본의 식민지화 활동에 의한 일본의 실효적 점유 행위의 결과가 법적으로 긍정되어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인용자)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새로운 비식민지화 법리의 전면적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広瀬善男 2007, 295). 일본이 청일전 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대만과 사할린을 원소유국에게 돌려준 것도 제2차세계대전 후의 비식민지화 조치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역시 비식민지화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그의 논지 전개는 단순한 국제법적 논리만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가미한 국제법사관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법적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비식민화의 개념이 영토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법학계의 논의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간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간도에 대해서는 1962년과 1964년에 북한과 중국이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과 조중변계의정 서를 체결하여 새로운 국경을 형성함으로써 영토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봐야 하며, 간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와 현재적 주권 문제를 분리하더라도 여전히 정리해야할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아직 미해결상태에 있는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영토문제를 분석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Ⅲ. 독도문제의 전개와 문제제기-독도는 일본 땅인가?

1.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

조선 정부는 1417년 쇄환정책(일본에서는 공도 (空島) 정책이라 함)을 실시하여 섬(울릉도, 독도 등)에 민간인의 출입과 거주를 금했다. 왜구의 노략질로부터 섬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1625년(寬永 2) 경 일본 막부는 돗토리 번의 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일종의 어업허가인 울릉도 도항을 허락했다. 그 후 두 집안은 한 해씩 번갈아가며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 등 어렵활동을 했다. 1693년 4월 18일 오야 가(家)의 선단이 울릉도에서 조선인들과 조우하여 안용복과 박어둔을 인질로 연행했다.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묵인하게 되면 울릉도에서 자기들의 어로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울릉도에서의 어업을 독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던 그들은 조선인의 어업권 침범의 증거로 삼기 위해 안용복 일행을 납치한 것이었다.

안용복의 납치사건을 접한 막부는 1693(元禄6)년 5월 조선과의 외교교섭 창구인 쓰시마번에 1) 인질 두 명을 조선에 송환하고, 2) 앞으로 조선 어민이 울릉도에 오지 못하도록 조선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3) 조선으로부터 답신이 오면 막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라고 지시했다(울릉도쟁계의 전개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술은 岡田卓己 2018에 의함). 쓰시마는 12월 부산 초량의 왜관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을 인도하고, 막부의 지시대로 "조선 어민이 최근 본국(일본)의 죽도(울릉도)에 와서 몰래 어로를 하고 있다. …… 앞으로 결코 그 섬에 조선(貴国) 어민이나 어선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계를 조선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① 조선(弊邦)은 엄중하게 해금(海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경지 울릉도(弊境之蔚陵島, 조선 땅 울릉도)'에 왕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② (조선의) 어선이 '귀계 죽도(貴界竹島, 일본 땅 죽도)'에 들어가 송환의 수고를

끼쳤다, 앞으로 조선 어민의 도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답서를 보냈다. 즉 조선 땅울릉도에는 도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 땅 죽도에 안용복 일행의 조선 어민이 도항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대립을 피하고자 '조선의 울릉도'와 '일본의 죽도'라는 표현을 병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섬(二島)이 있는 듯 한 모호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쓰시마 측은 '폐경지 울릉도'라는 표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폐경지 울릉도'가 삭제되면 '귀계 죽도'만 남게 되어 죽도(울릉도)는 일본 땅이 되어버릴 것을 우려한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울릉도'와 '일본의 죽도'가 동일 섬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쓰시마의 의도도 명확해 진 것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대응도 보다 엄격해 지게 된다.

쓰시마는 1694년(元禄7) 윤 5월 '울릉도'라는 명칭을 삭제하기 위한 교섭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부산 왜관에 교섭단을 파견했다. 쓰시마의 요구에 대해 조선 측은 이전의 애매한 내용의 서계를 반환받고, 조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간을 9월 쓰시마 측에 전달했다.

① 우리 어민이 어로를 한 땅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울릉도이다. 대나무가 많아죽도(竹島)라 불리기도 한다. 한 개의 섬(一島)이지만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一島二名). ②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울진 현에 소속되어 있다. 도해에는 바람과 파도(風涛)의 위험이 있고 예전에 그곳의 백성을 본토로 이주시켜 공도(空島)로 하였다. 이 섬의 상세한 지형과 거주의 흔적, 토지의 생산물 등은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興地勝覽)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 ③ 귀국이 우리나라 국경을 침섭(侵渉我境)하여 우리나라 백성을 연행(拘執)한 잘못(失態)이 있다.

조선의 이 주장은 그 후 교섭의 주요 기반이 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쓰시마 측은 이러한 내용의 조선 답서를 접수하려 하지 않았다. 10월 6일 교섭 상대인 조선의 접위관(接慰官)이 한양으로 돌아가고, 쓰시마 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교섭은 중단되었다. 쓰시마 측은 답서를 부산의 왜관에 두고 사본만을 가지고 철수했다. 이후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을 은거해 있던 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真, 宗義倫의 아버지)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는 은거 후 刑部大輔라는 계명을 사용했다). 1695년(元綠 8) 5월 쓰시마는 조선과의 교섭 재개를 위해 다시 교섭단을 파견했으나, 조선의 완강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후, 쓰시마에서는 조선의 주장을 받이들여야 한다는 온건파와 일본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파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에 쓰시마는 그 간의 교섭 과정을 막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로 한다. 형부대보(刑部大輔)는

1695년 10월 에도에 가서 조선과의 교섭 경위와 자기의 의견을 담은 구상서를 막부에 제출했다.

2. 한일 간 국경의 성립: '울릉도쟁계합의'

쓰시마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막부는 노중(老中) 아베 붕고노카미(阿部豊後守)를 중심으로 쓰시마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형부대보의 대리인 격인 쓰시마의 가로(家老) 히라타 나오에몽(平田直右衛門)을 호출하여, "울릉도와 죽도는 같은 섬인가. …그 방향에 또 섬이 있다고 들었는가" 등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히라타는 조선이 주장하는 대로 "죽도는 울릉도"이며, "죽도(竹島, 울릉도) 근처에는 송도(松島, 독도)라는 섬이 있다. …돗토리 번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조일 간의 교섭과정에서 기록상으로는 송도(독도)가 처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송도(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막부는 곧바로 돗토리 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관해 조회를 했다. 돗토리 번은 다음날,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송도(松島, 독도)라는 섬이 있으며, 두 섬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를 통해 막부는 독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연하면, 일본정부는 17세기 중엽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일본 외무성 죽도문제 10포인트),2) 적어도 기록상으로 막부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이 때(1695년)이기 때문에, 17세기 중엽의 독도 영유권 확립론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막부는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 교환한 서계, 쓰시마의 의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대한 돗토리 번의 사실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인의 울릉도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조선정부에 전달하도록 쓰시마에 지시했다. 막부는 그 이유를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는 본래 조선의 울릉도이며, 일본보다는 조선에 더 가깝고, 일본인은 단지 전복(鮑)채취를 하러 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울릉도는 조선 땅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과 조선 사이에 전개되었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싼 논란(울릉도쟁계)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울릉도의 영유를 의도하고 있던 쓰시마는 막부의 결정에 불만을 가졌으나, 따르지 않을

²⁾ 출처: http://bit.ly/2Pes3Mr (검색일: 2019. 12. 23.).

수 없었다. 그래서 쓰시마는 막부의 명령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달과정에서 조선과의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그 결과 막부와 조선 정부 사이의 최종 결착은 1699년까지 약 3년이나 지연된다.

쓰시마는 10월 16일 조선에서 건너 온 두 명의 역관(卞延郁同知와 宋裕養判事)에게 막부의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구두로 전하고, 두 통의 각서를 건넸다. 조선 역관은 구두(口上)와 일본어로 작성된 구상서(口上之覚)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한문(真文)으로 쓴 정식 서면을 요구해 받은 것이다. 12월 19일 막부는 쓰시마로부터 조선 역관에게 도해금지령을 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1697년 1월 10일 두 역관이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막부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약 1년이 지난 후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도해금지령을 접수하고,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명의로 막부의 결정에 대한 사의와 함께 울릉도는 여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땅(鬱島之爲我地輿圖所載)이라는 내용의 답서를 보냈다. 쓰시마에서 보내온 문서에는 도해금지의 사실만 있고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울릉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위해 답서를 보낸 것이다. 쓰시마는 조선의 답서에 울릉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이를 삭제해줄 것을 다시 강하게 요청했으나, 조선 정부는 거절했다. 쓰시마는 울릉도를 삭제하고 죽도(竹島, 독도)라는 명칭을 남겨 두려했으나, 조선은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의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조선의 답서는 7월 17일 막부에 전달되었다. 막부는 조선 정부가 보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쓰시마에 조선과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막부의 지시에 따라 쓰시마의 형부대보는 1699년 3월 21일 조선 예조 참의 앞으로 서계와 함께 구상서를 보냈다. 서계는 조선정부의 회신을 막부에 보고했으며 막부의 뜻을 따라 답서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구상서에는 "울릉도는 조선 땅이며, 일본인의 울릉도도해를 금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즉 울릉도는 조선 땅이므로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그리고 10월 19일 쓰시마는 위의 내용을 조선정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막부에 보고했다. 이로써 안용복 납치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귀속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조선의 주장을 일본이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가 성립한 것이다. 정부 간의 외교적 합의에 의해 한일 간의 국경(영유권)이 확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크다. 약 6년간에 걸친 국경 교섭의 결과 도출된 합의로서 조일 양국을 구속하는 실질적인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필자는 '울릉도쟁계합의'라 했다(이성환 2019, 212-214).

3. 메이지정부의 '울릉도쟁계합의'의 승계: 태정관지령

메이지정부는 국가재정확립을 위해 1874년 지적편찬사업을 시작한다. 땅의 소유와 경계를 밝히는 지적편찬사업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경계(국경)를 명확히 하게 된다. 그일환으로 내무성은 1876년 시마네 현에 동해에 있는 섬에 대해 조회를 한다. 시마네 현은 이에 편승하여 막부시대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를 부정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무성에 제시했다(이성환 외 2016, 147-154). 이에 내무성은 울릉도쟁계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울릉도쟁계합의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최고통치기구인 태정관에 영토에 관련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내무성은 시마네 현의 보고를 받은 후 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조사했을까. 내무성은 그 이유를 "시마네 현으로부터 별지(「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明治九年十月十六日)」)와 같이 문의가 있었고 ·······판도(版圖)의 취사(取捨)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이성환 외 2016, 289). 내무성으로서는 지적 편찬을 위해시마네 현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고,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 같은 시기 일본은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등에 대한 편입조치를취하면서 국경을 획정해 가고 있었는데, 내무성의 검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결과 내무성은 "겐로쿠 12(1699)년에 이르러 대체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인용자〕 문서왕복이 끝나 〔죽도 외 일도는-인용자〕 본방(本邦, 일본)과 관계없는 것으로되었으나,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건을 (태정관에-인용자) 문의한다"고 밝혔다(이성환 외 2016, 289). 바꿔 말하면, 내무성은 1699년 조일 간의 울릉도쟁계합의를 국가적으로 승계할 것을 태정관에 상신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의연원을 전적으로 울릉도쟁계합의에 의존하고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무성의 요청을 받은 태정관이 1877년 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 천명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명확히 했다. 태정관지령이울릉도쟁계합의에서 울릉도로만 언급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라 명기함으로써울릉도쟁계합의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있다. 울릉도쟁계에서 막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었으나, 조선과의 교섭과정 등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독도의 존재가 태정관지령을 통해 분명히 표현된 것이다. 또 태정관지령이 전적으로 울릉도쟁계합의를 승계했다는 사실은 1699년의 조일간의 국제적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이 태정관지령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가장 감추고 싶어

한다. 한국 측에서 수년 전에 일본 외무성에 태정관지령의 취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으나, 태정관지령의 존재는 인정을 하면서도 '검토중"'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 뉴스 2016/11/20),³⁾

이 태정관지령은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의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독도 영유권문제 연구에서 획기적 발견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태정관 지령에 대한연구는 큰 진전이 없었고,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령문 그 자체만이강조될 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자는 태정관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고, 태정관은당시 일본의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할하는 '국가최고통치기관(The Supreme Council of State)'이라고 규정한바 있다(1885년 내각제도의 성립과 함께 태정관은 폐지)(이성환2016). 그리고 지령은 형식적으로는 태정관이 발포하는 포고(布告), 달(達, 또는 布達)보다는 하위 법령에 속하나, 법령의 형식이 정비되지 않은 당시의 법령체계에서는지령도 내용에 따라서는 포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문제와 관련한이 태정관지령은 전국적 의미를 가진 포고(법률)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밝혔다(이성환2016).

4. '조일국경체제'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따른 권원의 상충

이상의 기술에서,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를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성립을 통해 17세기 말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개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에서 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정관지령은 1699년 의 울릉도쟁계합의라는 조일 간의 국제적 합의를 일본정부가 국내법령으로 수용(adoption) 하여 계속해서 지켜가려는 국가의지의 표현인 것이다(이성환 2019a, 158).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태정관지령을 울릉도쟁계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자기규율적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s)로서 국제법상 의미를 가지는 조치, 즉 역외적 효과를 낳는 국내법이라고 할 수 있다(村上太郎 2000, 103).

울릉도쟁계합의와 이를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성립으로 일본은 조선과의 경계(국경)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한 것이 된다. 이를 '조일(朝日)국경(조약)체제'라 불러도 좋을 것이며, 핵심은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를 지켜간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체제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때까지 유효하게 작동, 유지된다. 국경은 국가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 성립되면 당사국 간에 새로운

³⁾ 출처: http://m.blog.daum.net/hearo9mars/4610417 (검색일: 2020. 01. 03.).

합의가 없는 한 영속된다는 이른바 '국경신성의 원칙(principle of sanctity of border)의 지배를 받는다. 일본은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의 폐기를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정관지령 성립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경 문제는 완결된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위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된다.

덧붙여,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다(池水敏 2016, 82). 태정관지령의 문언적 표현만을 보면 이러한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연원이 울릉도쟁계합의에 있고, 태정관지령이 이를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문언 해석에만 매달린 편협한 주장이다. 조선과 영유권 다툼을 벌였던 일본이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면, 독도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조선)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현재 독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국제법이나 역사적 측면을 일탈한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1905년 2월 일본이 러일전쟁에 편승하여 독도를 편입한 것이 그 예이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천명하고 겨우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부당하게 독도를 편입했다. 그러면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이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는 시점까지 국제법적으로는 울릉도쟁계합의가, 일본의 국내법적으로는 태정관지령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진 독도편입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각의결정, 그리고 이에 기초한 시마네현 고시는 법적효력 및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각의 결정이나 시마네 현 고시가 실질적인 조약에 해당하는 울릉도쟁계합의와 법률적 성격을 가진 태정관지령을 법리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가 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일반 법원칙과, 국경신성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각의 결정과 시마네 현 고시는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설령,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후 일본 정부가 나카이 요사부로에게 어업권을 허가하는 등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더라도(김영수 2019), 이는 조선의 법적 권원 위에 취해진 일시적 점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법적 권원(conventional title)과 일본의 실효적 점유 지배(effective possession)가 상충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도시환 외 2019, 210-213). 이럴 경우 문제가되는 것은, 조선이 이미 존재하는 권원을 포기하거나 권원의 이양을 묵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행위가 새로운 권원을 설립할 수 있는가이다.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분쟁에서 새로운 실효적 행위가, 이양에 대한 묵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존재하는 법적권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ICJ는 카메룬의 조약상의 권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가 주장하는 약 20년 간의 실효지배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너무 짧은 기간(20년)"(in any event far too short, even according to the theory relied on by it)이기 때문에 카메룬의 권원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ICJ의 판결을 원용하면, 일본의 독도 편입과 실효적 지배는 정당한 권원의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아가 일본이 1699년 이후 줄곧 독도의한국 영유를 승인한 이상, 역사적 응고이론을 원용하더라도(응고이론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1905년 이후 1910년까지의 5년이라는짧은 기간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겠다(박현진 2013, 114; ICJ Reports 1992, Paras.45 & 62). 오히려 응고이론을 적용한다면, 300년 이상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해온 일본의 행위가 권원의 유기 또는 포기(abandonment, dereliction, renunciation)에 해당한다. 일본의 승인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이 역사적으로 응고 (historical consolidation)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지적이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일본 외무성 죽도문제 10포인트).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 적이 없으며, 또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 편입 시점까지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일본의 독도편입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시환 편 2019, 219).

Ⅳ. 결론 및 문제제기

1693년부터 1699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울릉도 및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된 외교 교섭의 결과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울릉도쟁계합의). 그리고 1877년 일본은 태정관지령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그러면 한일 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국경교섭의

결과물인 이 울릉도쟁계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논의는 이 합의를 국경조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것이 양국에 대해 구속력있는 합의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다(최철영 외 2018). (필자는 구속력있는 합의를 국경조약이라 했으나, 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 '울릉도쟁계합의'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독도문제연구에서는 이 합의에 대해 현재적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명칭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울릉도쟁계와 죽도(울릉도)일건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합의를 울릉도에만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정리한 외무성의 '죽도문제 10포인트'에서는 죽도(울릉도)일건을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교섭"이라 규정하고, 죽도(독도)에 대한도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의울릉도쟁계 연구도 대체적으로 울릉도로 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울릉도쟁계합의를 승계한 태정관지령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국가적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울릉도쟁계합의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케우치 사토시와 박지영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울릉도쟁계합의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池水敏 2016, 80-81; 박지영 2017, 385). 울릉도쟁계합의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울릉도쟁계합의로 완결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전근대기에 형성된 역사적 사실이 근대국제법상의 영토 영유의 판단재료로 유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전근대의 역사적 사실을 근대이후의 국가관계, 국제질서에 그대로 투영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물론 근대이행기에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화이(華夷)질서가 국제법질서 또는 조약시스템이라 불리는 서양적 근대적 질서로 변모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라는 전근대기에이루어진 조일 간의 합의를 현대 조약법의 정의에 입각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데 무리가 없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17세기의 한일 간의 외교 관행과 문서를 현대 조약법의 틀에 맞추기란 쉽지 않으며, 17세기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환된 문서를 현대 국제법에 대입해 조약여부를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며, 그러한 방법론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17세기의 문서는 17세기의 관행과 법체계에 맞게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법을 발견하여 이를 적용규범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과연 당시에 동북아시아에 국제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및 PCIJ와 ICJ 판례 등에 비추어 과거에 국가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존중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의 합의 방식 등이 오늘 날의 국제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성립된 양국 간의 합의의 법적 효과는 존중되기 때문에 전근대적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서부 사하라 사건, 나미비아 사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도서분쟁 등의 예에서도 국가 간 합의 및 조약상의 권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이러한 예는 조선과 중국의 영유권 교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울릉도 쟁계합의와 거의 같은 시기인 1712년에 건립된 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가르는 백두산정계비는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국경조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중 간에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두 번에 걸쳐 국경담판을 벌인 사실과, 1906년 이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조선을 대신하여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중국과 국경교섭을 벌인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간도영유권 교섭은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현재도 민간 및 학계 일부에서는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전근대의 역사적 사실이 근대 국제법에서 의미를 상실한 것이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서길수 2009, 110-135).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대 국제법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독도문제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하는 두 번의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와 이를 승계하여 취한 일본의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s)로서의 태정관지령이다. 울릉도쟁계합의가 양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이며,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일방적 행위이기는 하나 울릉도쟁계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국제법적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즉 역외적 효과를 낳는 국내법령인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한국의 국경 및 독도 영유권 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18세기 이후 불가분의 조선 영토로 인정되었던 간도와 독도가 20세기 초 일본의 조처로 한반도로부터 분리되어 조선의 영토적 통일성이 붕괴되었다. 이처럼 독도문제와 간도문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왜 같은 레벨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백두산정계비는 국경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

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쟁계합의는 독도문제 연구에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재료로서 태정관지령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태정관지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법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울릉도쟁계합의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독도문제에서 울릉도쟁계합의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무엇인가?

셋째, 일본은 울릉도쟁계합의에서 인정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또 울릉도쟁계합의를 파기한 적도 없다(울릉도 영유권도 이 합의에의해 확인됨), 그러면 울릉도쟁계합의에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일본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또 한국은 이에 대해 왜 반론하지 않는가?

넷째,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서 한국은 주로 무주지 선점론 및 편입에 대한 통고의무 불이행 등을 중심으로 비판을 가해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한국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이지만) 일본의 독도 편입의 실체를 인정한 위에 조선의 법적 권원과 일본의 실효적 지배의 상충문제로 파악하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강석민. 2006. 18세기 조선의 영토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 김수희·송휘영. 2014. 일본의 독도강점을 기록화한 나카이 요자부로 문서 해제와 자료소개. 독도연구 17.
- 김영수. 2019.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 의 조직과 운영. 독도연구 26.
- 김호동. 2009.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 94.
- 노영돈. 1995.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40(2).
- 도시환 편, 2019, 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동북아역사재단,
- 박지영. 2017. 일본 산인 지방민과 울릉도 독도 도해금지령에 대하여. 독도연구 23.
- 박현진. 2014. 영토분쟁과 권원 간 위계-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지배의 권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59(3).
-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여유당.
-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1).
- _____. 2016. 태정관과 '태정관지령'은 무엇인가?-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연구 20.
- 이성환·오카다다카시·송휘영. 2016. 일본태정관과 독도. 도서출판 지성인.
- _____. 2019.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 26.
- _____. 2019a.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에 대한 반론. 국제법학회논총 64(2).
- 임지현,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국경, 휴머니스트,
-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 한국사연구 145.
- 최철영. 2019. 무주지 선점론과 국제법접 권원에 대한 평가. 도시환편. 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역사공간.
- 최철영·유미림. 2018.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64(2).
-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一. 中央公論社.

- 村上太郎、2000、他者規律的一方的行為の国際法上の対抗力、一橋論叢 124(1)、
- 岩下哲典 외. 2014. 東アジアのボーダーを考える: 歴史 國境 認識. 右文書院.
- 岡田卓己. 2018. 元禄竹島一件(鬱陵島争界)における 幕府の政策決定過程に関する研究: 対馬藩家臣の役割を中心として、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柳原正治. 2012. 幕末期・明治初期の'領域'概念に関する一考察. 現代国際法の思想と構造 I 東信堂.
- 堀和生、1987、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號、東京: 緑蔭書房、
- 広瀬善男. 2007. 国際法からみた日韓併合と竹島の領有権. 明治学院大学法学研究 81.
- Arendt, Hanna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vest Book.
- Diener, a c. and Hagen Joshu. 2012. Borde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Dower, John W. 2014. The San Francisco System: Past, Present, Future in U.S.-Japan-China Rela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12(2).
- Lands,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ICJ Reports. 1992. Paras. 45 & 62.
- 일본 외무성 죽도문제 10포인트. 출처: http://bit.ly/2Pes3Mr (검색일: 2019. 12. 23.).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투고일: 2020.01.13.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0.

| Abstract |

An Essay on Studying the Korean Territorial and Border Issues

Lee Sunghwan (keimyung University)

Before the 17th century, the border between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and China was unclear, and the ownership of eastern islands was indefinite. Through the diplomatic agreement with Japan (Ulleungdo Jaenggye Agreement) in 1699 (2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and the Baekdusan National Boundary Monument built in 1712 (38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e territory was defined with its border formed by Amnok River (Yalu River), Tomun River (branch of the Songhua River), and Dokdo. However,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into a modern nation-state, Japan incorporated Dokdo into its own territory in 1905 and admitted China's claims to Gando in 1909, thereby destroying the territorial unity of Joseon. As an extension of that, Joseon degenerated into a colony and failed to form a modern nation-state. As such, the issues of Gando and Dokdo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occurrence and development process. Nonetheless, these two are not discussed at the same level in the Korean territorial issue. While the Baekdusan National Boundary Monument is discussed in terms of border treaty, the Ulleungdo Janggye Agreement is neglected in the studies of the Dokdo issue, Moreover, the following questions can be raised in studying the Dokdo issue. Is the Ulleungdo Janggye Agreement only on the dominium of Ulleungdo? If the Ulleungdo Janggye Agreement includes the dominium of Dokdo, why is this not emphasized in the studies of Dokdo in Korea? Furthermore, isn't there any other logic to criticize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to its territory in 1905, aside from the issue of terra nullius occupation and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notify about incorporation, which raises theoretical controversies?.

(Key words) Territorial issue, Dokdo, Gando, Ulleungdo Jaenggy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tween Joseon and Japan

후세 타츠지의 이념적 재평가* - 공산주의자인가 민주주의자인가?

최 운 도 (동북아역사재단) (wdchoi@nahf.or.kr)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일본인 선들러'라고 부르는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조선민중들과 관계는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가했다가 구속된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한 변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졌다.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시작된 대정민주주의 시기의 일본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들은 후세의 활동과 일체화되어 있었다. 그의 운동이 급진적이고 좌익적 성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국제사회에 유포되었던 사회혁명의 조류와 일본사회에서 진행된 시민운동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활동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인간의 양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민중을 위해 살겠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러한 성격은 후세의 가족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변호사가 아니라 급진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한 변호사로 결론내리고 있다.

주제어: 2.8독립선언, 관동대지진, 일본인 쉰들러, 대정민주주의, 후세 다츠지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사업(NAHF-2019-기획연구-34)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

I. 서론

200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건국훈장 애족장은 5가지 건국훈장 중에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 당시 외국인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은 이들은 44인에 달하였으나 그 중에 일본인은 한명도 없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를 찾아내고 건국훈장까지 받도록 한 데는 정준영이라는 한 개인의 공이 크다. 그는 10여년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는 정부에 건국헌장 서훈을 신청했다. 쉽게될 것 같았던 서훈신청은 3년간 계속되었고 시기상조라던 평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4년 서훈이 결정되었다. 한국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80-1953). 훈장은 그의 외손자인 오오이시 스스무(大石進)1) 일본평론사 사장에게 전달되었다.

이 글은 후세 다츠지를 소개하기 보다는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받게 된 이유는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는 그와조선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소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었던 그가 '조선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조선인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오늘날 우리들의 친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세 차례가 서훈을 미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일제의 군국주의와 전쟁 속에서 조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그는 어떤 인물로 비쳐졌을까? 후세와 당시 조선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볼수록 이러한 점들은 더욱 더 궁금해진다. 그를 이해하게 되면 그는 더욱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올것이다.

이 글에서는 후세와 조선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후세의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나 법리에 대한 입장, 혹은 그의 사상에 대한 규명은 논외로 한다. 여기에서는 그와 조선인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에 집중한다. 일본에서는 전기 형식으로 후세와 조선인들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大石進 2010; 後藤守彦 2010; 布施柑治, 황선희 역 2003; 金一勉 1974; 正木ひろし 1954)이 있고, 그의 일대기를 기록들과 함께

¹⁾ 오오이시 스스무(大石進)는 1935년 동경에서 출생하였다. 후세의 외손자로써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후세 아래에서 성장하였고, 어머니 (후세의 장녀), 아내와 함께 외조모인 후세 미츠코가 후세의 노후를 돌봐주었다. 후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으며, 후세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수령하였다. 『법률시보』의 편집장을 거쳐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평론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였다.

검정하는 대작(森正 2014)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조선인들의 관계를 소개하는 연구들(이규수 2003, 2010; 이형낭 2010; 오오이시 스스무 2010)과 조선인들 관련 그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들(김창록 2015; 이경주 2010), 그리고 그의 톨스토이 사상관련 연구(이문영 2016)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후세의 서훈을 전후로 이루어진 만큼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의 서훈이 연기된 이유, 지금까지 후세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일본에서 좌익 변호사로 알려졌던 그의 행적과 조선공산당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세를 한일 역사화해의 가교로 삼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친구'로 알려졌던 후세에 대한 이해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과연 공산주의자였을까?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II장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조선과 후세의 관계를 소개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만큼 간략히소개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그의 삶을 통해 후세와 조선인들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있었던 이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장은 일본인 변호사로서의 그의 활동을 소개한다. 그는 공산주의자였을까? IV장은 그의 활동 배경이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일본사회를 살펴본다. 왜 그는 조선인들의 편에 섰을까? V장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관계를 통해 쉰들러적인 행동의 근원을 찾아본다.

Ⅱ. 후세 다츠지와 조선, 조선인

1. 후세의 조선인 변호 시작: 2.8 독립선언,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

1918년 여름, 일본에서 쌀소동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위 잘나가던 형사 변호사 후세의 인생 뿐 아니라 조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세는 활동의 중심을 인권변호에서 계급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해인 1919년 오후 2시 간다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 (현재 在日本韓國YMCA會館에 해당)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 독립선언이 있었다. 당시 600여명의 유학생이 참가하였고 그 중에서 60여명이 체포되었다. 1920년 6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선인유학생수가 682명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後藤守彦 2010). 이들 중 11명의 피고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후세를 방문하여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다. 1심을 맡은 다른 변호사들은 식민지배를 전제로 감형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후세는 조선민족의 존엄을 주장

하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변호를 하였다. 이로써 후세는 조선 청년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大石進 외 2010). 당시 출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최팔용과 백관수 등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원조한다고 하면서어째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원조하지 않는가(布施辰治 1947)"라고 질문함으로써 검사를 난처하게 만들었다(이형낭 2010, 194). 후세로서는 최초의 조선인 변호였다. 후세는 이후 3.1운동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체포된 조선인 유학생들도 변호하였다.

해방 후 후세는 공동집필한 『운명의 승리자 박열』 서문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으로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취조를 받았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후세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평전을 쓴 모리 타다시(森正 2014)는 "조선합병 당시, 이동재라는 남자가 찾아와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것이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다... 그리고 〈신조선〉에 게재"되었다는 후세의 진술에 대해 달리 해석하고 있다. 후세는 1911년에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필화사건과 혼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동 재를 만나 자신의 글을 기고했다고 하는 〈신조선〉은 1919년 11월 발간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1911년은 강제병합 이듬해로 독립운동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1운동 이후인 1919년 11월 이후일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일본인으로서 그러한 글을 쓰고 필화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후세는 1923년 잡지 "아카하다(赤旗)" (공산당 기관지 赤旗와는 상관없음)²⁾의 창간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합병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한국병합을 분명하게 비판하였다. "일한의 병합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이면의 실체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특히 조선민족에 대한 착취와 압박..."이라 하면서 그 끝에 "조선민중의 해방운동에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바친다"고 함으로써 조선인과의 연대에 대한 분명한 결의를 보여주었다(布施辰治 1923; 後藤守彦 2010).

²⁾ 잡지 『赤旗 (아카하타)』는 1922년 창립된 제1차 일본공산당의 당원들에 의해 발행된 합법적인 이론기관지였다. 이에 비해,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신문 『赤旗』는 치안유지법이 존재하던 1928년 지하기관지로 발행되지 시작한 신문으로 1935년 정간되었다. 당시에는 신문명을 '셋키'라고 발음하였다. 1945년 패전 후 GHQ에 의해 공산당이 합법화되면서 '아카하타'라는 발음으로 개발행되기 시작하였다.

2. 관동대지진과 박열·가네코 후미코 대역사건

후세가 첫 번째 조선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날부터 군대가 학살을 시작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결국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조선인 6,000명, 중국인 700명이상이 학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살에 대한 은폐공작이 국가에 의해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군, 경의 학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강덕상 1999). 9월 20일 자유법조단은 후세의 제창으로 제1회 지진재해 대책회의를 열고 의제 중 하나로 조선인 피해의진상 및 책임에 관한 건을 포함시켜 내무성과 경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10월이 되자 조선인 유학생들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로 결정하였고, 후세를 조선인 박해사실조사단에 고문격으로 추대하였다. 후세는 조선동포추도회에서 연설하면서 학살을 격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그 학살소식을 후세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선동포 3인이 있었음을 밝혔다. 당시 조선인들과 유학생들이 얼마나 후세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지진대학살은 그것(계급전)에 놀아난 일본민족이 가슴으로부터 그 잘못을 추도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타적 국민성의 폭로였다고 생각한다(後藤守彦 2010, 102)"고 주장하였다.

관동대지진과 관련하여 조선인들에 대한 후세의 깊은 애정과 연민의 결정판은 부부로 살았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대역사건에 대한 변호에서 나타난다. 9월 3일 이들 둘은 함께 검거되었는데 황태자의 결혼식장에 폭탄을 투여하려고 계획했다는 혐의였다. 그들은 치안경찰법과 폭발물관리법 위반 용의로 기소되었고, 황태자 암살 모의의대역죄가 날조되어 1926년부터 대심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었다. 1924년 2월 26일 1회 공판이 시작되자 후세는 조선의 예복을 입고 진술하겠다는 박열의 요구에 대한 대심원의인정받아 냈다. 후세는 이 사건을 무죄라고 변호하면서 이 둘에 대한 옥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김일면은 후세와 박열의 법정투쟁은 '일본의 재판사상 예가 없는 경우'라고평가한 바 있다(金一勉 1974).

그러나 박열은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며칠 후 무기형으로 감형되었고, 가네코는 감형에 불만을 품고 독방의 이불을 찢어 끈을 만든 다음 목매어 자살했다. 박열은 아키타(秋田)형무소에서 23년 복역 후 1945년 10월 풀려났다. 3) 박열이 아키타 형무소에서 출소할 때는 후세가 마중을 나갔다. 또한 박열의 '열열한 옹호자'였던 후세는 광복

³⁾ 박열은 출소 후 1946년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다음해 동맹을 재일조선 거류민단으로 개명하고 단장이 되었으나 1949년 민단 단장선거에 패배하였다.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하나 전쟁 때 북으로 연행되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1974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후 박열의 요청으로 1946년 '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私稿)'을 조선인들과 공동 집필하였다. 이는 박열이 위원장으로 있던 건국촉진회의 대학강좌에서 교재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이경주 2019, 81). 그리고 후세는 '운명의 승리자 박열'이라는 제목의 박열 전기도출판하였다. 카네코에 대해서는 사후 뒤처리를 마다하지 않았다.형무소 뒤뜰에 묻혀있던가네코의 유해를 후세가 발굴하여 자기 집에 안치하였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향인 문경의산기슭에 이장해 주었다.

3. 조선 방문과 의혈단, 조선공산당

관동대지진 발생 직전인 1923년에는 7월 후세는 최초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4) 이 방문에는 3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총독부에 대한 2차 폭파작전 미수로 1922년 12월에 검거된 의열단원 김시현의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한 것이었으며, 5) 둘째는 형평사의 경남지부 창립기념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고, 셋째는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의 사상단체인 북성회의 조선 내 하계 순회강연에 변사로 초대받아 연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형낭 2010). 후세는 짧은 기간 동안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여 변호와 연설 등을 이어나갔다.

1926년에는 후세의 두 번째 조선방문이 이루어졌다. 궁삼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민들이 동양척식회사를 상대로 농지 반환 요구 투쟁을 시작하게 되자, 후세는 그 소유권확인 소송의 조사를 위해 조선을 직접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의 방해로 공소에 이르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에노 자치회관에서 열린 조선사정강연회에서 후세는 동양척식회사가 조선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이규수 2010, 2003).

1927년 9월13일에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조선공산당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피고는 박헌영 외 101명이었다. 9월 20일 김형두는 후세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의 변호사들은 연약하고 견해가 없어서 민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선생께서 왕림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해 10월 후세는 3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⁴⁾ 후세는 1923년, 1926년, 1927년 10월과 12월 모두 4차례 조선을 방문한다.

⁵⁾ 의혈단원의 단장은 약산 김원봉이었다, 김시현은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국내로 잠입, 조선총독부에 대한 파괴와 암살 등을 계획하던 중 체포되었다. 의혈단은 1919년 길림성 파호문외 에서 13명이 결의하고 창단하였다가 1920년 본부를 북경으로 이전하고 1925년까지 활동하였다. 1923년 1월에는 '조선혁명선언'(신채호 작)을 발표하였는데, 후세는 이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1924년 동경의 황거입구에 있는 불심검문에 걸려 폭탄 2발을 투척하였다가 불발에 그친 니쥬바시 (二重橋)폭탄사건의 주범인 의혈단원 김지섭도 후세가 변호하였다.

1929년에는 후세와 최승만이 발기인대표로, 재일조선인 노동산업희생자 구원회를 결성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을 변호하였고, 1930년에서 아이치현에서 철도공사에 종사하던 조선인노동자들이 임금미지급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관헌이 탄압함으로서 발생한 노동쟁의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었다. 1931년 1월에 발생한 유종환, 유록종 형제의 사복형사살해사건을 맡아 1932년의 배심재판에서 변호하였는데, 이들둘에게 살의가 없었음을 인정시킴으로써 살인죄를 상해치사죄로 낮추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후세는 자신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변호사자격증을 상실하거나 투옥되기 시작하는 1933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조선인들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水野直樹 1983; 이규수 2003).

4. 조선인과의 만남: 유년기와 청년기

후세는 농촌문제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일회에 그친 것을 보면 조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후세와 조선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세 가지 설명이 존재한다. 첫째는 후세가 고향 에비타촌(蛇田村)에서 보낸 소년기에 형성된 조선 인식이다(後藤守彦 2010; 大石進 2010). 어린 시절부터 한문교육을 통해 조선과 중국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는데 후세의 철학 중의 일부분으로 자주 거론되는 묵가의 사상도 이 시기에 습득된 것이다. 그리고 15세 무렵,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시기 조선에 파병되었다가 귀환한 병사로부터 농민군에 대한 추격과 학살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것을 듣고,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조선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다고한다. 두 번째 계기는 메이지 대학 시기 조선인 학생들과의 조우다. 그는 대학시절 조선과 청국에서 온 학생들과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그러나 졸업 이후까지 이어진 친구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後藤守彦 2010).

이상의 두 가지 설명으로는 후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속한 조선인들과의 연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기 않다. 후세 자신도 "나는 어릴 적 시골에 있었을 때부터 조선인에 대해 일본의 동정이라고 할까, 가엽게 여기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추억일 뿐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後藤守彦 2010, 73)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조선인들에 대한 연대는 민중과 약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사명감, 혹은 이들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생겨난 연대의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세 번째 설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오이시(大石進 2010)는 후세가

조선을 방문을 계기로 대만 농민과 일본 농민들 보다 훨씬 더 학대받고 있는 것은 조선 식민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후세는 그 경험을 통해 일본 인으로서의 원죄를 인정하고 약자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를 다지게 되었을 것이다. 후세는 '자기혁명의 고백' 이전에도 차별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체화하고 몸을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나, 식민지 주민들의 차별과 어려운 생활을 실감하면서 그들과의 연대의 신념을 더욱 깊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Ⅲ.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의 일생

1. 유년 시절

후세는 이시노마키(石卷)시의 농촌마을 헤비타촌(蛇田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지로(栄次郎)는 데릴사위로 들어가 후세가의 당주가 된 사람이었다. 그 지위에 묶여 자유로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대신 집에서 책을 읽고 시사문제에 통달하여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몸집이 작았던 후세는 밖에서 노는 대신 아버지의 말상대를 하면서 노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한테 들은 다나카 쇼오조오 (田中正造)의 이야기 (광산공해 사건을 천황에 직소해서 해결한 아시오광독사건)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고. 아버지는 "돈만 밝히고 성공에 집착하는 입신출세는 악덕함의 산물이야. 이런 걸 좇는 것은 참으로 저속한 일이지(布施相治 2003, 34)"라는 말을 자주하였고후세는 이 말을 가슴깊이 새겼다.

소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후세를 이시노마키 시에 있던 고등과에 진학시키는 대신 헤비타에 있던 양명학 한학숙에 입학을 시켰다. 고등과 진학에는 비용 문제도 있었고, 그 곳의 지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집 가족과 어울리는 사이에 세간의 영리주의나 입신출세에 물들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布施柑治 2003, 37). 후세의 외손자 오오이시는 농촌 헤비타촌은 후세의 농민성의 근원이며 그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평했다. 한학숙에서 후세는 묵자를 만났다. 묵자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매우 흡사하여 후세가 앞으로 접하게 될 기독교와도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大石進 2012, 17). 후세는 성장하면서 헤비타의 개업의이자 젊은 양의사인 아베 다쓰고로를 만나면서 기독교와 철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도쿄의 니콜라이당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으며, 20세기의 대사업은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진화론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감명받았다.

2. 동경행과 변호사로의 길: "괘관(掛冠)의 사(辭)"

후세는 18세 때인 1899년 4월, 입신출세가 아니라 철학공부를 위해 동경으로 간다고하면서 상경하여, 동경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달 만에 자퇴하고 간다의 니콜라이 신학교에 입학하지만 교장의 위선적 행위를 목격하고는 또 다시자퇴한 후 같은 해에 명치법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02년 7월 명치법률학교를졸업하고 11월에는 어렵기로 소문난 판·검사 등용시험에 단번에 5위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사법관시보로 우츠노미야 지방재판소에 부임하였고 1903년 4월 검사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연이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상사와의관계가 불편해 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남편의 외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후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살인미수로 기소장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썼다. 검사 대리 임명 후 6개월 만인 1903년 8월의 일이다. 동시에 그는 '직업을 버리며(掛冠の辞)'라는 글을 지방지에 게재하면서, 검사라는 직책은 늑대와도 같은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후 그는 변호사의 길을 시작하였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그리고 곧이어 형사변호사로의 명성을 쌓아나갔다.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후세에게 하나의 큰 계기가 찾아왔다. 1904년 8월 평민신문에 게재된 톨스토이의 반전론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다. 당시는 러일전쟁이 발발이면에 대정민주주의의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당시 10년에 걸쳐 톨스토이 사상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의 평화사상 뿐 아니라 무정부주의도 일본사회에 확산되었다. 후세는 톨스토이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톨스토이의 '인류구제 처방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자적으로 보통선거 운동을 시작하였다. 후세가 톨스토이에 끌린 또 하나의 이유는 톨스토이의 처방전이 농민이 꿈꾸는 세계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즉, 문명과 탐욕에 따른 발전이 아니라 농촌공동체를통해 비폭력과 불복종으로 저항하는 이상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엿보았던 것이다(이문영 2016).

1906년 도쿄 시영전차 파업사건(가격인상 반대 소요 사태)를 변호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탄압받는 사회운동가들과 일본인 무산계급에 대한 최초의 변호가 되었다(오오이시 2010). 1910년에는 명치천황 암살을 계획한 혐의로 전국의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체포·기소하고 금고·사형판결을 받은 코오토쿠(幸徳秋水)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처형된 12명 중의 한 명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변호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변호를 맡은 메이지대학의 은사가 "너는 법정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변호를

시키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변호인단에서 배제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1년 12월에는 도쿄시전(東京市電, 도쿄시가 도쿄철도를 매수해 개설한 전기국) 파업 사건이 발생하였고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파업 주모자 가타야마 센이 검거되자 후세는 최초의 노동운동 관련 변호를 맡게 되었다.

3. 형사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나가던 후세를 인권변호사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한사람이 있었다. 이치가야(市ケ谷)형무소의 후지사와 마사히로(藤沢正啓) 형무소장이다. 그는 후세에게 빈곤한 미결수들의 변호를 추천하였는데, 이 때부터 형사사건 변호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후세는 1912년 이후부터는 가난한 전과자들에 대해 무료 변호를 시작하였고, 동료들과 검사국에서 지나치다고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布施柑治 2003). 잇따른 형사사건 변호에서의 성공으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있던 후세는 형사 변호사로서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시작하였다. 형사사법이 추구해야 할 길 뿐 아니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19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후세의 주장은 시민적 정의의 주장에 머물러 있던 수준이었으며, 아직 계급적 성격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치 상황에 초조감에 가까운 불만을 품고 있던 후세는 1916년 발표된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 주장에 고무되었다. 후세는 2월과 10월에 두 개의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1917년을 자신이 사회적 운동에 나서기 시작한 해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듬해인 1918년 발생한 쌀소송은 후세의 변호사활동이 계급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변화는 1920년에 발표한 '자기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4. '자기혁명의 고백' 이후 변호사 자격증 말소까지

후세는 40세가 되는 1920년 5월 15일, 자신의 개인잡지 『법정에서 사회로』에 '자기 혁명의 고백'이라는 서간형식의 글을 싣고 언론과 친지들 그리고 피고들에게 보냈다. 앞으로는 "사회운동의 병졸"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지하고, '관현의 전횡으로 인해 억울해 하는 이의 사건'과 '부호의 폭력과 학대에 고민하는 약자의 사건', '진리의 주장에 간섭하는 언론범사건', '소요사태나 치안 위반 등, 사회적 의의를 갖는 무산계급의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특별사건들'만을 변호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 무산정당운동, 부락

민해방운동, 반전운동에 적극 관여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後藤守彦 2010). 사회적 사건이외에 후세가 받아들인 사건이 있다면 사형범 사건들이 있었으며, 동시에 바쁜 일정때문에 동경에서는 일반 사건의 변론을 수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와 영달의 길을버리고 '나의 이후의 표준생활'을 설정하여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밝힌 것이다(大石進2010).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사회문제 뿐 아니라 조선인,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데도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였는데, 여기에는 1919년의 2.8선언과 3.1운동이 크게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기 혁명의 고백'을 전후하여 후세는 보통선거 운동, 사법제도개혁 (배심원제 주장), 폐창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들은 모두 개별적인 사안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후세의 기본적 입장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제한선 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국세 10엔 이상의 세금납부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전체에서 유권자는 150만에 불과했으며 후세도 38세가 되던 1917년 4월의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19년 5월에는 선거자격이 국세 3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보통선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후세의 보통선거 운동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들은 보통선거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식하였고 급진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통선거권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는 보통선거 뿐 아니라 거기에 부인참정권과 식민지주민의 참정권을 포함시킨 독자적인 주장을 펼쳐 나갔다. 그는 보통선거 운동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았으므로 폐창운동 단체들과 일본기독교부인 교풍회 등의 단체들과도 함께 운동을 진행해 나갔다. 1924년, 후세는 위로부터의 선거권 부여에 대항하여 '급진철저보통선거를 주장하였는데 민권운동 초기였던 1917년에 비하면 한층 더 좌익의 주장에 가까워진 상황이었다. 1925년에는 보통선거법이 성립이 되었으나, 여성은 여전히 제외된 채였다.

'고백'의 다음 해인 1921년, 후세는 고베시의 노동쟁의 탄압에 대한 조사단 구성을 계기로 법조계의 유지들과 함께 자유법조단을 결성하였다. 이후 사회문제 관련 변호를 위한 후세의 많은 활동에는 자유법조단의 지원이 함께 하게 되었다. 당시 무산계급 조직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922년 2월에는 과격사회운동 단속법안이 제국의회에 제출될 정도였다. 1922년 3월에는 수평사가 창립되었으며, 그 해 4월에는 후세와 깊이 관여해온 일본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그 해, 후세는 세입자동맹을 결성하고 총책임자로서 간다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1925년에는 군마현의 미해방부락인 세라다촌이 다른 부락민에게 습격당해 120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이 사건의 변호 경험을 통해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서'이라는 글귀를 지어 묘석에 새기게 하였다(布施柑治 2003).

그는 1924년 6월 정치연구회를 조직한다.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일 무산정당의 탄생을 대중적으로 준비하는 조직이라는 명분하에 요쓰야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한 칸을 사무국으로 제공하였다. 정치연구회는 좌우파 성향으로 나뉘어졌다. 우파는 의회다수당 구성이 목표인 반면, 좌파는 의석확보 보다는 대중 투쟁을 위한 정당 조직을 목표로 하였다. 후세는 우파의 출세주의에 실망하여 좌파에 동참하였다. 1925년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 (공산당 조직을 범죄로 지정, 최고 징역 10년)이 성립되자 우파 성향의 회원들은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 정치연구회에서 전국적인 단일 무산정당이라는 명문으로 노동농민당이 출범하였다. 후세는 그 당의 고문으로 추천받아, 1928년 2월 최초의 보통선거 총선에서 니가타 제2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후세는 당내의 출세주의를 비난함으로써 도쿄지부 연합회의 반감을 싸게 되어 출마하지 않았으나, 니가타 지부 연합회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출마한 것이었다.

1928년 3월 15일, 무산정당 설립을 위해 움직이던 일본 공산당의 활동가들 900여명이 전국에 걸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3.15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4월 자유법 조단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구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자 후세는 도쿄에서 기소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재판할 것을 주장하는 단일공판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상태에서 오사카에서 공판을 받던 피고인단이 동일한요구를 하며 공판장을 뛰쳐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때부터 후세는 드디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법부 탄압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 오사카의 법정소동으로 후세는 선동죄로 기소되어 1932년 변호사 자격박탈 판정이 내려졌다. 그의 나이 53세였다. 그리고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1927년부터 발행해 온 개인잡지 『법률전선』이 1930년 기소됨) 3개월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1933년 9월 일본 노농변호사단 회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용의로 일제히 검거되었을때 후세도 20명의 단원과 함께 검거되어 이치가야 형무소 미결감방에 투옥되어 1년 3개월 뒤인 1935년 3월에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석방전인 1934년 3월에는 치안유지법위반용의사건의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2년, 미결산입 200일이 확정되었다. 1933년 12월 황태자 탄생 기념 특사로후세의 변호사 자격은 회복되어 센다이 변호사회에 재등록되었다. 그러나 1939년 6월에

⁶⁾ 오오이시(大石進 2010, 308)에 따르면 이 글귀 (生きべくんば民衆とともに,死すべくんば民衆のために)는 후세 다츠지 현창비에 적혀있는 그의 좌우명으로, 1917년 보통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처음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수감되었다가 특사로 감형되어 400일 만에 풀려났다. 그 러는 사이 센다이 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이 말소되어 패전 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자기혁명의 고백' 이후 인권변호사로 불리던 후세는 1928~29년 무렵부터 '극좌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하였다(布施相治 2003). 그리고 1921년 처음으로 '공산당'을 자처한 단체가 활동할 때부터 10년간 거의 모든 공산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고토 모리히코는 이러한 후세의 활동을 "불굴의 투쟁"이라 묘사하면서 "권력 측에서 보면 징그러울정도로 미운 존재"였을 것이라고 한다(後藤守彦 2010, 90). 그 때에 이르러 후세는 일본정부로부터 좌익 혹은 공산주의자로 각인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Ⅳ. 후세의 변호활동의 시대적 배경

1. 혁명의 시대와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

후세의 성장과 사회활동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와 함께한 것이었다. 검사직을 그만둔 직후인 1904년 후세는 러·일전쟁에 대한 톨스토이의 반전론에 크게 감명 받았다. 그리고 1910년대 여러 군주제 국가들이 수많은 혁명들 (신해혁명, 러시아혁명, 독일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혁명)의 결과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 개혁과 정당정치, 보통선거 등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본격화, 그리고 의무교육, 대학교육등과 같은 교육의 확대와 자유분방한 예술활동의 보장 요구 등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갔다. 후세는 활동이 본격화하는 1916년 일본에서 대정민주주의 시기를 여는 기폭제가 된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론에 고무되었다(學習研究社編集部 1971, 42-47).

요시노의 민본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천황의 주권을 승인한 위에, 천황이 국민의 이해에 따라서 통치하고, 제한적인 국민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천황과 정부의 기본목표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의 확립,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책임내각제의 수립, 군부와 관료중심의 번벌정치의 철폐, 등을 필요조건으로 주장하였다.7)

요시노는 1916년 3월 만주와 조선을 방문하고 현지 상황을 관찰하고 돌아갔다. 그는 일본과 조선총독부 정책의 부당성과 3·1운동과정에서 있었던 조선인 학살을 폭로하고

⁷⁾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gi.d_0013 (검색일: 2020, 01, 12.). 참조.

그러한 정책과 현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양심이 마비된 탓이라고 비판하였다. 조선에 대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다음 일본 국내의 대정민주주의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18년 여름, 일본에서 발생한 쌀소동은 유명세를 타던 형사변호사 후세의 인생 뿐아니라 조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성공하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러시아가 1차 대전 참전을 중단하고 독일과 강화를 맺자 일본의 데라우치 내각은 미·영·불 3국과 협약을 맺고 1918년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1차 대전의 진행과 함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917년 후반부터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는 지주들과 매곡상들의 매점매석이 있었다. 민중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자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출병 선언 다음날 '쌀소동'에 참가한 인원은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출병을 강행하였고 민중봉기는 정부반대 투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107개 시정촌에 군대가 출동하여 진압하였으며 소동의 참가자들은 노동자, 인부, 집꾼 등 무산대중들이었다. 그 소동의 결과 데라우치 내각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 소동은 일본에서 계급투쟁이 급진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듬해 조선독립 만세사건의 기폭제가 되었다(森正 2014, 304).

2. 대정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운동

대정민주주의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1차는 1905~1914년으로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체결에 반대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였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배상금없는 영토할양으로 마무리되자 전쟁에 동원되었던 병사들과 총력전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시민들이 히비야 공원에서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강화조약 과정에서의 비밀주의, 국민요구의 무시, 언론탄압, 그리고 계엄령 등은 있을 수 없는 비헌법적행위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대립구도로 받아들여졌다. 그 에너지가 대정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荒川章二 2001). 시민운동은 일본의 군비확장 반대와 악세폐지 운동 등으로 이어졌으며, 1913년에는 1차 호현운동이 진행되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도시 중간 계층과 비특권 자본가 계층이 중심이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천황기관설을 주장함으로써 1912년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와 일대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미노베의 주장은 다이쇼 시기 지배적인 헌법학설로 자리잡게 되

었으나, 군국주의가 횡행하던 1935년에 이르러 반국체적이라는 이유로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2차 시기에는 지방중소도시의 중간계층 중심의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보통선거와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 존중, 그리고 무력에 기초한 팽창정책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요시노 사쿠조가 민본주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 이 시기이다. 3차 시기는 1918년~1925년의 시기로 1차 대전 중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인해 쌀소동이 발생한 것과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노동자와 농민 조직의 급속한 발전과 정당정치 발전. 불만무마를 위한의회정치 수용, 그리고 보통선거의 시작 등이 이 시기 일본정치의 주요 변화들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민운동 세력들은 극우정치 세력을 견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치안유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의회정치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18년의 쌀소동 이후 일본에서의 계급투쟁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발전하였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같은 피지배계층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함으로써 사회운동이 급진화,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의 파업 상황을 보면, 1916년에는 108건, 참가인원 8,413명이었던 것이 1917년에는 398건, 57,309명으로늘어났고 1920년 4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갔다 (〈표 1〉). 당시 치안경찰법이 파업을금지하고 엄격한 탄압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다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하여 1920년 12월에는 일본사회주의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사상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전환하는 최초의움직임이었다. 곧 이어 1922년에는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의 일본지부인 일본공산당이성립되었다.

후세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후세가 택해 온 삶의 궤적들이 시대와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평가하는 대정민주주의의 시대상이 후세의 삶과 오버 랩되고 있다.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의 길을 택한 것,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 나가던 그가 인권변호사로의 전환한 것, 인권변호의 장을 법정에서 사회로 옮긴 것, 그리고 좌익 변호사로 불리면서 결국은 자신이 정부의 견제를 받게 되고 투옥되고 변호사자격증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는 길이 일본의 대정민주주의 시대의 사회운동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노동쟁의의 증가 (내무성과 후생성 조사)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노동쟁의건수	동참가인원
1916			108	4,813
1917			398	57,309
1918	107		417	66.457
1919	187		497	63,137
1920	273		282	36,371
1921	300	103,442	246	58,225

출처: 學習研究社 編集部(1971, 61).

그 만큼 후세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게 민중의 편에 서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후세의 활동자체가 그 시대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역할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거론되는 쌀소동과 보통선거 운동, 일본공산당의 결성과 노동·농민 운동의 활성화 등에는 후세가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적극적으로 민중들을 변호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들에 대한 후세의 지원과 변호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당시 일본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Ⅴ. 후세에 대한 이해

1. 후세는 공산주의자였는가?

우리나라에서 후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갖는 의문은 바로 후세가 공산주의자 였는지 여부일 것이다. 후세는 사회주의 사상을 믿고 공산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서도 공산당에 입당은 하지 않았다. 전전에 그와 함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변호사 친구들의 다수가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들 중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후세가 천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전후에는 후세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만년의 후세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믿으면서도 입당하지 않은 대중이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대중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대표할 작정으로 입당하지 않았다. 입당하지 않아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正本ひろし 1954)"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입당하지 않았

지만 박해받는 공산당원들의 친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인 활동가들(대부분이 무정부주의자이거나 공산당원들이었지만)에게는 '우리 변호사 후세' 혹은 '인권·민중 변호사'로 불리었으나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무산계급의 맹장' 혹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좌익 변호사'로, 특히 일본 치안 당국에게는 '적색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金一逸 1974).

이에 대해 고토 모리히코(後藤守彦 2010, 131)는 후세를 "입당하지 않은 공산주의 자"라 부른다. 후세는 노동농민당에는 입당도 하였고 당적을 두고 입후보하기도 하였으나 일본공산당에는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러나 고토 모리히코는 그의 계급적 인식은 분명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평소에 후세는 무산계급, 노동자계급은 단결해서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권력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가 그리는 이상사회, 즉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고, 피지배계급에 의한 자치가 행해지는 사회란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33년 9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노농변호사단의 변호사들이 일제히 검거되었을 때 후세만이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다. 그것에 대해 후세는, "전향은 체포전 마르크스 신념이 있던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하지만 나는 솔직히 신봉하든 안하든 마르크스주의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약자나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위해 권력과 싸워왔지만, 그것은 '사상이나 이론과 같은 것에 근거한 지도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와 정의감에 의한 것(布施辰治 1935; 後藤守彦 2010, 131)"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대해 고토 모리히코는 겸손한 표현이라고말하고 있으나 다른 많은 연구자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모리나가 에자부로(森長英三郎 1956, 45)는 후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사회운동을 전개한 변호사"라고 한다. 또한 모리 타다시(森正 2014, 김창록 2015에서 재인용)는 그를 사상을 가리지 않고 "고난에 처해 의지처를 찾는 사람을 위해 진력한 변호사"로 평가하였다.

2. 후세의 철학과 신념

그가 좌익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오이시는 후세를 평화주의자, 사형폐지론자, 생명 제1주의자로 평가하고 그러므로 테러리즘도 폭력혁명도 원리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변호하

였으며, 피고인의 의사가 선량하다고 인정하는 한, 정당정파 구별 없이 모든 형사피고 인을 위해 변론하였는데 그것이 후세가 선택한 변호사의 길이었다는 것이다(大石進 2010, 98).

폭력배들의 형사사건 변호에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법정변호에 이르기까지 후세의 폭넓은 변호활동에 일관되는 요소들이 있다. 바로 양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타의 정신이다. 후세는 늑대의 직이라 부른 판사, 검사, 경관에게도 같은 인간으로서의 측은지심, 혹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판·검사의 인간성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피고인의 인간성을 믿을 수 있겠는 가? 그러한 성선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변호사의 직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판·검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러한 믿음이 후세의 강력한 변호의 기초였던 것이다.

또한 후세의 삶과 행동의 뒤에는 일관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타의 정신이다. 후세간지(布施柑治 2003)는 『어느 변호사의 생애』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아버지에 대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자신감이넘치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분으로 이기적인 성격은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F씨가 일생을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이색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2003, 18~19)" 고토 모리히코는 후세의 인생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타의 정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양심을 가진 보편적 존재라고 하는 사고에 기초하여, 약자나 억울한 자, 차별받는 자를 위해 힘쓴다고 하는 정신이다. 거기에는 무정부주의자, 공산당원, 조선인과 같은 선별이나 차별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후세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이 정신에 기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세가비록 묵자와 톨스토이로부터 배웠다고 하나 행동은 자신의 몫이라고 할 때, 후세는 어떻게 변함없이 이타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후세의 경우에도 톨스토이처럼 자신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같은 이타의 정신이 있었기에 판사의 양심을 믿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

3. 후세의 현실감각

우리는 신념과 생각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냉엄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판단이 뒷받침될 때만이 그 신념의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수 있다. 변호사로서의 후세의 성공 뒤에는 물론 후세의 '변호의 기술'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력, 즉 돈이 있었다는 것이다. 1950년 어느 좌담회에서 후세는 "외부로 부터의 원조는 전혀 없었다. 저희들이 전부 낸 것이다. 자기 자신의 활동을 조달할 정도의 경제력과 자기희생의 정신이 없는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大石進 2010)."라고 밝힌 바 있다.

후세는 1920년 자기혁명의 고백 때 이미 명성있는 변호사였고, 그 후에도 지방민들의 사건을 수임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사형 사건에서는 단골 도박꾼들로 부터 충분한 보수를 받았다. 그 수입으로 마음껏 사회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누구나 조선에 건너가고, 조선인과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이등칸 (오늘날 일본의 그린차, 한국의 특실에 해당. 1호차는 침대차)에 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大石進 2010, 207). 당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서민들은 대부분이 2등 차는 부르조아 소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후세가 전전의 계급투쟁 때 주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항상 2등 차를 이용한 것은 조선에 가든, 대만에 가든, 후세에게는 차 안이유일한 휴식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후세가 활동하던 시기 얼마나 열정적이고 초인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후세는 '자기혁명의 고백'이후 3가지 잡지를 간행했다. '법정에서 사회로'(1920. 6~1921.8), '생활운동'(1922.11~1927.5), '법률전선'(1927.7~1930.11) 등을 10년에 걸쳐 간행했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저작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개인저작활동의 결과 30여권의 저작과 700여편의 논문을 집필할 수 있었다. '자기혁명의 고백'이 나오기 이전 2년간의 사건 취급 수는 연평균 250건 상회하였고, 기일지정을 받은 재판소 출정수는 1일 평균 4건, 거기다 별도로 동경감옥의 미결인원 약 700명중 후세가 담당하고 있던수는 52명에 달했다. 심지어는 아라키정(荒木町)의 사무실이 형무소까지 500m 거리에 있었던 것마저도 그의 초인적 활동의 필수조건이었다(大石進 2012, 제4장).

또한 '자기혁명'의 주요내용 중에는 동경에서는 일반 사건의 변론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초인적으로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 일반사건은 수임하였는데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회적 사건의 공판에 참가하였다. 후세의 영업비밀을 들여다보았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후세와 가까웠던 한 지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오사카에서 도박 싸움이 나면 모두가 후세를 부른다. 기차 2등 칸을 타고 일류의 숙박시설에 머무르게 하려면 상당한 일당을 지불해야 했지만 오사카의 모두가 후세를 부르자고 하고 존경했다. 후세는 지방에 가면 반드시형무소에 가서 변호사가 없는 사람을 면회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체류를 연장해서라도 그 사람을 변호하였다(大石進 2012).

4. 후세의 성격과 가족관계

후세는 자기혁명과 함께 가족의 혁명도 함께 했다. 관동대지진 직후 지진 피해자들이 많이 모이는 우에노 부근의 세입자동맹의 텐트촌에 세워진 세입자 무료 법률상담의 입간 판 옆에서 후세의 처 미츠코는 갈대발을 친 식당을 시작하였다. 염가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미츠코는 장기인 간장맛 카레라이스를 간판메뉴로 삼았다. 당시는 카레라이스가 화이트칼라 요리로 취급받던 때였다. 여학교 1학년 12살이 된 장녀 노부코는 식당에서 도우미로 일을 했다. 노부코는 7살 때 히비야 공원에서 "보통의 꽃"을 팔아보통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후세의 활동을 지원했던 적도 있다. 가족이 모두 사회운동에 참가한 셈이었다(大石進 2010).

후세는 3삼 4녀를 두고 있었는데 첫 딸인 노부꼬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고, 아들들과 의 관계는 좋지 못했다. 장남이었던 후세 간지(布施相治 2003)는 그의 저서에서 아버지후세를 "F씨"라 부르고 종전 직후의 후세에 대해 "뜻밖의 자유를 얻은 F씨는 무언가 큰일을 벌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말하자면 F씨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일에 굶주려 있었다 (134)"라면서 10월말 '진주군 환영 민중 대회'를 주최하고자 노력하는 후세의 모습을 "진주군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태도"라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둘째 아들(노부오)는 어린 시절 사망하였고, 셋째 모리오(杜生)도 옥중에서 사망할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후세의 처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미츠코에 대해서도 경제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이었으며, 후세와 관계가 좋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오이시 선생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8) 병오 (丙午, 장남 후세간지(布施相治)의 어릴 적 이름)는 동경에서 멀리 떨어진 야마카다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른 후 합격소식을 듣고 후세의 본가가 있는 헤비타촌에 들렀다. 병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경박한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병오의 큰아버지는 후세에게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고질책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병오를 보는 후세의 눈빛이 차가와 지기 시작했다. 거기다 병오가 매춘으로 중이염을 앓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매춘은 욕구의 문제를 넘어 후세의 매매춘반대 운동에 대한 반항심의 발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일로 인해 후세는 몇 번이나 병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반면 병오는후세의 생활방식에 대해 '독선' 혹은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고 다녔다.

후세의 처인 미츠코는 결혼 전 남자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츠코의 본가에서는 병오가 후세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러한 응어리가 후세에게도 병오에게

⁸⁾ 저자와 오오이시 선생 인터뷰 내용 (2019년 10월 29일, 선생의 자택에서 인터뷰).

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후세에 대한 병오의 시각에는 악의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오에게는 자신이 후세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는 양심을 믿는다』를 쓰게 했을 것이다. 병오는 후세가 말기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한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을 정도로 둘의관계는 단절 상태였고, 후세가 사망한 뒤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했을 때는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해 주변의 중재로 겨우 말석에 앉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삼남 모리오는 교토대학에 입학한 후 아버지의 철학에 감동받아 조선인들 지원 활동을 하다가 194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투옥되어 고문 끝에 교토형무소에서 옥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토시에(蔵枝)라는 여자와의 결혼에 대해 후세가 반대한 데 대해 허락을 요청하는 '일신상의 변명'이라는 서간을 남기고 있다. 모리오가 반전운동에 참가했을 당시 동지로서 토시에를 만났는데 그녀에게는 이미 정혼남이 있었고 그 또한 반전운동의 동지였다. 세 명은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되는 경력을 갖게 되는데, 토시에의 정혼남이 투옥되어 있던 중, 출옥상태에 있던 둘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민법에서는 결혼에는 호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후세는 그 결혼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거기에는 단순한 인륜의 문제 뿐 아니라 동지에 대한 배신을 허락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감정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모리오는 분가해서 스스로 호주가되어 토시에와 결혼하기에 이른다. 1942년 9월, 모리오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다시경시청 특별고등경찰에 체포되어 교토로 이송되고, 예심 중이던 1944년 2월, 29세의나이로 교토구치소에서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옥사하였다(正木ひろし 1954).

이상과 같은 오오이시 선생과의 인터뷰 진술을 보면 두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두 아들들은 공통적으로 후세의 강한 자기현시 욕구와 서투른 문장을 참지 못하는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뉴앙스로 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오이시 선생도 이러한 감정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또한 오오이시(大石進 2010)도 후세에 대해 '강렬한 성격'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 자신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낙관적 인생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자필멸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모두 공산당으로 가버려 혼자 남았을 때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고독해 보였을 때도, 스스로는 고독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성격이다. 병오도 그의 저서에서 후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F씨는 우연히 안 사실이나 선입견으로 사물의 이치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는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F씨 추측이 맞아떨어져 자신도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완전히 빗나갈 때도 있었다(布施相治 2003, 136)."

Ⅵ. 결론

이 연구는 우리가 '일본인 쉰들러'라고 부르는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라는 인물에 대한 것으로, 조선인들을 위해 몸을 던지는 변호와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지속해 나간 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왜 그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지, 왜 대한민국 건국현장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와 조선민중들과의 관계는 1919년 2·8 독립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변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일본에서의 후세의활동을 조선인들에 대해 보여준 그의 변호 활동과 대비시켜 사회적 인물로서의 후세의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후세가 보여준 그러한 변호활동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것이다.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시작된 대정민주주의 시기의 일본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들은 후세의 활동과 일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개인사를 통해 본 그의사회적 활동의 개인적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그의 변호활동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인간의 양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 민중을 위해 살겠다는 신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로, 그는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러한 성격은 후세의 가족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후세의 조선에 대한 애정은 식민지 민중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일체화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과의 연대감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후세의 민중들에 대한 애정은 상대로서의 민중이 아니라 자신도 민중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의 좌우명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배운 청빈한 삶에 대한 열정과 세속적 출세에 대한 거부감, 출세가 아닌 철학 공부를 위한 동경으로의 진학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세의 민중성과 농민성이 조선에 대한 그의 연대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후세는 공산주의자 보다는 '급진적 민주주의자'》에 가깝다는 점이다. 후세는 공산당에는 입장한 적이 없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일본공산당의 창당 이전의 최초 참가자들과 함께 노농농민당의 창당에 참가하였고 그 당의 후보로 총선에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통선거운동, 폐창운동, 사법개혁운동 외에도 천황제

⁹⁾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오오이시(大石進) 선생과의 답변에서 나온 표현.

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자연적 소멸의 주장, 법정 투쟁을 통한 민중 변호(법정지상주의)과 인간의 양심을 믿는다고 하는 성선설에 기초한 인간관, 그리고 경제력 유지를 위한 변호 활동 등은 그의 사상과 활동이 공산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운동을 추구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 대학의 모리 타다시(森正)교수는 후세의 명치헌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치헌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명치헌법의 근대적 측면을 조명한 미노베 다츠키치의 천황기관설과 요시코 사쿠조의 민본주의론에 동조하였으며,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후세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10)

후세의 사상적 위치와 상관없이 일본과 조선에서 조선인들의 편에 서서 강력한 변호를 해 줄 일본인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조선인들에게는 더 없는 구원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한일관계는 부침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일 역사화해를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할수록 후세를 떠 올리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양국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¹⁰⁾ 布施辰治誕生130年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 『布施辰治』 출처: http://www.fuse-tatsuji.com/commentary.html (검색일: 2019. 12. 13.).

· 참고문헌 — ·

- 강덕상. 1999.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비논단 47, 177-197.
- 김창록. 2015. 후세 타쯔지(布施辰治)의 법사상: '조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6(1), 45-91.
- 오오이시 스스무. 2010. 후세 다츠지의 생애와 조선. 고사명, 이형낭, 이규수. 임희경역.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지식여행, 15-100.
- 이경주. 2019. 후세 다츠지와 박열의 헌법의식: '조선건국헌법초안'을 중심으로. 한일민 족문제연구 36, 79-130.
- 이규수. 2003.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5, 407-432.
- 2010. 조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일본의 쉰들러', 월간조선 9월호.
- 이문영. 2016. 톨스토이 대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평화사상과 평화실천. 외국학연구 35, 199-230.
- 이형낭. 2010. 후세 다츠지와 재일 조선인. 오오이시 스스무, 고사명, 이형낭, 이규수. 임희경 역.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지식여행, 191-212.
- 정창현. 2009.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후세와 박열, 그리고 박영효: 남과 북, 재일동포의 공동자산. 민족 21(95), 110-115.
- 후세 다쓰지·나카니시 이노스케. 박현석 역. 운명의 승리자 박열. 인문의 숲.
- 荒川章二. 2001. 軍隊と地域: シリーズ日本近代からの問い. 青木書店.
- 大石進. 2010. 弁護士布施辰治. 西田書店.
- 金一勉. 1974. 日朝関係の視角:歴史の確認と発見. ダイヤモンド社.
- 後藤守彦. 2010. 只 意志あらば植民地朝鮮と連帯した日本人. 日本経済評論社.
- 學習研究社編集部. 1971. 大正デモクラシー;ヴェルサイユ體制;アジア民族運動. 學習研究社.
- 布施柑治. 황선희 역. 2003. 나는 양심을 믿는다: 조선인을 변호한 후세 다츠지의 삶. 현암사.
- 布施辰治. 1947. 3・1 運動の思い出. 民団新聞. 2月(第2号).
- _____. 1923. 無産階級からみた朝鮮解放問題. 赤旗 1(1).

- 1935. 轉向非轉向の弁一. 社会運動通信, 6月15日号.
- 正木ひろし、1954、 一弁護士の墓碑銘-故布施辰治のこと、中央公論 3月号、174-177、
- 森正. 2014. 評伝布施辰治. 日本評論社.
- 吉野作造. 2016. 憲政の本義 吉野作造デモクラシー論集. 中央公論.
- 水野直樹. 1983. 弁護士布施辰治と朝鮮. 季刊 三千里 34. 28-36.
- 誕生130年ドキュメンタリ映画布施辰治. 출처: http://www.fuse-tatsuji.com/commentary.html (검색일: 2019. 07. 08.).

● 투고일: 2020,01,30. ● 심사일: 2020,01,30. ● 게재확정일: 2020,02,13.

| Abstract |

Reevaluation of Husse Tatsuji's Ideology: Communist vs. Democrat

Choi Woond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ehaviors of Japanese lawyer Husse Tatsuji, whom we call "Japanese Schindler." Korean society had doubt about his political orientation as a communist. Although his activities was radical and left-leaning, he also supported universal (including female) suffrage, shut-down of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nd introduction of jury system. They were interacting with the tide of the social revolution that was being circ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ivil movement in Japanese society, under the name of Taishō Democracy. His activities as lawyer reflected as much a firm belief in human conscience as his ideas and a belief in living for the oppressed. He pursued these goals within the parameter of Emperor system and its legal order. He was also an owner of an compelling character, which is reflected in his family life. This study concludes that he is not a communist or socialist but a democrat though rather radical.

(Key words) 2.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Great Kanto Earthquake Japanese Schindler, Taisho Democracy, Husse Tatsuji

신우익의 등장과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탄생*

석 주 회 (한림대학교) (juhee.suk@gmail.com)



국문요약

이 글은 1970년대 일본 사회에 등장한 신우익의 형성배경과 조직적 특징에 대해고찰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우익은 역사와 식민지, 전쟁을 둘러싸고 다양한투쟁을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신우익은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주목을받았다. 기존연구에서는 우익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에 주목하는 반면 이 글에서는 우익이 일상 가운데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우익의 활동과 조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상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면에서 신우익은민족파 학생운동과 일수회를 통해 새로운 민족운동을 조직했다. 활동면에서 신우익은 연기년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정책면에서 신우익은 원호법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결론으로 신우익을 통해 일본의우익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민단체로 정치과정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제시한다.

주제어: 전후 민주주의, 일상적 내셔널리즘, 신우익, 민족파 학생운동, 일수회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본 논문은 석주희의 박사학위논문(2018)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I .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전후 일본사회에 등장한 우익의 조직과 등장배경, 정치적 영향력을 고찰하는 것이다. 현대 일본의 정치사회에서 식민지와 전쟁을 둘러싼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항상 논쟁적이었다. 일본과 해당 국가들은 역사를 둘러싼 화해와 사과, 반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신우익은 특히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한다. 1945년 전쟁 직후 일본 우익은 전쟁 책임과 관련하여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공직에 복귀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970년대는 신우익이 등장하여 선거에 입후보하고 풀뿌리 정책운동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었다.

이 글에서는 전후 신우익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구우익과 분리하여 새로운 단체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천황중심의 전전체제로의 복원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정치문화를 공유하는 전통파 우익세력을 결집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정부체제에 반발하는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운동(Counter-movement)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운동을 조직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 전후 일본사회는 보수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에 대해 다양한사회적 요구들이 분출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지식인, 사회운동가를 통해 혁신세력을 형성했다. 혁신세력의 저항운동은 대규모 노동운동과 평화시위로확산되었으며 60년 안보투쟁은 전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였다. 이 같은 사회적 반발에대해 우익은 자민당과 연계하여 혁신에 대항했다. 혁신세력은 내부분열과 투쟁으로 세력이약화된 반면 우익은 세력을 정비하고 잘 조직된 단체를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적차원에서 기존의 정치엘리트와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신우익은단순히 투쟁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정당을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하거나정책운동을 실시했다. 원호법제화는 전후 우익이 폭력과 테러를 지양하고 법과 제도를준수하는 극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신우익은 1970년대 등장한 세력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전후 우익사의 일부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정권과 함께 일본회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전신세력으로 신우익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2018; 야마다 이라시게키(山平重樹) 2018 등). 이들은 전후 우익에서 신우익을 분리하여 일본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제시했다. 자민당과의 네트워크와 개인적 활동에 주목하였으며 자민당의 보수 우경화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일본 우익 연구자인 야스다 고이치는 우익이 정치적으로 세력화 된 시기로서 1970년대에

주목하였다. 그는 "안보의 계절이 종식되자 우익에게 개헌이라는 새로운 테제가 탄생했다. 우익은 풀뿌리 운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본회의와 같은 대중조직이 발생했다" 고 보았다(安田浩一 2018, 7).

호리 유키오(堀幸雄 2017)와 야마다이라 시게키(山平重樹 2018)는 신우익에 대하여역사적 관점에서 연대별로 서술하였다. 스즈키 쿠니오(鈴木邦男 1988)는 신우익을 조직한당사자로서 상세한 사건과 개인적 서술을 통해 애국자로서 신우익을 밝히고 있다. 김태기(2016)는 생장의 집을 통해 민족파 학생운동을 제시한 연구로서 우익의 정치세력화에대하여면밀히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신우익은 전후 우익 가운데에서도 정치활동에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보이며 현대 일본정치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기존연구를 따르면서도 1970년대를 배경으로 신우익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신우익을 조직과 운동,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정치활동이가능했던 배경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Ⅱ. '일상적' 내셔널리즘과 신우익

전후 일본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급작스러운 도입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국내에서는 전쟁책임으로 인해 기존의 지배 엘리트들이 추방되었고 전범 재판을 실시했다. 보수와 혁신이 대립했으며 노동·환경·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규모 저항운동이 발생했다. 패전 후 전후 일본에서는 천황의 인간선언으로 기존 국가주의 담론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전전 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익은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를 주장했으며 때로는 전후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했다.

전후 일본 우익의 활동과 조직을 밝히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일상적 내셔널리즘(Everyday Nationalis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상적 내셔널리즘이란 거리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위와 데모, 선거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이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셔널리즘의 전통과 문화, 관습을 말한다(Antonsich 2016; Koch and Paasi 2016). 일본에서 우익은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활동해 나갔다. 우익은 전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고유한 문화와 습성을 복원하거나 강화했다. 우익은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며 민족주의 성향의 조직과 인물을 결집시켰다. 이들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법제도에 순응하면서도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가두시위와 강연회, 연설, 선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했다.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선거에 후보를 배출하거나 기존 정치가와의 연계를 통해 정치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기존의 극단적 폭력주의 성향의 우익과 달리 일상적 공간에서 천황주의를 모색해 나갔다. 스스로 애국주의자로 규정하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 천황주의, 헌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하며 기관지를 발행하여 사상을 정립했다.

이 글에서 신우익은 전후 우익 가운데 1970년대 전후로 일본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를 말한다. 사상적 측면에서 신우익은 미시마 유키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가 자결한 이후 기존 우익운동을 비판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1) 미시마 유키오는 상징천황제를 반대하고 전쟁 책임에 대해서도 부분 인정 혹은 부정하며 천황 중심의 자주국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우익은 반공산주의와 얄타·포스담 체제의 붕괴를 내세웠다. 1970년대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자 신우익이 전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 신우익은 전후 미일안보를 중심으로 한 전후체제를 유지하려는 기존의 우익을 비판했다. 신우익이라는 명칭은 스즈키쿠니오(鈴木邦男)가 설립한 일수회를 중심으로 우익세력이 결집하자 언론에서 이들을 신우익으로 부르며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2) 신우익을 조직한 인물은 주로 1960년대후반 와세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혁신세력에 대항하는 민족파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들은 1970년대 헌법개정과 자주국방, 영토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신좌익에 맞섰다(김채수 2004, 58).

Ⅲ. 신우익의 정치투쟁: 조직·운동·정책 네트워크

신우익은 일상적 투쟁을 통해 조직을 형성하고 소규모이나 대중운동을 실시했으며 자민당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적 활동을 했다. 이들은 연구모임과 강연회, 정치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신우익이 등장한 1970년대는 일본 사회에서 안보투쟁 등 격렬한 좌파계열의 사회운동이 종식되고 경제성장과 함께 자민당 중심의 보수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¹⁾ 미시마 유키오는 작가이자 쇼와사상을 주장하는 급진적 민족주의자로서 천황제를 주장하며 민족주의 단체인 방패회를 조직했다. 1970년 11월 방패회 회원과 함께 할복자살을 하면서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²⁾ 스즈키 쿠니오는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와세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파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등장했다. 민족파 학생운동은 생장의 집을 창시한 다니구치의 제자들이 참여했다. 생장의 집은 스즈키 쿠니오, 요세가와 료이치(笹川良一)등 신우익의 중심인물을 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생장의 집을 중심으로 우익사상이 전파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은 신우익과 전통우익에 대해 스승과 제자로 간주하였다(堀幸雄 2017, 219).

시기였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약화되고 혁신계 운동이 소멸하고 반정부 시위가 줄어들었다. 반정부에 대한 시위가 감소한 반면 지역사회에 밀착한 생활형 풀뿌리 운동이 혁신의이름으로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사회운동에 대하여 기존 연구자는 "1970년대 초반 일본 젊은층에게 결사와 투쟁은 현저하게 쇠퇴했다. 1960대 후반부터 70년대전반에 걸친 시기는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운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長崎宏 2010, 351-352). 이러한 변화 가운데 혁신세력에 대하여 대항해온 우익은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였으며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1970년 미일안보조약 연장은 우익이 세력을 결집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른바 70년 안보위기를 내세우며 우익은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당시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발생했고 국회를 둘러싸고 격렬한 투쟁이이어졌다.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결집하였으며 미일안보조약은 자동승인 되었으나 당시 수상인 기시 노부스케가 해임되었다. 이후에도 학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계열의 사회운동이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익은 1970년 미일안보조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혁신세력의 저항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70년 안보위기를 전면에 내세운 우익은 혁신세력에 대한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관동회는 "70년 위기설을 통해 우익이 결집하고 공산주의에 전투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高木金之助 1964, 23).

결과적으로 70년 안보위기는 60년 안보투쟁과 같은 대규모 사회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키나와 영토반환 문제, 미군기지 확대에 대한 반발은 있었으나 부분적 시위에 그쳤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혁신계 사회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붕괴되면서 혁신세력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70년 안보위기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도 보았다(堀幸雄 1993, 66). 70년 위기 뿐 아니라 1968년 메이지유신 100년 기념식을 통해 우익세력은 쇼와유신을 앞세워 메이지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의 국가봉책을 추진하고 나치군복을 연상하는 제복을 입고 등장했다(堀幸雄 1993, 61). 이 같은 흐름을 두고 본 장에서는 신우익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직과 운동,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신우익이 지항하는 바와 정치활동, 정치세력화에 대해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일상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천황중심의 민족주의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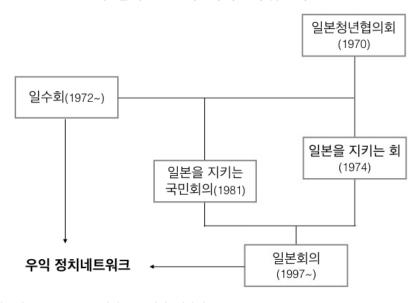
1. 민족파 학생운동과 일수회 설립

1970년대 우익세력은 200개 단체로 증가했으며 우익단체에 가입한 수는 총 12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우익은 '일수회(一水会)'와 '일본청년협의회(日本青年協議会, 이하 일청협)'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사상을 구축해 나갔다. 1972년 5월 일수회(一水会)가 설립되면서 신우익 조직이 정비되었고 민족파 학생운동 출신의 우익이 결집했다. 이들은 극단적폭력을 지양하고 대신 소규모 연구회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집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모임의 명칭을 일수회로 하였다. 일수회는 '생학련(생장의집(成長の家) 학생연합)'과 '방패회(楯の会)'의 멤버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했다. 일수회의설립취지는 "세계 각 민족을 존중하고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일본의 역사와 전통, 문화, 정신을 기리며 전후 민주주의를 수정하고 국민공동체를 창출하는데 있다.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자립과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자긍심 있는 사회운동 추진하고 유신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警備実務研究会 1989, 368). 이처럼 신우익은 전후 체제를 부정하고 천황중심의 통치체제를 내세웠다. 뿐만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73년 국철노동자가 파업하자일수회는 파업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시위를 했다(歩平 외 2015, 370).

신우익 조직인 일본청년협의회(이하 일청협)는 1970년 11월 결성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민족파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기관지인 『조국과 청년』을 발행하고 천황중심의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사상적 기반을 정립했다. 일청협은 "조국의 문화와 전통을 수호하고 현 체제를 타도하여 천황중심의 신체제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일본을 천황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전통적 사상 공동체로 인식하고 민족의 이상을 현대에 재현해야 한다"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일본제국헌법인 메이지헌법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일교조를 공격하며 전후 교육의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운동했다. 일청협은 주로 학생이나 청년교원을 대상으로 조직되었다(俵義文 2016, 19). 일청협은 1974년 교육학생 세미나를 기초로 설립한 일본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적 교육운동을 했다. 일본교육연구소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교과서를 작성하고 교육이론가와 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교육기본법 타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전국교육학생연락회의, 전국청년교사연락회의를 결성하고 투쟁했다. 3) 일청협은 와세다 대학교 민족파 학생조직으로 이후 전국학생협회를 조직하는데 관여했다. 일청협과 전국학생협회 두 조직은 알타 포츠담 반대운동을

^{3) 1995}년에 설립한 자유주의사관연구회에는 일본교육연구소의 교원이나 '일청협' 관계자가 다수참 가했다. 일청협 멤버가 우익 성향의 교직원단체인 '전일본교직원연맹(全日本教職員連盟)'을 구축했다. 자유사교과서, 일본회의가 발행한 고교 역사서인 『최신일본사』를 지지하는 이들 대부분은 일청협 관계자나 전일교련의 멤버이다(俵義文 2016, 20).

하다가 1973년 9월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⁴⁾ 일청협 멤버는 1990년대 이후 일본회의에 관여하며 우익 조직의 핵심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1〉 1970년대 신우익 조직 및 관계도

출처: 석주희(2018, 11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1970년대는 우익은 기존과 달리 신우익으로 결집해 나갔다. 이들은 1960년대 민족파학생운동을 경험한 세대로 '생장의 집'과도 관련을 맺는다. 일수회와 일본청년협의회는 일본을 지키는 회(1974)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1981), 일본회의(1997)로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일본 우익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2. 1970년 안보위기와 우익운동의 확대

1970년 안보위기를 통해 전후 우익은 사회 전면에 등장하며 조직을 구축하고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다. 우익은 사회당 중심의 반미투쟁에 대비하여 안보자동연장을 위한 전술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통일행동을 실시했다(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広報委員会 1995, 377). 1960년대 일본 반정부 투쟁을 이끈 사회당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했

⁴⁾ 당시 와세다 대학교 민족파 학생 조직인 반헌법학생연맹의 의장인 미야자키는 2005년 츠쿠루카이 (つくる会)의 사무국장을 담당했다. 츠쿠루카이가 해체 된 이후에는 일본교육재생기구 상무이사 에 취임했다(俵義文 2016, 19).

다. 사회당은 1968년 반안보조약반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국실행위원회 등 전국적 규모로 혁신계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들은 총평과 함께 사회당과 공산당, 시민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공산당은 60년 안보투쟁이후 분열된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사회당과 연대하여 안보투쟁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했다. 미일안보조약을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캠페인과 국회투쟁을 이어갔다(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 紙広報委員会 1995, 375). 70년 안보위기는 이처럼 사회당과 공산당의 조직정비, 대규모 시위에 대한 경계와 불안가운데 자리했다.

이에 대하여 신우익은 대항운동을 내세우며 조직을 정비했다. 생장의 집을 기반으로 우익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생장의 집은 1965년 선거에서 입후보를 내세우는 등 테러와 폭력을 지양하고 헌법개정과 자위대 재군비론, 오키나와 핵병기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堀幸雄 1993, 67). 생장의 집 청년의 회는 구 우익세력을 탈피하고 학생 중심의 우익단체를 설립하고 민족파 학생조직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생장의 집은 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연회와 연구모임을 주도했다.5)

3. 자민당·우익의 정책 네트워크

1) 원호법제화 운동

신우익이 기존우익과 구분되는 것은 정치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연계와 제도적 투쟁이다. 1960년대 후반 민족파 학생운동을 통해 격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자민당과 재계, 우익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단순한 연계를 넘어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전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우익인사가 추방되었고 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기존의 정치단체와 조직이 해체되었으며 천황은 상징천황제로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었다. 전후 우익이 정치조직이 붕괴되고 사상적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극단적 폭력의 행위는 우익을 일본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 그러나 1955년 자민당 중심의 보수정치체제가 구축되고 장기화되면서 우익이 활동할수 있는 정치공간이 점차 확보되었다.

우익이 추진한 원호법제화 운동은 전후 우익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 사례이다. 원호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1950년에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기리는 의미로 원호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쟁 후 미점령정책에 의해 원호법 규정이 삭제되었다(俵義文

⁵⁾ 우익은 혁신세력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면에 내세웠다. 예를들어 1969년 150명이 도쿄에서 무장투쟁훈련을 실시했다(歩平王希亮 2015, 382-383).

2016, 14). 1950년 참의원위원회에서 공직회의에서 원호법제화는 자민당의 지지를 받았으 나 관료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호법제화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 1961년 수상에 오른 이케다는 원호법제화 문제를 공식제도연락조사회의에서 의제로 내세 웠으나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고 표류했다. 그러나 1967년에 제정된 건국기념일에 관한 논의는 원호법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문부성은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해 1965년 1월 천황충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1966년 7월 국회논의를 위하여 건국기념일 심의회를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이를 공포하고 1967년 2월 11일 건국기념일을 실시했다(俵義文 2016, 13-14). 이어 1970년 자민당 내에서 원호법제화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자민당 내각부회에 원호법제화 를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6년 천황 재위 50주년에서 자민당 정무조사 회는 원호에 관한 소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천황 재위 50년 축하 기념식을 통해 원호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어 미키 수상이 원호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8년 말에 오키나와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에서 원보법제화를 결의하였다. 1978년 10월 17일 각의에서 결정하 였으며 1979년 6월 원호법안이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되어 성립했다(堀幸雄 1993, 228).6) 이처럼 우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화에 이른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우익운동에서 상징적 사건이었다.

2) 일본을 지키는 회와 선거운동

신우익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실시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가 '일본을 지키는 회(日本を守る会)'이다. 이들은 쇼와천황 재위 50년을 통해 민족운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일본회의 설립에도 관여하며 영토와 헌법, 천황과 교육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俵義文 2016, 15). 일본을 지키는 회는 신도와 불교계의 신종교단체를 기반으로 1974년 4월에 결성되었다. 일본을 지키는 회는 발족 후 원호법제화운동에도 관여했으며 선거에서 정치가를 배출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자민당 의원을 배출하였으며 대부분 낙선하다가 1977년과 1980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80년대 이후 자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민족파 학생운동 출신이다.

^{6) 『}生政連ニュース』(1978/11)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찬성했으며 50% 이상 찬성한 지역은 야마가타, 도쿄, 이시가와 등 14도현이다(堀幸雄 1993, 228).

〈표 1〉생장의 집 참의원 후보 득표수

회수(연도)	당선유무	후보자 성명	소속	득표수
6 (1962)	낙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301,822
7 (1965)	당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854,473
8 (1968)	낙선	타마키타케오(玉置猛夫)	자민당	627,897
9 (1971)	당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719,017
10 (1974)	낙선	무라카미마사쿠니(村上正邦)	자민당	552,854
10 (1974)	낙선	다나카타다오(田中忠雄)	자민당	550,689
11 (1977)	당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1,119.598
12 (1980)	당선	무라카미마사쿠니(村上正邦)7)	자민당	1,037,410

출처: 『生政連ニュース』(1977年9月号)를 바탕으로 필자작성(석주희 2018, 124).

한편, 일본회의는 설립된 이래 풀뿌리 우익운동을 내세우며 전국규모의 우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본회의는 천황과 전통, 사상, 종교가 결합된 조직으로 일본 최대의 우익단체이다(석주희 2019, 22). 이들은 정치영역에서 정당 정치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는 강연회와 출판, 연구회를 통해 민족주의, 역사수정주의 등 우익의이데올로기를 전파하였다(석주희 2019, 31). 아베 내각의 장기화와 더불어 일본회의와같은 단체를 통해 우익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의 기반에는 1960년대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으로 등장한 민족파 학생운동과신우익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

Ⅳ. 결론

1970년대 일본은 전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모순이 분출되던 시기였다. 일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셔널리즘으로 등장한 신우익은 정책운동과 연구회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⁷⁾ 무라카미 마사쿠니는 생장의 집 정치운동을 이끌었으며 '일본청년협의회'에 참여했다. 또한 일본회의 설립에 관여했으며 '일본을 지키는 회'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의 지도자였다.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노동대신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갔다(석주희 2018).

우익운동을 실시했다. 1970년대 미시마 유키오 사건을 계기로 기존 우익과 단절한 신우익은 원호법제화 운동을 전개하여 우익을 조직화하고 폭력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신우익의 정치활동과 특징에 대해 조직과 운동, 네트워크로 정리했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1970년 기존 우익과 다른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새로운 우익이 등장했다. 반알타, 포츠담 체제를 주장하며 천황통치의 복귀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주장했다. 둘째,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운동으로 우익운동이 등장했다. 우익운동은 메이지 유신과 같은 전전체제에 대한 기억, 천황에 대한 충성과 메이지유신의 복구를 내세웠다. 셋째, 자민당과의 정치네트워크와 선거를 통해 우익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특히 원호법제화 운동은 우익이 이른바 '풀뿌리 운동'을 주장하며 우익운동에서 정책으로 이어진 성공적 사례이다. 1977년과 1980년은 민족파 학생운동 출신의 우익인사가 중의원에 당선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1980년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각지에서 결성되면서 우익은 우익운동을 강화해나갔다. 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와 교육칙어, 기미가요의 국가화, 기밀보호법, 북방영토반환, 자위대해외파병에 대한 우익운동이 결집하며 최근까지도 신우익과 민족파 학생운동 출신의우익인사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우익은 아베내각에서 일본회의가 주목을 받으며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배경에는 전후 일본우익이 자리하며 특히 신우익과 민족파 학생운동은 사상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아베 내각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극단적 성향을 지닌 우익인사가 정치네 트워크에 등장하며 정당, 선거, 싱크탱크를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대중운동을 실시했다.

참고문헌

- 김준섭. 2002. 기시 노부스케: 전후 일본의 우익 정치인의 원형. 일본연구논총 15, 51-81.
- 김채수. 2008. 일본우익의 활동과 사상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호섭 외. 2000. 일본우익연구. 서울: 중심.
- 남기정. 2014.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106, 94-134.
- 박철희. 2009. 일본 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1960년대와 1990년대 비교. 일본연구논총 33, 159-188.
- . 2011.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석주희. 2018. 일본 정치사회의 동학과 우익의 복원: 정치자본과 결사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9. 일본 우익에 대한 소고 아베내각과 일본회의. 내일을 여는 역사 77, 20-33.
- 석주희·최은봉. 2015. 일본 무라야마 담화의 상징성과 내재화의 간극: 국내 사회 지지 단체-반대 단체의 세력화와 동학. 일본연구논총 42, 31-58.
- 손기섭. 2012. 일본 자민당의 전후 국가전략. 국제관계연구 17(2), 143-168.
- 한상일. 1988. 日本의 國家主義: 昭和維新과 國家改造運動. 서울: 까치.
- 町村敬志. 1987. 低成長期における都市社会運動の発展-住民運動と新しい社会運動の間-.
- ■栗原彬・圧司興吉編. 社会運動と文化形成, 157-184.
- 蒲島郁夫, 竹中佳彦. 2012. イデオロギー. 東京大学出版会.
- 小野直樹. 2002. 戦後日米関係の国際政治経済分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中野晃一. 2013. 戦後日本の国家保守主義―内務・自治官僚の軌跡. 岩波書店.
- 佐伯啓思. 2001. 国家についての考察. 飛鳥新社.
- 山本英仏 渡辺勉, 2001. 社会運動の動態と政治的機会構造. 社会学評論 52(1), 147- 162.
- 大岳秀夫. 1996. 戦後日本のイデオロギー対立. 三一書房.
- 猪野健治. 2005. 日本の右翼. 筑摩書房.
- 伊東光晴. 1976. 保守と革新の日本的構造. 筑摩書房.
- 堀幸雄. 1999. 戦前の国家主義運動史. 三嶺書房.

- 河内孝. 2009. 血の政治 青嵐会という物語. 新潮新書.
- 原彬久. 2003. 岸信介証言録. 毎日新聞社.
- 田中宏. 1994. 戦争責任・戦後責任―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朝日選書.
- 竹前榮治. 1992. 戦後日本の原点(上). 悠思社.
- 市民連合編. 1974. 資料「ベ平連」運動(上). 河出書房新社.
- 色川大吉. 1994. 民衆運動のフォークロア. 昭和史世相篇. 小学館ライブラリ.
- 神田文人. 1997. 国民意識の変化と大衆運動. 岩波講座 日本歴史23現代2, 岩波書店.
- 歩平王希亮. 2015. 日本の右翼―歴史的視座からみた思潮と思想. 明石書店.
- 天道是. 1992. 右翼運動100年の軌跡―その抬頭・挫折・混迷. 立花書房.
- 堀幸雄. 1993.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 堀幸雄. 2006. 右翼事典. 柏書房.
- 大野達三. 1981. 昭和維新と右翼テロ. 新日本出版社.
- 岩井利夫, 1976, 新聞記者の右翼研究, 経済往来社,
- 毎日新聞社編. 1964. 組織暴力の実態. 毎日新聞社.
- 社会運動研究会, 1961, 右翼運動事典, 恒文堂,
- 久野収、1972、久野収対話集・戦後の渦の中で〈1〉新しい市民戦線、人文書院、
- 松下圭一. 1970. 政党政治と直接民主主義 第34回社会党大会を前にして, 1970年12 月 月刊勞動問題. 久野収.
- 高木金之助、1965、組織暴力の実態、毎日新聞社、
- 千葉眞. 2008. 平和運動と平和主意の現在. 東京: 風行社.
- 藤原修. 2014. 日本の平和運動―思想・構造・機能. 国際政治. 第175号, 84-99.
- 稲田雅洋. 1990. 日本近代社会形成期の民衆運動. 東京: 筑摩書房.
- 猪口孝. 1983. 現代日本政治経済の構図―政府と市場.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 伊東光晴. 1976. 保守と革新の日本的構造. 東京: 筑摩書房.
- 小野直樹. 2002. 戦後日米関係の国際政治経済分析.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中野晃一. 2013. 戦後日本の国家保守主義―内務 自治官僚の軌跡. 東京: 岩波書店.
- . 2016. 右傾化する日本政治. 東京:岩波親書.
- 道場親信. 2005.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東京: 青土社.

● 투고일: 2020.01.15.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0.

| Abstract |

Formation of *Shinuyoku* and 'Everyday' Nationalism in Japan

Suk Juhee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al context about the *shinuyoku* during the 1970's in Japan. A national groups emerged in Postwar Japan, through the various struggles for the nationalism. While previous studies posit that right-wing are driven by certain politicians or *yakuza*. This paper develops the argument that ordinary peoples also a crucial actor to creates nationalism in Postwar Japan. To explain this, I draw a notion of 'Everyday Nationalism'. Firstly, the *shinuyloku* who are the new nationalism group was created to compromise between young members and former right wing groups, such as *minzokuha g*roup. Moreover, new right-wing groups can be organized with an emphasis on the opposing movements for the 70's *Anpo* crisis. Thus, I suggest that the *shinuyoku* perhaps appeared as a well-organized civil groups in Post war Japan than any other nationalism groups.

(Key words) Japanese Democracy, Everyday Nationalism, *Shinuyoku, Minzokuha* Student Movement, *Itsuikai*

일반논문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류석진
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강화전략 연구	송문석·황기식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과 그 특징 연구	안병삼·김수진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손영기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 한중일 네티즌의 갈등사례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류 석 진 (서강대학교) (silew@sogang.ac.kr)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현실 민족주의와 어떠한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나타나는 한·중·일 네티즌들의 갈등 유형과 전개 양태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관련한 한중일 네티즌의 특징과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 공간에서 발현되는 방식의 특징은 1)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의 응집정도와 확산속도가 크고 빠르다. 2) 갈등분야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이다. 역사는 영토와 중첩되어 각국의 기념일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과거사 책임 등의 문제로 발현된다.

^{*}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주최 "East Asia in a Global Memory Space" 국제심포지움(2017.9.21.-23, 서강대학교) 개막강연 원고(동아시아의 디지털기억공간과 온라인 민족주의)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19 춘계특별학술대회 (2019.3.15.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을 향한 한국외교의 새 지평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동북아시아의 디지털 기억공간과 온라인 민족주의)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심사평을 통하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 특히 온라인 민족주의 개념의 취약성을 지적하여 준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8046537).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혐한,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감정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룬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의 특징은 다음 세차원에서 탐구될 수 있다. 구성적인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정제되지않은 언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전통적 주체와는 달리 특정한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네티즌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혹은 집단행동의 논리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감염병적특성을 보이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

주제어: 디지털 기억공간, 민족주의, 서구중심적 기억공간, 지구적 기억공간, 동북아시아 기억공간, 네티즌

I. 들어가면서

2019년은 3.1운동 백 주년이 되는 해이다. 백 년 전의 3.1운동은 마을장터, 광장 등다양한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백 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다양한 단체가주도하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기념행사가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혹은 네티즌)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념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백 년 전에는독립선언문을 특정 개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했다.지금은 다양한 기념 메시지들이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시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확산되고 이에 대한 반응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 년 전의 공간과 21세기의 공간은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차별적이다.

이 논문은 현실의 민족주의¹⁾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현실 민족주의와 어떠한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지구적 기억공간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지위와 위상을 확인한다. 둘째, 21세 기 지배적 미디어 환경이 된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중·일 네티즌들 의 갈등 유형과 전개 양태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이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

¹⁾ 제한된 논문 분량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민족주의를 이론적·학문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역사와 기억의 구성'이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관련한 한중일 네티즌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냉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구적 기억 공간'에서의 동북아시아가 가지는 차별적 시간대와 디지털 기억공간의 특이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방식과 전개과정을 동북공정과 독도문제, 사이버 임진왜란 등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시사점과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면서 글을 마친다.

Ⅱ. 동북아시아와 디지털 기억공간

우선 민족주의를 논하면서 기억공간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흔히 공통의 언어·신화·역사·기억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이것이 혈통적이고 고래로부터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2002)이 주장하듯 근대적 '상상'의 산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기는하다. 이 중 역사와 그에 대한 기억 즉, 어떤 역사의 소재를 발굴하여 기억의 대상으로 호명하여 소환하고 그 소재를 어떠한 기억의 내용과 형태로 어떠한 공간에서 발현할지의 문제는, 구성적인 속성이 강하며 현재진행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치 2019년 한국에서는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이를 호명하여 기념하고 있으나,이 운동의 대상이자 다른 한 축인 일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호명 자체를 회피하고있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관동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을 기억 대상으로서 호명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발현 방식이 차별적인 것이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각 국가 혹은 민족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역사의 소재를 기억의 대상으로 호명하고, 특정한 발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명의 대상과 발현의 방식이 상호 간에 일치할 수도, 불일치할 수도 있다. 호명의 대상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대상이 일치하더라도 발현의 방식이 차별적일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기억전쟁'(임지현 2019)이 벌어지고, 이 기억전쟁은 민족주의적 갈등의 핵심 지점이 될 수 있다. 폐쇄적ㆍ독선적ㆍ배타적 민족주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존가능한 민족주의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민족주의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주체가 어떤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호명ㆍ발현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소비 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없으며, 역사적ㆍ사상적으로

다양한 이데올로기(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와 결합하면서, 진보/반동·보수, 해방/억압, 배제/포용의 양면적 특성을 보여왔다. 민족주의 앞에 어떤 용어와 결합하는 지에 따라 속성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민족주의로 표출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기억의 구성 방식과 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주의를 기억공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다. 기억공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지리적인 공간의 속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기억공간의 매체적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공간의 측면에서 기억의 문제를 일국적 차원에서 제기하느냐, 지역적 차원에서 제기하느냐, 혹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발현의 형식과 내용은 발현의 매체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내셔널한 기억방식과 트랜스내셔널한 더 나아가 지구적 기억방식은 매우 상이하며, 어떤 방식의 기억을 어떠한 매체에 의존하여 생산/유통시키는가가 민족주의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한다.

1. 지리적 기억공간으로서의 동북아시아

냉전 시기, 기억은 각 국가 혹은 민족이 속한 진영 논리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정치사회적 쟁점이 되지 못하였기에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반공이라는 국시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 문제와 제국 시절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은 망각 혹은 은폐의 대상이었다. 일국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해체를 이끌어낸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인권 탄압과 제국시절의 기억들이 발화/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냉전의 해체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시기를 거치며, 제주 4.3, 노근리 학살, 거창 양민 학살 등의 정부 수립 전후의 기억들이 분출하며 '기억의 민주화'가시작되었고, 제국 시절의 강제노동, 위안부 등의 문제도 한국의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가히 '기억의 시민권'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국 차원에서의 기억 공간의 속성 변화가 일국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냉전의 해체와 맞물리며 기억은 새로운 공간에서 주목받기시작하였다. 지구적 차원에서 식민주의, 전쟁, 제노사이드 등에 대한 서구중심적인 이해를 넘어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탈서구중심적인 기억 레짐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적 기억공간'의 형성 노력, 즉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억의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지구적 기억공간'은 탈냉전으로 인해 이념대결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좌우 이념대립에 함몰되어 있던 민족주의 요소들이 부각되는 계기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냉전 시기 한일 간 식민(혹은 제국)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기억은 한미일 동맹 구도에 묻혀 있었고, 중일 전쟁 기억에 대한 갈등(예를 들어 난징에 대한 기억) 등도 냉전 구도에 묻혀 있었다. 탈냉전 이후 홀로코스트의 절대성을 넘어서, 소련적군으로 상징되는 스탈린주의 테러,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쟁점들이 트랜스내셔널한 기억 공간에서 경쟁적으로유통되고 다양한 기억들이 서로 얽히고 섞이면서(entangled) 기억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 기억공간은 민족주의의 부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억이 서로 만나고 갈등하면서 새로운 공통의 기억을 만 들어내기도 한다.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 이기도 하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 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되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 지구적 기억공간이다. 지 구적 기억공간은 특수한 국가/민족의 문제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인권/정의 등 인류 보 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지구적 기억 공간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첫째 "이차대전 직후 민족주의를 떠받치는 기억은 '희생자의식'보다는 '영웅주의'에 대한 기억이었다. ... 전 지구적 기억공간과 트랜스내셔널한 공공영역의 등장으로 약자, 희생자, 피억압 민족 등에 대한 공감과 동정의 여론이 확대되면서, 민족적 영웅서사는 호소력과 매력을 잃어 갔다"(임지현 2016.12, 341-342). 영웅주의적 민족주의 기억과 서사로부터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는 민족주의 기억과 서사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강제노동, 위안부, 학살 등이 기억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에서 새롭게 호명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일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제주 4.3, 노근리와 거창양민학살 등의 사건이 희생자를 주체로 호명하며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특정 국가의 "역사 의식에 대한 ... 이웃 국가들의 감수성이 더 예민해졌던 것이다. ...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공식 기억이 일본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의 기억 공간에 배치되자, 과거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예민한 동아시아 차원의 기억의 회로를 통과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 국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트랜스내셔널한 감수성이었다. ... 동아시아 기억 공간의 형성과 더불어 아시아전체 차원에서 과거를 망각하거나 왜곡하는 데 대한 비판적 감수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다(임지현 2019, 294-295). '훨씬 더 예민한 동아시아 차원의 기억의 회로'는 디지털 기억공간의 등장으로 더욱더 예민하게 되었다. 냉전 시기 기억의 회로는 국가대국가 혹은 정부대정부의 기억 정리 방식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편의적인 기억 방정식에 의존하였다. 반면, 탈냉전 시기에는 '기억의 민주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억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네티즌들의 존재로 인하여 간단한 기억방정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억방정식으로 바꾸었다. 2)

이러한 전지구적 기억공간에서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들 간에서 탈영토화하는 기억과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가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관계적 기억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경합하고, 전유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가를 추적"(임지현 2016.12, 345)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자 하는 민족주의의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발현 방식에 있어서도 바로 탈영토화하는 기억과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중요하다. 탈냉전 시기인 21세기에 탈영토화하는 기억은 무엇이고 재영토화하는 기억은 무엇인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고 정립되고 있는가?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을 추구하는 지구적 기억 공간에서 본다면, 본원적으로 유럽, 동(북)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개별적인 지역적인 공간(topos) 혹은 개별 국가와 민족의 기억이 표상하는 의미는 제한적이고 보편성을 띠기 어렵다. 개별 지역 혹은 국가와 민족의 기억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구적 기억공간 속에 적절히 위치되어야 하고 다른 기억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냉전의 해체와 내면적 지구화3)의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지구적 기억 공간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제 막 진입하려는 차별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아직도 동북아시아에는 냉전과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에서의 기억은

²⁾ 예를 들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비록 한국 내의 반대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가 강행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위안부 합의, 2018년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은 한일 양국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집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가 탈냉전과 21세기적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비준 동의의 과정은 불가능하였거나 매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³⁾ 임지현은 내면적 지구화(internal globalization)를 '낯선 땅에서 낯선 기억들이 만나 공통의 기억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스탈린주의 테러 기억들이 서로 얽혀 때로는 서로의 희생자의식을 같이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배착하는 기억의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추적하고 있다. 출처: http://cgsi.ac/bbs/board.php?bo_table=kor_seminar&wr_id=17 (검색일: 2019. 02. 28.).

내면적 지구화에 뒤늦게 합류한 '느림보(laggard)'라 할 수 있다.

2차 대전 시기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전쟁범죄, 강제노동, 위안부 등의 문제는 일국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인권과 전쟁범죄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지구적 기억 공간과의 접합을 '뒤늦게' 시도하고 있다. 임지현의 표현대로, "2011년 12월 13일 뉴욕 쿠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서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감동적인 조우는 이러한 지구적 기억에 동아시아의 기억이 새롭게 진입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의 기억공간이 어떻게 지구적 기억공간과 조우하고, 관계설정을 어떻게할 것인지의 문제는 미확정적이며, 우리의 사고, 행동·전략에 의해 구성되어질 것이다. 아직도 동북아의 한중일은 민족국가의 틀에 메어있으면서, 자국의 이익과 특정한관념에 존재론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의 관계설정에있어서 매우 미숙한 수준과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제노사이드에 대한 기억의 설정 방식과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기억 설정 방식은 매우차별적이며,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여 지구적 기억공간에 위치시킬 것인지 등의 사례도 지구적 시간대와 기억공간과는 차별적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간대와 기억의 공간・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기억공간과 기억방식은 여전히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구적 기억공간에 적절한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2019년 현재 한일 간 강제동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민족주의적 한계와 지구적 기억공간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2.28, 제주 4.3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를 연결시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기억의 논리를, 인권과 정의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적 차원의 공통의 기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미약하나마 고무적인 시도이다. 또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는 독일 행위예술가 군터 템니히(Gunter Demnig)의 '걸림돌(Stolperstein)'4'이 한국의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평화디딤돌'5'이라는 형태로 경향 각지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상 등은 한국이라는 일국혹은 개별 민족의 기억이 '지구적 기억공간'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⁴⁾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tolperstein (검색일: 2019, 02, 27.).

⁵⁾ 출처: http://steppingstone.or.kr/ (검색일: 2019, 02, 27.).

2. 디지털 기억공간

이러한 동북아시아 기억공간의 시간적·환경적 특이성과 더불어 디지털 기억공간의 출현과 진화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 는 양태와 결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가 세계시민사회론자들로, 현실공간에서의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한국가의 국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보편성의 확대 경향 속에서 현실 민족주의가 지구화의 하위 담론으로 작용하고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들의 다층화된정체성과 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적 · 비정치적 단위들이 경쟁하는 전자적중세(electronic feudal) 혹은 더 나아가서 종족주의(tribalism)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양 입장 모두, 민족국가와 현실 민족주의의 약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위로부터의 압력인 지구화를 주원인으로 상정하는 반면, 후자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인 전자적 중세의 출현 혹은 종족으로의회귀 등을 주원인으로 상정하면서 양자 모두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약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둘째, 카스텔(Manuel Castells 2004)은 민족적 저항의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현실 민족주의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이 인류의 다양한 불만을 불협화음으로 표출되는 장으로서 기능하면서 전지구적 전자광장(electoral agora)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광장이라는 공간형태의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는 '지구적 기억 공간'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카스텔은 전지구적 전자광장이 불협화음과 갈등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연대와 소통'을 부각시키는 최근의 지구적 기억 공간에 대한 연구의 가정과는 차별적이다. 즉, 현실에서의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강화된다는 것으로써,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디지털 기억공간은 배제와 투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유사하게 클루버(Kluver 2001)는 사이버 발칸화(cyber-balkanization)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기억공간을 지구화와 지방화(localization) 간의 모순과 긴장이 응축된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그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 종족, 언어, 계급, 특정 정치적 입장에 기반하여 경계가 강화되고,

민족주의적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기억공간은 하나의 대안 공간으로서 누구의 의견이든 민주적으로 신속하게 제기할 수 있는 유용한 측면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너무나 빠르게, 신중한 숙의(deliberation) 없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현실 민족주의가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은 첫째, 이슈의 특성상 응집과확산의 속도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어떤 담론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 둘째, 지속적으로 담론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숙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등의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이 확대 재생산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억공간의 등장과 확산은 주체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와 기억의 전통적 공간은 주로 국가와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된 '독과점적 상품'이 하향식으로 전달되고, 일반인들은 이의 수동적인 수요자 혹은 소비자에 머물렀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하지만, 라일리(James Reilly 2006)가 제기한 '역사 행동주의 (history activism)'(혹은 기억 행동주의, memory activism)의 등장은() 역사와 기억에서의 새로운 행위 주체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억) 행동주의가 등장하고 확산되는 데는 냉전의 해체, 내면적 지구화 등 여러 구조적 요소가 작동하였지만, 디지털 기억공간이라는 매체환경의 등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새로운 행위주체인 네티즌의 등장이다. 라일리의 표현대로 '대중적 정서(popular sentiments)'를 자극하고 동원하는데 디지털 기억공간은 매우 효과적인 기제이다.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무관심하였던 시민들이 역사(기억) 행동주의자로 '탈바꿈'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억공간은 도구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시민(통칭하여 네티즌으로 부르기로 한다)은 단순히 국가와 전문가들이 생산 유통시키는 역사와 기억의 수동적 수용자·소비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와 기억의 주체적 생산자(prosumer)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또한

⁶⁾ 라일리(189)는 중국에서의 민중주의적 '역사 행동주의'의 등장을 분석하고 있다. "History activism includes museums and academics documenting Japanese wartime atrocities in China, the redress movement demanding compensation for Chinese victims and popular protests against Japan over a range of issues. ... activists have subsequently mobilized popular sentiments, lobbied for official support and exacerbated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국경과 민족 등의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는 주체로 거듭 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존재론적 주체를 강화시키는 역작용도 우려된다.

도구적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역사와 기억이라는 상품을 쉽게 전달·확산시킬수 있는 매체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은 거의 영(秦)에 가까운 거래비용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기억이라는 상품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무제한적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매우 손쉽고 간단한 행위인 '좋아요,' '담벼락,' '리트윗'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디지털 감성공동체(digital emotional 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치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근대세계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한 신문과 잡지로 대표되는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의 21세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자본주의가 근대세계에서의 '앤더슨적'인 민족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디지털 자본주의(digital capitalism)'와 디지털 기억공간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배양처이자 유통공간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구적·존재론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억공간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경계를 극복하고 '지구적 기억공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디지털 기억공간도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에 머물고 있으며, 지구적 기억공간과의 적절한 접합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동북아의 지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억공간이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Ⅲ.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등장과 전개

21세기 동북아시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벌어진 한·중·일 네티즌들의 민족주의 갈등은 영토, 역사 및 사회문화 분야를 가로지르며 전개되고 있다. 부록의 〈표 1, 2, 3〉은 이를 분야별/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한·중·일 네티즌은, 역사와 영토 더나아가 국가 혹은 민족의 문제를 둘러싸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국 간의 경

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를 확대 증폭시켜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표출하고 있다. 이것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지나치게 강한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 (chauvinism)'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21세기에 진행된 한중일 네티즌의 사이버 전쟁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중・일 네티즌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를 발현한 현황을 살펴본 후, 한중일 네티즌 사이의 갈등 사례를 분석한다.

1. 한·중·일 네티즌의 민족주의

- 하국

2004년 연예인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 사건과 2007년 가수 박진영의 "한류에서 민족 을 걷어내라" 사건은 한국 네티즌의 이중적 코드 즉 문화적 코드와 민족주의 코드의 긴장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위안부의 아픔을 누드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던 의도라는 제작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티즌은 앞다투어 유명 연예인을 집중 적으로 성토하여 사회문제화하였고, 결국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도록 만들기에 이르렀다. 물론 위안부 문제를 '누드'라는 장르를 통 하여 표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한 인터넷 논객은기 "역사적 상처를 누드에 접목시킨 의도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네티즌이 이성적으로 성 숙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누드'의 최대 고객은 네티즌이다. 대체적으로 2030세대 가 가장 큰 시장이다. '상업적 누드=수치'라는 공식 대신에 '상업적 누드=대박'이라는 경제원리를 가르친 주인공들이 이번 '위안부 누드' 문제 제기의 주역이기도 하다. '성 개방'과 '상업적 누드'에 대한 관용과 '민족주의' 성향의 분출은 표면적으로는 다분히 이 중적이지만, 이들은 반(反)기성적 가치과(상대주의, 민족주의)에 따른 감정표현을 여전 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입증했을 뿐이다." 반기성적 가치관이란 흔히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반항할 때 동원하는 자원이다. 이 논객은 민족주의 역시 반기성적 가치관으 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의 '친미반북'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반동으로 이 들은 '민족주의'를 택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8) 민족주의는 일반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면 반기성적 가치관이 아니라 기성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적

⁷⁾ 홍윤선의 인터넷 김밥, '누드'와 '민족주의' (아이뉴스 2004/02/23).

^{8) 2}장에서 논한 냉전의 해체와 지구적 기억공간의 등장이 민족주의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역설적인 논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맥락에서는 민족주의가 반기성적 가치관이 된다는 것이다. 냉전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가 냉전의 해체로 인해 반기성적 가치관으로 등장한 것이다. 기묘하면서도 모순적인 한국적 맥락이며 동북아시아적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냉전의 해체로 인한 기억의 민주화와 시민권 확대가 민족주의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지구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 코드가 한국의 디지털 기억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2007년 가수 박진영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류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이 한류를 문화적 소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민족주의의 틀 안에 끼워 넣고 있다. 한국엔 민족주의로 먹고사는사람이 너무 많아 한류가 대중문화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 만세'가 됐고 이에따라 해외에서는 반한류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티즌은 이 글에 수천건의 댓글을 올리며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한 일간지(중앙일보 2007/02/09)는 사설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차별대우에 흥분하면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는 눈을 감는다. 폐쇄 민족주의로는 살아갈 수 없다. 지구촌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닫힌 민족주의는 설 땅이 없다.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벗어던지자는 게 아니다. 넘치는 민족주의를 덜어내자는 얘기다. 민족을 강조하다보면 다원성을 해치게 된다. 민족이라는 허울 아래 시민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또얼마나 봐왔는가"라며 과잉민족주의의 폐해를 경고하기도 하였다. 물론 온라인에서 한류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정제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가수 박진영의 주장에 대해 민족주의에 기초한 원색적 비난이 많았던 점이 과잉 민족주의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9)

이러한 점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과도 맥을 같이한다. 모방송사가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과학적 검증'의 실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련의 논쟁은 젊은 생명공학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BRIC¹⁰⁾을 통하여 조작이 밝혀지면서 급기야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어 허위로 판명되면서 종식된다. 하지만 황우석의 연구를 신뢰하는 혹은 '신뢰하고 싶어 하는' 집단은 온라인을 통하여 계속 결집하면서 급기야는 2006년 1월 14일 황우석의 줄기세포 실험 재연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열었고, 이후

⁹⁾ 위 사례는 류석진·조희정(2008) 112쪽에 기초하여 수정·증보한 것임을 밝혀둔다. 10) 출처: http://www.ibric.org/.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 '황우석 팬덤' 현상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를 한 온라인 칼럼니스트¹¹⁾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황우석 팬덤 현상에는 그와 그의 지지자들 간에 서로 관통하는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하며, 절대적 신념 체계를 구축하는 재료와 소스의 원천이 존재한다. 나는 <u>황우석 팬덤의 재료가 '애국주의'라면</u>, 소스는 유사종교적 집단심리라고 말하고 싶다. 말하자면 <u>황우석 팬덤은 과잉된 애국주의에</u> 유사종교주의적 집단반응이 작용한 일종의 신화를 형성한다. 황우석 교수에 대한 난치병 환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는 그들이 애국자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난차병 치유에 대한 순수한 희망을 과장되게 증폭시키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라는 마취제이다. 알다시피 잘나가든 그렇지 않든 <u>황우석 교수의 언변에는 늘 조국과 국가가 있다. 줄기세포의 쾌거를 알리기 위해 2004년 2월 미국 방문 후 귀국 소 감에서 그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생명공학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애국주의적인 발언을 직설적으로 던졌다. 논문조작 파문 이후 그의 공식적인 기자회견 장에는 예의 '대한민국', '우리 국가', '우리 조국'이라는 수사들이 적절한 방어의 시기에 동원된다. 조국을 위해 일하는 황우석 교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 독립운동가이며, 학자이기에 앞서 탈식민주의 운동가이다. 애국주의와 유사종교주의 집단심리의 결합, 이 것이 바로 황우석과 황우석 패덤의 실체이다.(밑줄 필자 강조)</u>

앞서 살펴본 한류가 문화민족주의의 온상이라면, 황우석 줄기세포는 과학민족주의¹²⁾ 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 누드 사건과 한류 발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터 넷 공간 역시 청년세대들에게 개인과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볼 수 없는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네티즌은 개인적 권리와 사적 공간에 대한 절대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국가적 문제나 대외관계와 만나게 되면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라는 담론과 공간에 쉽게 휩싸이기도 하는 양면적 성격을 보여주는 야뉴스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평소에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경험이나 국기에 대한 관념이 크게 없던 신세대가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와 거리응원에 태극기를 걸치고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새롭게 인

¹¹⁾ 이동연 칼럼, '황우석 팬덤'은 신우익주의 출현의 징후: 지금이야말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다(오마이뉴스 2006/01/19).

¹²⁾ 문화민족주의/과학민족주의 용어는 엄격한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문화와 과학을 소재로 한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식하거나 국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rally around the flag!)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3.1절 행사시 태극기 플래시몹 운동과 사이버 태극기 게양운동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티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탈근대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성향이 있지만, 국가와 민족이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대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매몰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수 있다.

- 중국

중국 네티즌 또한 이러한 네티즌의 일반적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일당지배체 제라는 중국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탈권위성과 민주성 등이 한국 네티즌에 비해 덜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외 관계 혹은 국가와 민족의문제가 제기되면 유사한 행동양식을 보인다. 13) "젊은 층들은 서구문화를 좇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화민족은 다르다'는 강한 민족의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조선일보 2004/01/08) 2003년 선저우 5호 발사 이후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의 중국 폄하 발언, 9월 광동성 내 경제특구 주하이에서의 소위 '일본인 관광객 집단매춘 사건', 8월 헤이룽장성에서의 일본 생화학 무기가스 누출 사건, 댜오위타이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분쟁 등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반일을 외치며 디지털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라일리(Reilley)가 제시한 기억행동주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홍커(Red Hacker: 붉은 해커)부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해커의 정의는 매우 많지만 우리 눈에 해커는 인터넷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홍커는 이들 해커와는 다르다. 홍커 정신 속에는 더욱더 많은 애국열정이 있다."(lion, 중국 홍커연맹 창시자) "중국 해커들은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정세가 만든 것이다. 즉, 중국 해커들이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다. 중국 해커들은 가장 힘 있는 민간

¹³⁾ 이하 중국 네티즌에 대한 서술은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 자료에 대한 충실성이나 객관성에 대하여 각국의 전문가에 의해 이견이 제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 언론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변형/왜곡 보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험성은 부분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과장 보도했을 가능성이다.

애국주의 정서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chinaeagle, 중국 매파연맹 창시자). 가히 '민족 행동주의(activism)'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홍커부대가 수행한 국방인터넷 전쟁은 대략 6번으로 보도되고 있다. 1차에서는 98년 인도네시아 폭동 시 화교의 피해를 둘러싸고 '중국 헤이커 긴급회의 중심'을 결성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주요 사이트를 공격하였고, 2차는 1999년 5월 소위 미국의 유고연방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을 계기로 '중국 홍커의 조국통일 전선'을 결성 미국 주요 기관 사이트를 공격하였다. 3차는 99년 7월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이 양국론을 발표하면서 대만 주요 기관 사이트 공격으로 진행되었고, 4,5차는 일본 우익들의 난징대학살 사건 부인과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항하여 2000년과 2001년에 진행되었으며, 6차는 2001년 미군 정찰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홍커들은 이를 '5.1절 국방인터넷 전쟁'으로 이름 붙였다.

- 일본

일본에서의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2채널(2チャンネル)에 개설된 (大子(코리아를 빗댄 지칭)의 방식'(kanokuni.hp.infoseek.co.jp)'14')과 더불어 재특회(在特会,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를 들수 있다. 2채널은 탈냉전기인 동시에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후기인 1999년에 설립된 인터넷 게시판이다. 2채널은 2019년현재에는 상당히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이후현재까지 목표를 상실하여 보수화한 일본의 젊은이들의 강렬한 배외인식(특히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한)을 집약・표명하고 있다.한편 2019년현재 일본 네티즌의 배외의식을 보여주는단체로 2006년에 설립된 '재특회'를들수 있다.야스다고이치(2013)는재특회에 대한 심층취재와 분석을통하여이들을 '거리로 나온 넷우익'으로 칭하고 있다. 재특회 자체도 중요하게 관찰하여야하는 사회적현상이지만,이들의 주된활동이디지털 공간을통하여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억공간의 중요성에 다시한번주목할필요가 있다.재특회는한국인특히재일교포를상대로한혐오반인이른바 '헤이트스피치'를통해일본사회에서배타적인민족주의를선도하고 있다. 2채널이주로인터넷상에서배외적인인식을전파하는매체라면,재특회는온라인에서시작하여오프라인으로뛰쳐나와거리에서의 '집회'와 '운

¹⁴⁾ 일본의 혐한 네티즌들이 개설한 사이트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mysteryreportage.tistory.com/119 (검색일: 2019.12.27.).

동'을 통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다.15)

2. 한중일 네티즌의 갈등사례16)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중국의 인터넷 동호회인 '애국자동맹망'에 의한 신칸센 거부 청원운동,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등의 활동은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 특히 네티즌들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국민일보 2004/02/09). 다음에서는 역사, 영토, 문화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갈등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2003년 7월부터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발현된 일련의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 또한, 학문적 진실성¹⁷⁾이나 외교적 노력에 의한 안정적 관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한참 후 최초로 국내 일간지가 중국의 동북공정 사실을 보도하고(중앙일보 2003/07/14) 방송사가(KBS 일요스페셜 2003.10.12.)가 동북공정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한 이후,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 '동북공정'을 키워드로 한 카페가 '다음'에 133개가 개설되었고, '고구려' 키워드로 1,170개 다음 카페가 개설되었으며, 다수의 카페는 민족 역사 바로 알기

¹⁵⁾ 이와는 반대되는 온라인 운동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SEALDs: Student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EALDs (검색일: 2020.01.07.))과 카운터스(Counters,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1157400005 (검색일: 2020.01.07.))를 들 수 있다. 특히 카운터스는 반인종, 반혐오, 반차별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¹⁶⁾ 이 절은 류석진·조희정(2008) 94-98쪽을 대폭 수정 축소한 것임을 밝혀둔다.

¹⁷⁾ 학문적 논쟁과 관련하여 한중간의 고구려사 논쟁을 변경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임지현(2016, 282-285)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사가 중국사냐 한국사냐'라는 비역사적 물음 앞에서 중국의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학은 국가의 경계에 따라 어김없이 판이 갈렸다.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를 먼 과거에 투사하는 시대착오적 인식론... 질문의 구도자체를 정치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의심하고 해체하는 '변경사'의 새로운 상상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 '지리적 신체(geo-body)' 개념은 현재의 국민국가 영토 중에서 변경의 일부가 다른 역사공간이었다는 주장에 접하면 마치 자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는 듯한 집단 심성을 가리킨다. "민족적 혹은 국가적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계지역의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시켜야만 안심하는 '지리적 신체'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학설의 적대적 차이를 비적대적 차이로 전환시켜 합리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데는 트랜스내셔널 역사의 지류인 '변경사,' '중첩된 역사(overlapping history),' 동아시아사나 유럽사와 같은 '지역사(regional history)의 시각이 필요하다. 변경사의 시각은 고구려를 떼어 내는 그 아픔이 실은 민족주의가 만들어 낸 역사의 가상현실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상현실 밑에 은폐되어 있는 역사의 비민족적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가 목표이나 사이버 의병, 고구려 지킴이 등의 동북공정 전문 카페도 생겨났고, 고구려를 밑그림으로 하는 10만원권 사이버화폐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중국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들은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중국네티즌들의 주장으로 와글와글하다. 한국의 동북공정 관련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일일이 토를 달고 반박한다. 13일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닷컴의 '고구려 카페'에는 중국 네티즌이 올린 2,750건의 주장과 2만9천3백29건의 댓글이 달려 있다. 공식 언론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사이버 상에서는 고대사 설전이 뜨겁다. 젊은 층이 주류인 이들 네티즌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북부를 중국 땅으로 가져오는 한반도 공정을 펴야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경향신문 2006/09/13)."

동북공정 문제가 양국의 외교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발현으로 악화일로의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정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정부의 외교적 공식적 노력에 일정한 정도 족쇄를 채워서 '역사 행동주의'의 대중적 정서 동원 효과를 가져오면서 외교 정책 상에서의 국가의 운신 폭을 좁게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대결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소위 한중일 네티즌들의 '사이버 임진왜란'에서도 극적으로 발견된다. 2004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으로 촉발된 '사이버 임진왜란'에서 "양국 네티즌은 서로의 문화를 비하하는 사이트를 잇따라 열고,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과다한 접속 부하로 다운시키는 '트래픽 폭격'을 퍼부었다(서울신문 2004/01/12)." 일본의 한 네티즌이 한반도가 삭제된 지도를 한국 비하사이트 'K국의 방식'에 올리자 한국 네티즌은 '원폭투하 기념우표'를 만들고 'K국의 방식'에 대응하는 'J국의 방식' 사이트를 만드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이성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의 네티즌들도 가세하였다. '일본이 망하지 않으면 세계에 평안한 날이 없다', '한국 공군이여 일본기를 격추하라, 중국인민은 너희를 지지한다' 등 중국 정부와 언론의 차분한 대응과는 달리 자극적인 언사들이 보이고 있다. 즉, '중국 네티즌, 한국 인들 독도 대응 잘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 언론에는 소개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5/03/18). 신랑망(新浪網)은 사태가 커지자, '한일독도문제'라는 별도의홈페이지(news,sina,com,cn)를 만들어 관심을 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16-17일 이틀

간 1200여건의 댓글을 올려 '한국인들을 배우자. 한국을 지지한다', '댜오위다오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모습이 부럽다' 등의 글을 남겼고 신화망(중국 신화사 인터넷신문)에도 '중국과 한국이 연맹관계를 만들자', '(중국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 '일본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 등의 글을 통해 반일감정을 확산하고 있다(한겨레 2005/03/25). 다시 말하여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은 '반일'에 있어서만큼은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그들도 동북공정 등의 양국에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적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삼국 네티즌의 기억전쟁은 2007년 초 '고노' 담화의 수정 여부와 위안부에 있어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촉발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과이에 연이은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의 네티즌 여론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다. CNN은 2007년 3월 4일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군위안부에 대해 다시 사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기사가 담긴 인터넷 페이지에 찬반 투표 코너를 만들고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위안부 문제에 다시 사과해야 하는가? (Should Japan apologize again for its World War II military brothels?)'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하였다. 한국의 디지털 공간에서는 CNN 사이트의 주소와 함께 '국민 여러분 1분만 투자해 주세요.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줍시다' 등의 내용이었다. 가히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전쟁 양상까지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사드배치를 전후로 한중 네티즌 사이에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서 양국의 문화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소위 한류에 대한 혐한류의 흐름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감지되기도 하고, 네티즌이 주도하는 롯데마트와 롯데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중화주의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우려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문제판결 이후,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이에 맞서 한일 GSOMIA 연장을 연계시키기도 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치달았다. 증대된 한일 민간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이해와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져 국가 간의 공식관계와는 별개로 한일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구매와 일본여행을 반대하는 소위 'NO JAPAN' 운동¹⁸⁾이 네티즌 주도로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빠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

¹⁸⁾ 출처: http://nojapan.kr/ (검색일: 2019.12.27.). 소설 미디어 공간에서 #nojapan을 통하여

고, 이는 여행객 감소, 유니클로 불매 운동 등으로 불길같이 번져 나갔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운동이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서도 일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동북아 삼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쟁점화되고 있는 현상을 '사이 버 민족주의 증후군(cyber nationalism syndrome)'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백지운 인천문화재단 연구원은 "사이버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게 해주기보다 비슷한 입장을 강화하는 속성으로 가다보니 민족주의 정서가 더욱 극단화, 저급화된다"고 지적했다. 임지현은 "삼국의 누리꾼은 한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나머지 국가의 민족주의도 도드라지고 이에 모든 국가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적대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2006/09/13).

동북아라는 지역적 특성, 지구적 기억 시간대와의 차별성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따른 기억의 공간 구성과 기억의 재현 방식은 상호공존이 가능한 민족주의형태로 발현되기 보다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며 독선적이며 감성적이고 말초적이기까지 한 민족주의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3국의 현실정치에도 큰 영향을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글을 마치며

특정한 역사 사건을 계기로 혹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둘러싸고 한중일 삼국 네티즌은, 개별국가의 내생적인 연원으로부터 그와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민족주의를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표출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상호공생적인 관계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동북아시아의 기억 지형과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지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인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적 기억공간 속에위치 지우면서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보편적 규범에 기초한 평화와 역사의 화해를 이루려는 시민사회에서의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 간의 공식외교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민족주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의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발목을 잡힐 수도(involuntary defection) 있고, 더 나아가서 는 특정한 극단 세력이 과다하게 동원·대표될 때, 외교가 기반하여야 하는 국내정치에 서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록 1,2,3〉에 나타나는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의 특징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9) 1)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이 증폭되는 특징을 가진다. 네트워크 효과는 비단 민족주의 담론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민족주의 담론의 경우 이슈의 특성상 응집정도와 확산속도가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 2) 사례의 선별성을 통해 극명한 모순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역사와 기억의 선별적 습득과 활용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자신들이 선호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호명하고, 이를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현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강화시킨다. 3) 주로 갈등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영토, 역사, 그리고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스포츠 대결 등의 국제행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억의 역사에 대한 현실적 재의제화 과정으로서 그 자체가 '기억의 정치화' 혹은 '기억전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민족주의의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발현을 통하여 기억의 재영토화 경향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4) 역사문제는 영토문제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토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삼일절과 광복절, 중국은 전승일, 일본은 원폭투하일 등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과거사 책임 문제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극렬한 사이버 공격이 반복되고 민족주의가 확산된다. 특히 한국의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와 일본 니챠네류(2ch)와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갈등의 주요 공간이자, 서로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5) 사회 · 문화 분야에서의 갈등은 혐한,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말초적인 감정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가져오기보다 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6) 스포츠 관련 국제대회에서 상대국과 대결할 경우 승패를 소재로 감정적인 공격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WBC, 올림픽, 월드컵 등 중요 국제대회에서의 대결 결과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 승리의 세리모니를 통해 영토나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감성적 자극과 국제적 호소를 요구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의 승리 후 '독도는 우리 땅' 포스터 세리모니를 둘러싸고 벌어진 IOC의 개입, 한일간의 외교분쟁과 연이은 한일 네티즌의 갈등과 미백악관 청원,

¹⁹⁾ 여섯 가지 특징은 류석진·조희정·박설아. 2013, 164-172를 수정·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독도 표기 지도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 등도 중요한 사례라할 수 있다.

지구적 기억공간의 출현은, 기존의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집단적으로 기억되고 호명되었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다양한 세부 집단과 개인의 책임성의 문제로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제국주의 제노사이드,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대인 희생을 중심으로 한 홀로코스트 담론과 기억의 독보적 지위를 허물고, 새롭게 밝혀지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이 새롭게 조망되고 위치지위질 수 있게 된 것도 지구적 기억공간의 출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에서의유대인 학살 기억을 넘어서, 소련 적군에 의한 폴란드인들의 희생, 아르메니아인 학살,제국 시기 선주민 학살과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의 오래된 사건들이, 새롭고 다양한역사와 기억의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섞여 제기되면서, 지구적 기억공간에서 기억의 시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억의 담론은 민족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구적 기억공간의 등장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미국 글렌데일의 소녀상은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공간이었기에 가능했었다는 설명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민족과 국가라는 집단적 단위를 중심으로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설정되는 상태이고, 지구적 기억공간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기억의 시민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북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이러한 현실공간의 국가적·지역적 특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극히 배외적이거나 국수주의 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현실 민족주의 의 징후(symptom)인 동시에 현실 민족주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 나타나는 한중일 네티즌의 정체성은 다음 세 차원에서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매체적 속성,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 유통되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아이디어가 첫 번째 속성이다. 즉, 대상과 내용의 문제이며, 이는 매우 구성적인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의 측면에서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티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주체와는 달리 이 네티즌들은 특정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고 비정형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계기적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회세력들이 네티즌으로 참여 혹은 동원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셋째,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혹은 집단행동의 논리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감염병적 특성(viral)을 보인다.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확산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나타나는 네티즌들 사이의 민족주의적 언어와 감정적인 대응과 말초적인 제안들은, 삼국간의 증대된 교류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불친근함과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 적대적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적대감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불건전한 것이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인이 등장하고 이들이 자신 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동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확산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려는 전략을 편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의 문제에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의 미래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____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제연구소 편. 2018.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갈등과 해결. 동북아역사재단, 157-198.
- 류석진·조희정. 2008.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 대한 연구: 게시판과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25(4), 83-119.
- 류석진·조희정·박설아. 2013.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한·중·일 온라 인 갈등 유형과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3), 153-186.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김현욱 옮김. 2013. 거리로 나온 넷우익: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후마니타스.
- 임지현. 2016.11. 전지구적 기억공간과 희생자의식: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스탈린주의 테러의 기억은 어떻게 만나는가?. 대구사학 125, 110-134.
- _____. 2016.12.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사학자의 에고 히스토리. 소나무.
- _____. 2019. 기억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Humanist.
- 조희정. 2018. 온라인 공간의 한중일 민족주의 갈등과 탈민족주의.
- Castells. Manuel 저. 박행응 역. 2004. 인터넷 갤럭시. 한울.
- Kluver, Alan R. 2001. New Media and the End of Nationalism: China and the US in a War of Words. Mots Pluriels. 18.
- Reilley, James. Sep. 2006. China's History Activism and Sino-Japanese Relation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4(2), 189-216.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KBS http://www.kbs.co.kr

● 투고일: 2020.01.15.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0.

부록20)

〈표 1〉한·중·일의 역사 분야 갈등(2002-2016년)

주제	갈등 내용
교과서	[한] 왜곡과 관련하여 사이버 시위(2001년 3월) [일] 산케이신문 등은 사이버테러이므로 처벌을 요청(2001년 3월) [중] 일본이 난징 학살 등을 포함한 식민지 시절 역사 왜곡 내용의 교과서 승인한 것에 대해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분노 표출(2005년)
삼일절	[한] 태극기 몹(mob) 운동, 사이버 태극기 게양 운동(2006년)
광복절	[한] 세계국학원청년단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의병(cafe.daum.net/cybershinsi)이 태극기몹 행사를 처음 주도(2004년) [한] 포털 파란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되어 있는 북관대첩비 반환 촉구 서명 진행.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노래를 편곡하여 mp3와 휴대폰 벨소리로 제공. 팔일오 삼행시짓기 이벤트. 다음은 나라사랑 사진 공모(2005년) [일] 2ch과 [한] 디시인사이드 간에 서로 게시판을 공격(2007년) [한] 독도-올림픽-싸이를 주제로 한 사상 최대의 사이버 대전. 인터넷 카페 넷테러대응연합(넷대연)은 [일] 2ch에 9월 공격예고(2012년)
위안부 문제	[일] 커뮤니티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외설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SNS에 유포(2003년 2월) [일]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찬성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청원 (2012년 5월, 2014년 1월) / 한국의 반대 청원에는 10만 명이 참여(2014년 1월) [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갈등 최고조(2015년 12월)

〈표 2〉한·중·일의 영토 분야 갈등(2002-2016년)

주제	갈등 내용
	[일] 게임업체 시스템 소프트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는 가상 스토리를 담은 '현대대전략
독도	2002' 발매. 이어 발매된 '현대대전략 2005: 호국의 방패 이지스함대'는 자위대가 독
문제	도를 점령하고 제주도까지 공격하는 내용. '현대대전략 2009' 역시 마찬가지 내용
	(2002년)

^{20) 2013}년 이전까지의 자료는 류석진·조희정·박설아(2013, 165-171)에서 전면 인용, 2014년부터 의 자료는 조희정(2018, 187-191)에서 전면 인용

주제	갈등 내용
	[일]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는 일본땅' 발언 때문에 사이버 임진왜란 촉발 / K국의 방식 vs.
	J국의 방식 사이트 개설, 기념우표 발행(2004년 9월)
	[중] 한국 지지 입장 표명. 신라망에 한일 독도문제 페이지 개설(2004년 9월)
	[한] 싸이월드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캠페
	인 진행. 2005년 싸이월드 댓글 주제별 순위는 1위 '독도 지킴이 서명 동참'(83,527
	명), 3위는 3절 독도 태극기 달기(19,698명). 2004년 1월에는 독도 미니홈피 개설.
	네이트온은 대화명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진행(2005년 3월) [중] 반일 감정 및 한국 지지, 신라망에 '한일독도문제'를 주제로 사이트(news.sina.com.
	cn) 개설. 2일간 1,200여 건의 댓글로 한국 지지(2005년 3월)
	[한] 다음(Daum)이 포털 최초로 '일본 독도 근해 배타적 경제 수역 탐사 논란'에 대응하여
	KBS와 함께 3개월간 독도 현지 실시간 생중계(issue.media.net/J apan_eez/
	index.html). 속보, 포토갤러리, 카페 및 블로그, 독도사랑 메시지 서비스. 독도사랑
	메시지에만 하루만에 5만여 개 댓글. 아고라 청원에는 2,200여 명이 청원(2006년 4월)
	[일]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
	하겠다는 방침 전달. 세컨드라이프에서 일장기를 단 탱크로 사이버 독도에 몰려와 총
	격과 핵폭탄 공격. 경복궁과 경회루 앞에 우익 선전차량을 몰고 와 태극기에 불을 지름
	(2008년 7월) [한] 블로그 독도 혹은 다케시마(dokdo-or-takeshima.blogspot.com)에서 독도 영유권
	에 대해 설문. 369,533명 참여. 아바타를 배설물 모양으로 변하게 함. 아고라에 사이
	버 독도 경비시스템 자금 모금 운동. 1억 원 모금액 달성(2008년 7월)
	[한] 하나포스 닷컴이 '독도가 달린다(dokdo.andu.hanafos.com)페이지' 개설. 서명, 달
	리기 이벤트, 온라인 1인 시위, 오표기 찾기 캠페인 참여. 다케시마의 날 찬반 투표에
	한국 1만 명 참여/일본이 몰리면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찬성으로 역전(일본 IP 4
	만 명)(2009년 2월)
	[일] 문부성이 2011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를 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 포함. 요미우
	리와 아사히 신문이 2008년 7월 15일 당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명칭을 요구하자
	한국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했다고 보도(2010년 3월)
	[한] 이명박 대통령 독도 관련 발언. 3월 16일 청와대 해명(2010년 3월)
	[중] 반한 감정 표현, 반일 감정 표현(2010년 3월) [한] 중국에서 열린 2010 아시아태평양신인가요제 출전가수 정주영이 생방송 중에 '독도
	belong to' 문구와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독도 퍼포먼스를 한 동영상이 포
	털 토론방에 게시됨. '독도청년'으로 인기를 끔(2010년 5월)
	· · · ·

주제	갈등 내용
주제	[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 비난, 주일대사 소환 요구(2010년 5월) [한] 소설커머스 서비스 위메프에서 독도 캠페인 실시. 100만 명이 100원씩 구매하면 1억원을 모금하며 세계 주요 언론에 '독도는 우리땅' 광고 실시(10번째 광고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 소셜미디어로 확산되어 14시간 만에 18,841명이 구매(2011년 2월) 독도문제와 이종격투기 임수정 선수 구타 사건으로 갈등 고조(2011년 8월) [일] 배우: 한류 편중 발언(2011년 8월) [한] 디씨 코갤과 넷 테러 대응연합이 2천 명 15일 오후 3시 공격 선포, 일본인 개인정보 해킹 제안. SNS 프로필 태극기 몸(2011년 8월) [일] 후지 TV 시청 거부, 야후 재팬 댓글 시위. 한국의 넷테러 대응연합 운영자 아이디 해킹 (2011년 8월) [한] 가수 쌈디가 트위터에서 다케시마 발언을 한 일본인에게 욕으로 응수(2012년 8월) [한] 게임 '네이버필드'에서 독도에 침입한 일본 군함을 격침하는 내용 포함. 역사 게임'거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울릉도과 독도를 지킨 안용복을 캐릭터로 등장시킴. MMORPG 게임 '프리우스'에서는 배경에 독도를 추가하고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삽입. 비행전투게임 '데드식스'는 일본 함대를 격파하고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포함. 모바일 게임 '카오스 & 디펜스'는 새 콘텐츠로 '독도수호대'를 추가(2012년 9월) [일] 모바일 게임 '다케시마 쟁탈전'에서 독도 영유권 다툼을 소재로 다룸(2012년 9월) [일] 시네마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 2ch도 동참하면서 무력사용이나 국교단절을 주장. 아베 총리를 친한파라고 비난(2013년 2월) [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21세기 신해이그 특사'로 디지털 단원 모집. 스마트폰, PC, 디지털 기기,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배경화면에 독도 사진을 넣고 최소 5명에게 확산하는 역할 담당(2013년 3월) [한]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령한 것이며,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위안부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일 감정 격화. 외무성은 사이트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2014년 4월) [한] 외교부가 모바일 독도 홈페이지 개설(2014년 5월)
동북 공정	동영상 업로드(2014년 6월) [한] 정부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린 영어판 독도 홍보 동영상의 조회수가 일본 정부의 것보다 5.7배 이상(2014년 8월) [한] 2002-2004년 동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고구려 연구 부족을 비판하면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2004년 8월)
공정	면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2004년 8월)

주제	갈등 내용
문제	[중] 길림의 고구려 고분 2곳의 벽화가 도굴되어 한국으로 갔다는 뉴스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2010년 말)
조어도 문제	 [중] [일] 동중국해 조어도(센카쿠)를 둘러싸고 양국간 구글맵 위에 국기 꽂기 경쟁(중어, 일어, 영어, 한국어 동원)(2010년 5월 20일, 9월 7일) [중] 반일시위. 외국 기업과 상점에 대한 폭력화. 웨이보에 일본내 반중 시위 사진이 유포됨 (2012년 9월) [중] 베이징 한 식당에 '일본인과 필리핀인, 베트남인 그리고 개는 출입금지' 표기(2013년 2월)
동해 문제	[한] 한국 알리기 동호회 '반크(VANK)'는 론리 플래닛에 이메일로 일본해 대신 동해 표기를 요구하여 병기하기로 결정(2000년 8월 내셔널지오그래픽, 12월 라이코스가 동해 표기)(2001년 1월) [한] [일] 국제수로기구(IHO)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일 누리꾼 75,000명이 백악관 We the people에 '미국 교과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서명 청원(2012년 4월)
백두산 문제	[한] 장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백두산 세러모니(2007년 1월) [중] 패러디 사진 유포(2007년 1월)

〈표 3〉한·중·일의 사회문화 분야 갈등(2002-2016년)

주제	갈등 내용
문화일반	[중] 역사적 인물의 출신과 문화원류를 한국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류의 허위 보도가 범람하기 시작(2007년) [중] 멜라닌 분유 파동 등 식품안전문제 발생(2008년) [중] 작가 이외수가 트위터에 한글 공정 비난글 게시(2010년) [중]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구려 벽화 반환 요구(2010년) [일] 오사카 시장스시 집의 초밥테러(2016년)
문화재	[중]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무산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한 비난(2007년) [중] 조선족 농악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09년) [중] 한국의 단오절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09년) [중] 한국의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09년)

주제	갈등 내용
	[중] 한국의 전통 침구 세계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10년)
미디어	[중] 한국 미디어의 반한 감정 기사화 이후 중국 주류매체에서 보도(2008년) [일] 야후 재팬이 혐한 혐중 뉴스 공급자('서치나')와 계약 해지(2015년 9월) [일] [중] 혐한·혐중 매체 '서치나', '레코드 차이나'의 지속적인 혐한, 혐중 기사 게재(2015년 11월) [일] 후지 TV, 한국인 인터뷰로 혐한 조작 자막 방송(2015년) [일]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혐한 글 다수 게시(2016년 6월) [한] 한국의 유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서 포켓몬고를 점령하면서 아베를 비판하는 네임 사용(2016년 7월)
동영상	[한] 반크는 14편의 영문과 한글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국 소개(2009년 3월) [일] '니코니코 동영상'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혐한 단체 재특회의 채널 폐쇄(2015년 5월) [일] 법무성은 '니코니코 동영상'에 게시된 '혐한시위 동영상'에 대해 피해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첫 삭제요청(2016년 2월) [일] 오사카에서 혐한 시위와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시행 후 '니코니코 동영상'에 혐한시위 동영상 업로드(재일 한국인들이 신고)(2016년 7월)
엔터테인 먼트	[종] 드라마 '대장금' 비판을 계기로 반한류 출현(2005년) [중] 슈퍼주니어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이 포털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류 스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격렬한 감정 논쟁이 전개됨. 6월 9일에 한국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6·9 성전'으로도 부름(2010년) [일] 배우 타카오카 소스케가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는 후지TV를 비난하면서 반한류트윗을 게시하였고, 이에 넷우익이 동조하면서 후지 TV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여 5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해당 동영상은 10만 명 이상이 시청(2011년 8월) [일] 후지 TV의 주요 광고 스폰서인 생활용품업체 KAO 및 홈페이지에 동해라고 표기한 경월소주의 일본 판매원인 산토리사에 대한 불매운동(2011년 8~11월) [일] 독도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던 한국 배우 김태희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로토제약에 대한불매운동 전개(2012년 3월) [일] 한국이 일본에 한류 확산을 위해 1조 6천 억 엔이라는 돈을 지불했고, 일본의 친한파방송국 사장이 어린시절을 한국에서 지냈다는 루머 등이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2012년)

주제	갈등 내용
만화	[일] 혐한류 만화 출판(2009년 4월)
영화	[한] 풍신수길 부하로 일본 영화에 출연한 최홍만에 대한 비난(2009년 5월)
커뮤니티	[한] 네이버에 공식 친일 카페는 3곳. 비공식 카페는 10여 개.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 등을 게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6-8월 사이에 19,000 건의 친일, 한국 비하 게시물이 게시판과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됨(2012년 9월) [한] 네이버에 '한국공식안티카페2'라는 카페 개설. 한국인에게 창씨개명 요구. 회원수 156명(2013년 2월)
스포츠	* 동계아시안게임(2007년) [한] 선수들이 백두산 세러모니 * 베이징 올림픽(2008년)
	[중] 한일 경기에서 일본을 응원 [한] 성화봉송 중 중국유학생과 한국 유학생 충돌, SBS의 올림픽 개막식 장면 사전 누출
	* WBC(2009년 3월) [일] 야후 제팬에서 한일전 세 번째 대결의 승자에 대한 설문조사
	* 동계올림픽(2010년 3월) [일] 2ch에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연기에 대한 악평을 올린 것에 분노하여 한국이 행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2ch 의 3시간 만에 김연아 비난글1,200건 이상이 게시됨. 33개 게시판 중에 30개 게시판 마비 [한] 2ch 사건 직후 반크도 공격받음. 포털에 '정당한 테러 대응 카페' 개설(5일만에 6만 5천 명 가입) [한] [일] 간 3·1절 사이버전쟁 움직임
	* 남아공 월드컵 [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스폰서를 맡고 있는 스포츠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비하축구 광고 게시. 2ch의'뉴스속보', 'VIP' 게시판 코너에 한국 8강 탈락을 기뻐하는 글 다수(2010년 5월) [한] 대일 파라과이 역전 승리에 대해 격려글이 게시된 이후, 일본에 의해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서버 다운(1,000여 개 글 게시)(2010년 7월)

주제	갈등 내용
	[일] 메이저리그의 일본 투수 다르빗슈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일본 네티즌에게 한국 옹호 발언으로 반박(2012년 5월)
	* 런던 올림픽(2012년 8월) [한]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것을 자축. 박종우 독도 세러모니로 인해 동메달 시상식에 참석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예로 들어 항의. 아고라에서 는 박종우를 옹호하는 서명과 청원 전개 [일] 2ch에서 한국 우세를 수긍하면서도 자국 선수를 비난 [중] 박태환-쑨양 대결에 대해 온라인 민족주의 갈등 격화
재난·사고	[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대해 포털에 혐중 악플이 게시되었고, 이 글이 중국 차이나런 (chinaren.com)에 번역 게시됨(2008년 5월) [중] 난징대학살의 주범은 한국인이라는 콘텐츠가 범람함(2009년) [한] 동일본 대지진때 포털에 혐일 댓글이 게시되었고, 이 글이 일본 투채널에 번역 게시됨 (2011년 3월) [중] 메르스 확산의 탓을 한국으로 돌리며 혐한 여론 게시(2015년 5월) [일] 주일 한국문화원 방화 테러 용의자 한국인(2015년) [일] 한국내 메르스 확산을 응원하며 혐한 여론 주도(2015년 6월) [일] 구마모토현 강진에 보내진 한국의 구호물품에 대해 일본이 반쓰레기 물품을 보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악플이 게시되었고, 이 글이 한국 커뮤니티에 번역 게시됨(2016년 4월)

| Abstract |

A Study on the Manifestation of Nationalism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a focus on the conflicts among and identities of Korea/China/Japan Netizens

Lew Seokjin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how the nationalism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the case study of conflicts among Northeast Asian (Korea/China/Japan) Netizens. The distinct features of nationalism as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are, 1) because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the condensation and diffusion of the (dis)information and discourse are very rapid and wide; 2) the area of conflicts covers the issues of territory, history, and society/culture; 3) the emotional hatred and jingoistic languages against each other are used in digital memory space.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netizens and to explore the consequences of these conflicts happening in digital memory space upon the real political/social/economic world, four aspect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1) who are the netizens involved in these conflicts; 2) how do they behave as a collectivity and communicate; 3) what are the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real world nationalism; and 4) how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respond to these viral mobilization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Key words) Digital Memory Space, Nationalism, Eurocentric Memory Space, Global Memory Space, Northeast Asian Memory Space, Netizen

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강화전략 연구*



송 문 석 주저자 경성대학교 (inlibro@ks.ac.kr)



황기식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kshwang@dau.ac.kr)

국문요약

본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공공외교 강화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에도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정부는 유학생의 양적 유치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은 재정수지 개선 수단으로 유학생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낮아지게 되며 반한정서가 높은 상태에서 귀국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가 친한파가 아닌 반한파와 혐한파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외교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체류국가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체류국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증한 'U-curve 이론'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태도를점검하고 호감도 변화 추이에 따른 정부와 대학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주제어: 유학생, 공공외교, 문화적응, U-curve 이론, 반한정서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외교(Public Diplomacy)¹⁾란 정부가 해외 공중(public)²⁾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자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대외 이미지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Cull 2008; Gilboa 2008; Signitzer & Wamser 2006).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 문화 소개 등은 공공외교의 대표적 전략 중의 하나이다. 특히 유학 중인 대학에서 접촉하고 습득하는 언어와 문화, 사상, 가치, 이미지 등은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den 2009; 이희성 2012).

유학생들은 장기간에 걸쳐 체류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문화를 경험하면 서 체류국과 국민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Yun & Vibber 2012). 이는 모국의 일반인이 대부분 자국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나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체류국과 체류국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간접 경험에 의한 그것보다 강력하며 지속적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체류국에 대한 태도는 학기 중이나 학업을 마치고 모국으로 귀국한 뒤에 자국민들에게 전파되며 그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들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통해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조성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

¹⁾ Public Diplomacy를 학계에서는 공공외교 혹은 공중외교로 번역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공외교법(제정(2016.2), 발효(2016.8))에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도 공공외교로 용어를 통일한다.

²⁾ 공중(公衆・public)은 라틴어의 푸플리쿠스(publicus・인민)에서 온 퍼블릭(public)의 역어이다. 르봉(Charles-Marie-Gustav Le Bon 1841-1931)이 근대사회의 인간을 비합리적・충동적 존재로 보고 미래사회를 '군중의 시대'로 본 데 반해 타르드(Jean Gabriel Tarde 1843-1904)는 인간을 합리적・독립적・자유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미래를 '공중의 시대'로 봤다. 타르드는 신문을 매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중의 출현이 여론을 활기있게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된다고 예측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731&cid=40942&categoryId=33370 (검색일: 2020, 01, 02,).

³⁾ 출처: http://www.law.go.kr/IsinfoP.do?IsiSeq=180836&efYd=20160804#0000 (검색일: 2020. 01. 02.).

려는 목적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Malone 1985).

2019년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 10만215명, 비학위과정 5만 9950명 등 모두 16만여 명에 달한다. 5년 전인 2014년 8만4891명과 비교하면 2배가 증가했다(교육부 2019). 이는 교육부가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Study Korea Project'⁴)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김한나 외 2016).

그러나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충분 히 관리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유학생들이 한국인(한국 대학생 포함)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반한감정을 갖게 됐다는 연구결과와 언론 보도도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단기 어학 연수생보다 2~4년 장기 체류 유학생의 반한감정이 높으며(김수한 외 2014), 중국 체류 당시 4%에 불과했던 반한정서 비율이 한국에 체류 하면서 41%로 급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구자억 2010).

유학생은 모국에서 대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가 평균 이상이며, 대표적인 문화자본인 학력자본, 즉 학위를 취득할 경우 모국으로 귀국한 뒤 계급의 재생산 혹은 계급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대학에서의 학위가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유학생들은 모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 이는 유학을 했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모국 국민에게 전파할 때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향후 모국과 유학 체류국가 간 외교적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계급적 지위를 획득했을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이주노동자나 외국인 관광객과는 달리 유학생이 갖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은 장기적으로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 중 41%가 국내 체류 중 반한감정을 갖게 됐다는 연구결과는 유학생 유치가 단기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득은 거두고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차원에서 오히려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유학생들이 체류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핵심이며, 이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4) &#}x27;Study Korea Project(2005~2012)'는 교육부가 2004년 12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유학수지 개선을 위해 수립한 추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교육체계를 세계화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했다. 2013년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Study Korea Project 2020(2013~2020)'으로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학생 증가세가 주춤하자 201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유학생 20만 명 유치 목표를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했다.

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uben & Kealey 1979; Redmond & Buny 1993).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성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정부와 대학차원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재학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정부와 대학이 취해야 할 정책적 차원의 대응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시기별로 문화적응 단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연구로 입증된 기존의 'U-curve 이론'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공공외교와 유학생의 전략적 가치

공공외교는 미국 터프츠(Tufts) 대학의 에드먼드 걸리언(Edmund Gullion) 교수가 1965년 학교에 에드워드 머로 공공외교센터를 세우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김명성 외 2007).5)

공공외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경성 국력(hard power)에 의존했던 기존의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교육 예술 사회 등 연성 국력(soft power)이를 활용하여 타국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활동이다(Nye 2008).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하드 파워에 의존한 외교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를

⁵⁾ 에드먼드 걸리언(Edmund Gullion)은 미국 Tufts 대학 Fletcher School of Law of Diplomacy 교수로 재직 중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 센터(The Edward R. Murrow Center of Public Diplomacy)를 세우면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에드먼드 걸리언은 머로우 센터 홍보 팸플릿에서 공공외교를 "공중(公衆)의 태도가 외교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해 갖는 영향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당시 공공외교 개념은 정부 대 정부의 외교를 넘어서 외국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을 지칭했다.

⁶⁾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Joseph W. Nye Jr,가 1990년부터 사용한 신조어로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적 제재 등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 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힘을 말한다.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양자를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구사하기도 한다.

2.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문화적응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한쪽 혹은 양쪽 집단에서 본래의 문화 패턴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문화적응(acculturation) 이라고 한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Herskovits 1938).

베리(Berry 1997)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자신이 속한 고유문화를 유지하려는 의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의지 여부에 따라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으로 구분했다.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 (integration),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에는 소극적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동화 (assimilation),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 수용에는 소극적인 분리 (separation),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는 물론 새로운 문화 수용에도 소극적인 주변화 (marginalization) 유형이 그것이다.

〈표 1〉베리(Berry)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차원		고유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긍정	부정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관계를 유 지할 것인가?	긍정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부정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출처: Berry(1997) 참조, 저자 재구성.

베리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은 많은 이민자나 유학생 등 새로운 문화에 편입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됐다.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4가지 유형 중 '통합 (integration)'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연구됐다(Kealey & Protheroe 1996). 또 이민자나 이주민 유학생 등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통합' 방식을 통해 문화적응을 할경우 동화, 분리, 주변화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am & Berry 2006).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통합' 수준으로 문화적응이 이뤄질 경우 가장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이른 반면 '주변화' 수준의 문화적응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David, Okazaki & Saw 2009).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이를 학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라고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왔다(Portes 1996; Kuo & Roysircer 2004).

포르테스(Portes 1996)는 소수 그룹의 구성원들이 지배그룹과 접촉할 때 지배그룹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 일상적 행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산두와 아스라바디(Sandhu & Asrabadi 1994)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규정했다. 이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각된 차별,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윌리암스와 베리(Williams & Berry 1991)는 소수자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절망감 소외감 정체성혼란 신체적증상 등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 밀린크로도트와 레옹 (Millinckrockt & Leong 1992)은 유학생들이 체류국의 언어, 학비, 사회적응, 향수, 역할갈등 등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고통에 직면한다고 보고했다. 유학 생활이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스트레스라는 역기능도 발생한다(주동범 외 2013).

3) 미디어 이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외국인이 유학생활 초기에 현지인과 대면접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 미디어는 현지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로 기능한다(이현숙 2002).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족하고 언어능력 한계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적은 대중 미디어를 더 선호하게 된다(Kim & GudyKunst 1987).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중 미디어 이용과 면대면 대화가 서로 상승적이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면대면 대화가 증가할수록 미디어 이용의 효과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이재신 외 2014).

4)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과 현지인의 직접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대중 미디어에 더해서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이 쉽다(Kim 2001).

유학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해외 주재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직접적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진선규 외 2000),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됐다(김현주 외 1997).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인과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박경우 외 2010).

5)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반한감정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반한감정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반한감정을 추적한 본격적인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전용수 외(2019)가 한국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중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각된 차별감은 몽골 학생이 가장 강한 인식을 보였으며, 다음이 베트남,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향수병은 베트남, 중국, 몽골 학생 순으로 강하게 느꼈으며, 경제적 고민은 베트남, 중국, 몽골 순으로, 학습 스트레스는 베트남, 중국, 몽골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의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한국과 해당국가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감정에 국내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유학생의 분포에서 중국 유학생이 44.4%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학생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23.4%), 몽골(4.6%)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사회에 대한 유학생의 태도와 가치

1) 가치와 태도

가치(value)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가치란 사전적으로 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감정적·의지적 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한

|114| 민족연구 75호

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가치는 삶의 바람직한 궁극적인 상태로서 추상적인 개념이며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태도의 기반이 되는 신념으로 기능한다(Schwartz 2012). 이에 비해 태도(attitude)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평가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치와 태도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며(Campbell 1963), 태도보다는 가치를 보다 근원적인 개념, 또는 태도의 근저에 깔린 성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Rokeach 1979).

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

유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문화적 폐쇄성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한국유학 추 천의향, 한국 취업의향, 한국 재방문의향 등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김영 기 외 2016).

이희성(2014)은 한국민들의 유학생 및 유학생의 모국에 대한 태도를 보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체류국 국민들이 유학생 출신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유학생들도 체류국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 대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외국에서도 이뤄졌다(Becker 1968; Davis 1971; Morris 1960).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중국인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반한정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보고가 이뤄졌다(구자억 2010; 서형 2010; 최지영 2011).

'적대적 미디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⁷⁾' 개념을 동원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터넷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한국 인터넷 이용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국인과의 면대면 대화가 많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완화되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김소영 외 2013).

⁷⁾ 적대적 미디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은 외국인이 자국이나 자국민에 대해 체류국 미디어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편향되게 지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내용의 객관성 혹은 편향성과는 별개로 특정 이슈에 있어서 강한 의견이나 신념을 지닌 수용자, 혹은 소수집단, 사회적으로 차별받기 쉬운 지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미디어 내용이 치우쳐 있다고 편향되게 인식하는 현상이다.

4. U-Curve 이론

U-curve 이론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Fulbright program)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버그(Oberg 1960)가 문화적응 연구를 하면서 비롯됐다. 오버그(Oberg 1960)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주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외로움 두려움 불안 분노 불행감 등의 심리적 증상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오버그는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4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학 국가에 도착한 직후 나타나는 1단계는 허니문 단계(honeymoon stage)로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한 열광과 흥미로움으로 매료된 시기다. 2단계는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stage)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 좌절, 분노 등이 나타나면서 유학 국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3단계는 회복단계(recovery stage)로 유학 중인 주재국에 대한 호감이 반등하는 시기다. 4단계는 적응단계(adjustment stage)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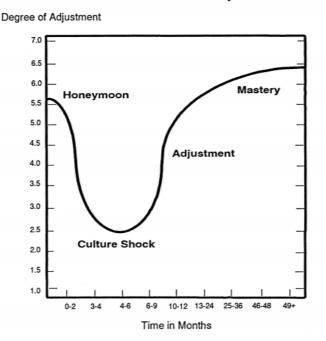
오버그의 4단계 U-curve 형태 이론은 1955년 리스가르드(Lysgaard 1955)가 미국에 유학 중인 노르웨이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론을 확립했다. 세웰과 모리스, 데이비드센(Sewell, Morris & Davidsen 1954)도 또 다른 스칸디나비 아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U-curve 현상을 확인하고 이론을 뒷받침했다. 리스가르드는 미국에 유학중인 노르웨인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6개월이 지나면서 호감도가 감소하기 시작해 18 개월째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U-curve 이론 연구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다양한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스콧(Scott 1956)은 스칸디나비아 출신 유학생을, 코흘로(Coehlo 1958)는 인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1960년대에는 모리스(Morris 1960)가 다국적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세월과 데이비드센(Sewell & Davidsen 1961)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 유학생을, 벡커(Becker 1968)는 유럽 인도 이스라엘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스콧과 세월, 모리스 등은 스칸디나비아 학생들 사이에서 동일한 U-curve 형태 패턴을 확인했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유사한 U-curve 이론을 검증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대상도 다양해졌으며, U-curve 형태 패턴도 계속 재확인 됐다. 히스(Heath 1970)는 다국적 출신 유학생을, 데이비스(Davis 1971)는 터키 출신 유학생을, 그린블라트(Greenblat 1971)는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출신 유학생을, 장 (Chang 1973)은 대만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stage)를 언제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리스가르드는 문화충격 기간을 6~18개월, 장은 7~18개월, 모리스는 10~19개월로 보고해 대체로 18개월 무렵 문화충격 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히스는 4~6개월, 데이비스는 2~3년을 문화적 충격기로 보고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에서 문화충격 단계는 짧게는 4~6개월, 길게는 2~3년으로 보고됐다(Black & Mendenhall 1991).

〈그림 1〉U-curve 형태의 4단계 문화적응 변화
The U-Curve of Cross-Cultural Adjustment



출처: Black & Mendelhall(1991, 227).

U-curve 이론이 미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에 집중해 연구됐다는 점에서 미국 이외 다른 국가 체류 유학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 점에서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충격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Iwao & Hagiwara 1991; Kenkyukai 1997; Chung 1998).

Ⅲ.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공공외교 정책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국가적 차원에서 나선 것은 2000년 중반이다. 중국과 일본이 1980~1990년대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것과 비교할 때 늦은 편이다.

교육부(2019)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⁸⁾은 2003년 1만2314명에서 매년 증가추 세를 보이면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 16만165명으로 집계됐다.



⟨그림 2⟩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출처: http://bit.ly/2SOrBa1 (검색일: 2019. 12. 31.).

2019년 12월 31일 현재 유학생을 출신국가 별로 보면 중국 7만1067명(44.4%), 베트남 3만7426명(23.4%), 몽골 7381명(4.6%), 일본 4392명(2.7%), 미국 2915명(1.8%), 기타 3만6984명(23.1%) 등이며, 전체에서 아시아 국가 출신이 14만5747명

⁸⁾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2013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했으며, 2014년부터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한 결과치다.

(91.0%)로 편중된 상태다. 유학생을 유학형태 별로 보면 전문학사·학사 6만5828명 (41.1%), 석사 2만3605명(14.7%), 박사 1만782명(6.7%) 등 학위과정이 10만215명 (62.6%)이고, 어학연수생 4만4756명(27.9%), 기타연수생 1만5194명(9.5%) 등 비학위과정이 5만9950명(37.4%)이다.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

한국 정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인프라 구축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2008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시도했다. 외국인 유학생 운영체제의 부실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09년 유학생 정책의 초점을 질 관리로 전환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단계별로 유치, 정주, 수학, 졸업 후로 시기를 나눠 단계별 맞춤형 국가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1a).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1년 9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 2011b).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한(知韓)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국격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9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을 도입해 유학생 유치 관리에 관한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대학을 선정 및 인증했다.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초청 외국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⁹⁾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⁹⁾ GKS는 1967년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한(親韓) 국제 인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67년부터 2019년

우선 지원 및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교육부 2011c).

정부는 2012년 기존의 'Study Korea Project('05~'12)'를 수정 보완한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 인재풀 육성 등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GKS) 사업 규모 확대, 유학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 같은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실시에도 불구하고 학업 및 생활 부적응, 배타적 문화 등으로 유학생들의 반한감정 문제가 노출되자 2014년 3월 교육부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유학생 증가세가 2011년부터 정체되자 교육부는 201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보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목표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했다(교육부 2015). 교육부는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 다변화,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을 3대 전략으로 정하고,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어학연수생의 유학생으로 흡수,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공공외교와 정책적 한계

1)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방향

한국은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¹⁰⁾을 수립하고 공공외교 수행주체로 중앙부처 지자체 재외공관 민간 등을 지정했다.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 '공공외교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을

⁹월 1일 현재까지 GKS를 통해 배출된 졸업생은 156개국에서 전문학사 82명, 학사 1614명, 석사 6037명, 박사 1885명, 연구 177명 등 총 9795명이며,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http://bit.ly/2SOJyp0 (검색일: 2019, 12, 13,).

¹⁰⁾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공공외교 가이드 라인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연간 시행계획을 제출해 외교부가 이를취합,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출처: http://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ation.jsp (검색일: 2019. 10. 23.).

설치하고 공공외교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을 지정해 한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외교 추진전략을 한국학 진흥과 한국어 보급, 문화자산을 활용한 감성 공공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맟춘 문화·지식 분야, 국민의 공공외교 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주안점을 둔 국민역량강화 분야, 주요국에 우리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활동 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크게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강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지원사업 두 가지다.

교육부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전략과제로 정하고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¹¹⁾,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진흥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로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입장, 한국어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다(외교부 2018).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사업은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을 국내 대학에 초청해 한국어 연수(1년) 및 학위과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2)

2) 유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외교 지원책

정부가 잇따른 유학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입학, 재학, 졸업 후까지 전주기에 따른 정부와 대학의 지원정책이 미흡하고 겉돌다 보니 유학생들의 불만과 반한감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교육분야의 공공외교 정책이 추진기관 간에

¹¹⁾ 한국 정부는 재외 한국교육원을 18개 국가에 44개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19년 기본경비 예산(안)은 116억6백만 원이며, 이 중에서 운영비 일부를 공공외교 등의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교부(2018),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1(중앙행정기 관)".

¹²⁾ GKS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국내 대학에 초청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2018년의 경우 생활비(월 80~90만 원), 등록금(학기당 500만 원 한도), 어학연수비(분기별 80만 원), 연구비(학기당 21~24만 원), 보험료(월 2만 원), 항공료(실비)가 지원됐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486억2600만 원이 반영됐다.

중복되거나 전시성, 행사 위주가 많아 유학생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전한 것으로 여러 연구는 밝히고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어 학습, 지각된 차별감, 문화충격, 경제적 고민, 의사소통, 향수병 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북 모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족한 한국어능력으로 인해학업성취도가 낮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돼 좌절감을 겪고 있었다. 또한국 학생과의 교류기회 부족으로 한국어 실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확장이제한적이라고 보고했다(정유리 2018).

대학 내 유학생 담당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유학생 관리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적절하고 시급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수와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학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을 학교 안의 기관을 알지 못하며 문화적 차이로 상담을 꺼렸다. 연구자들은 교수를 포함한 한국동료나 기관 등 적절한 지지 자원과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오혜영 외 2018).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와 상담이 형식적이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담임제' 실시가 요구됐다. 또 유학생은 사제관계는 물론 한국인 학생, 다른 출신국 학생들과도 사회적 관계가 미흡했고, 한국 학생과의 1대 1 매칭을 통해 유학생활 적응을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박순영 2016).

Ⅳ. U-curve 단계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전략

1.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U-curve 패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류 기간별로 호감도를 정밀하게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형(2010), 구자억(2010), 백지숙(2008), 정유리 (2018)의 연구를 종합하면 체류 기간별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가 나타나며, 전체적

으로 U-curve 패턴을 보이고 있다(이희성 2012).

구자억(2010)이 한국 체류 중국인 유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형적인 U-curve 형태 패턴의 호감도 변화를 보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체류기간 1년 미만 체류자는 반한정서가 28%로 낮게 나타났으며, 1~2년 48%, 2~3년 46%, 3~4년 57%, 4년 이상 40%로 나타났다. 한국체류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초기 허니문 단계(honeymoon stage)인 1년 동안은 한국 사회에 호감도를 가지다가 점차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stage)로 접어들어 체류기간 3~4년째 반한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기간 3~4년 그룹에서 반한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어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와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적대적 지각 (hostile perception)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형(2010)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2~4년 되는 시기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많이 갖게 됐으며, 반한감정을 갖게 된 시기는 체류 2년 미만 7%, 2~4년 49.3%, 5~7년 31.3%로 보고했다.

이들 연구에서 보듯 한국체류 초기에는 환상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대체적으로 긍정 적으로 바라보다가 구자억 연구의 경우 3~4년, 서형 연구의 경우 2~4년 기간에 반한감 정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는 언어 장벽이 사라져 한국인들과 한국 미디어에서 자신과 자신의 모국을 바라보는 태도와 보도 경향을 파악하고 부정적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적 응 연구에서도 U-curve 형태의 패턴을 확인했다.

백지숙(2008)이 전남의 모 대학교에 유학 중인 다국적 유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적응 연구결과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유학생이 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 2~3년 유학생의 적응정도가 가장 낮았다. 체류기간이 3년을 지나면서 적응정도는 다시 높아져 전형적인 U-curve 형태 패턴을 보였다. 경북 경산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유리(2018)의 연구결과 1년 이상~2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 유학생 보다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 연구들을 종합할 때 비록 본격적으로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U-curve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curve 이론에 대한 해외의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U-curve 형태 단계별 문화적응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부 및 대학의 법적 행정적 측면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호감도 하락단계(Honeymoon · Culture Shock stage)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허니문 단계 및 문화충격 단계에서 호감도에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

유학생들이 체류국에 도착한 직후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매료된 시기로 호기심으로 들떠 있는 단계이다. 호감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 구자 억(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도착하고 1년 미만의 허니문 단계에서 반한감정 소지자 비율이 28%를 기록했다. 한국에 오기 전 반한감정 소지자 비율이 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도 되지 않아 호감도가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유학생들은 유학생활 초기에 소속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만을 갖게 된다. 학기 초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불만이 쌓이 게 되고 이는 반한정서로 전환되기도 한다. 문화 간 접촉에 있어서 초기 태도(attitude) 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Amir 1969). 첫 인상이 태도로 형성되고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갖 게 되기 때문이다.

인적 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허니문 단계에서 많이 드러난다. 한국인 학생들은 언어가 서투르고 문화가 상이한 외국인 유학생을 기피하고 스터디 그룹이나 팀 프로젝트에 끼워주지 않으려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로움과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생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은 학업성취의 난관으로 이어지며 반한감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인 재학생들의 유학생과 유학생의 모국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왜곡된 인식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반한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재학 중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유학생 중심이 아니라 한국인 재학생 중심으로 이뤄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 을 넘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한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우월 하다는 소개나 설명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유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대학 내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도 역시 반한정서를 높이는 요인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대학 내 교직원이 없거나 관련 조직이 미흡한 것도 한국에 대한 반감을 부른다. 교직원은 물론 교수 등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련자들의 유학생에 대한 몰이해와 소홀한 응대, 편견 등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유학생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모든 생활이 서툴고 낯선 유학 초기에 집중된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현실은 그렇 지 못하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유학 생이 각자도생해야 할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하다.

제도와 시스템의 부족에서 오는 불만과 불편도 많지만 반한감정으로 연결되는 요인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혹은 결핍이 크게 작용한다. 유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나 담당직원이 맡아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밀접하게 도움을 줄 동급생이나 선배의 부재는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많은 유학생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난감했다는 호소를 많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니문 단계를 지나 체류기간이 2년 정도가 되면 언어능력이 향상되면서 한국인 재학생과 한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부정적인 표현일지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이는 곧 반한정서로 축적된다.

유학 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호감도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점차 낮아지게 되며, 중국 유학생의 경우 주재국인 한국에 도착한 지 1~2년 무렵에 반한정서 소지자가 4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억 2010).

2) 허니문 단계 및 문화충격 단계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정부의 전략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유치단계에서부터 졸업 이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간산업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차별적이고 중장기적인 유학생 유치-관리-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학생의 유치와 입학, 졸업 후까지 전 과정의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학생을 수용하는 주체인 대학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A~Z까지 유학생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전국의 대학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IEQAS)'와 'Study Korea Project('05~'12)'에 이은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하지만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이 발생하고 유학생의 반한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여전히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유학생20만 명 유치계획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우수대학에 대해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한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특히 한국어능력은 유학생활 중 학업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완화해주면 유학 중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유학생 정책은 정부가 종합적인 가이던스를 제작하되 대학별 능력과 수준, 관리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악용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구사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건강보험과 관련된 복지부, 졸업 이후 취업 등과 관련된 노동부, 대학, 기업 등 관련 기관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 다. 이들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불가능함 은 물론 수립되더라도 형식적인 추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유학생 유치의 선진국인 호주의 사례는 벤치마킹할 만하다.

호주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1.2%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0년대 들어서 교육산업은 석탄, 철광석과 함께 호주의 3대 수출품으로 성장했다.

호주는 2008년 인도인 유학생에 대한 잇따른 폭행사건으로 유색인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폭력이 대두됐다. 동시에 부실 사립교육기관의 폐교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착취 등으로 유학생 교육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고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되자 공공외교 차원에서 유학생 정책을 전면 개선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ESOS)을 개정해 유학생의 권리보장, 양질의 정보제공, 교육서비스 질제고, 위험에 처한 유학생의 거처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국가 브랜드화

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한 의료보험, 입학 전 어학교육,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교육, 장학금과 인턴 취업 등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졸업 후에는 유학생을 위한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각 주는 부실 전문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과감하게 폐교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대학의 전략

대학은 교육부의 표준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유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충분하게 전 달하고 대학 자체적으로도 학사 행정과 시설,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 오해로 인한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한국 정부와 소속 대학에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만과 오해를 조기에 해소시켜 반한감정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는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불만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 수집의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는 정부 차원의 민원과 대학차원의 민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학교생활과 학업 등에 있어서 유학생과 한국 학생을 맨투맨으로 연결시켜 한국사회, 학사행정, 수업 등을 안내하고 도와줌으로써 유학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 다. 유학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멘토, 유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 지원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인력풀을 확보해 투입하는 도우미, 명절이나 휴일에 한국가정 에서 가족문화를 체험하는 홈스테이,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트 등의 제도 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에게는 장학금, 봉사점수 등의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은 유학생의 한 국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하는 효과는 물론 국내 학생에게도 상대국에 대한 이 해의 지평을 넓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행정적 지원과 절차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개발은 필수적 과제다. 유학생들이 한국생활과 유학 중인 대학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오리엔테이션의 부재 혹은 부실로 지적됐다(구자억 2010). 한국 학생들도 신입생의 경우입학 초기에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3) 커뮤니케이션 전략

외국인이 새로운 정착사회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Kim 1977).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은 이처럼 이주민이나 유학생 등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는 이론이다. 접촉가설의 주창자인 올포트(Allport 1954)는 개인이 다른 그룹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두 그룹이 만나 접촉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상대에게 가졌던 편견(prejudice)도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착사회의 미디어 이용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Kim 2001). 미디어를 이용한 정착사회의 이해와 습득과정은 접촉가설의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준사회적 접촉 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로 확장된다. 마치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이 미디어 속 다른 문화권의 인물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본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접촉가설과 준사회적 접촉가설은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 있어서 대인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유학초기 한국사회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필요가 있다. 유학 초기 허니문 단계에서부터 대인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유학생과한국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동아리를 통해 대면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생활 안정과 유대감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올포트의 접촉효과를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조건, 즉 동등한 지위, 동일한 목표 공유, 그룹 간 협동 등을 갖추고 있어 대학 차원의 지원만 이뤄진다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유학생들이 단독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중 문화연구회', '한・베트남 경제연구회', '한・몽골 역사탐사회' 등 양국 상호 간의 이해에 중점을 둔 동아리를 결성하고 정부, 기업, 대학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김선남(2007)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동아리 활동이 대학적응과 성적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유학생들의 반한정서는 한국인 재학생 혹은 한국인들의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경우가 많다. 구자억(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인을 무시하고', '안 좋은 모든 상황을 중국에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꼬며 농담하는 것을 보고 불쾌한 느낌을 받았으며', '한국인들은 거만한 태도로 중국인을 무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반한정서의 원인이 된다고 구자억은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동북공정, 사드, 홍콩민주화시위, 베이징올림픽, 남북관계 등 한 국과 중국 간에 밀접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이슈로 인한 갈등이 반한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 간의 이슈를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 대학 내에서 한국 인 학생들도 상대를 배려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대화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절 실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전쟁, 라이 따이한, 베트남 경제와 한국 기업의 투 자, 빈부격차, 노동문제, 결혼이주여성 등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인 재학생과 유학생이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왜곡된 시각이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필요가 있다. 서로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한다.

3. 호감도 상승단계(Adjustment · Mastery stage)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적응 단계 및 숙달 단계에서 호감도에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

유학생들은 체류기간 3~4년째에 반한정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적응단계에 들어서고 상승단계로 이어지며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이게 된다. 호감도 적응단계와 숙달단계를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며 어렵다. 따라서 적응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된 4~5년 이후부터 숙달단계까지를 하나로 묶어 반한정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4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 재학생이 대부분이다. 체류 기간이 짧은 학부생과 어학연수생은 적응단계를 맞기 전, 즉 호감도 하락단계에서 출국하게 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학

은 유학생이 언젠가는 떠날 신분이라는 생각에 이들의 관리에 무신경하다.

숙달단계에 들어가는 유학생은 시기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취업 등 진로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유학생들도 학위 취득 후 한국에서의 취업에 관심이 많으나 정작 대학은 이들을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은 학위 취득 후 당연히 귀국해 모국에서 취업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유학생들은 한국에 남기를 원한다. 201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정책발전 대토론회'에서 중국유학생들은 취업정보 및 취업 지원정책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윤지환 2012).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은 졸업한 대학에 대해 특별한 우호정서를 가져야 함에도 재학시의 불만으로 인해 반한정서를 갖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구자억 2010). 유학생들은 향후 양국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한정서를 안고 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과제물 시험 조별활동 등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우수한 학점을 받을 수 없는 등 학사 관리에 대한 불만이 많다. 기숙사 식당 상담실 등 생활환경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도 반한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금지, 기업체의 유급 인턴십 문제, 비자문제 등의 불편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2) 적응단계 및 숙달단계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정부의 전략

정부는 유학생의 불만이 많은 아르바이트, 비자 등에 관한 법적인 제한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현지인들과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반한정서를 가지게 되며 이는 고정화될 수도 있다. 유학생에 대한 일괄적인 아르바이트 규제보다는 사설 외국어학원과 관공서, 관광센터 등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함으로써 체류 중 경제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에 융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줌으로써 문화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한 파, 지한파를 양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호주가 기술이민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지원자들의 반 이상이 호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정부는 유학생의 출신지역, 학부대학, 성적, 특기, 장래희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공공외교적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우수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친한파 유학생들을 최 대한 늘려가야 한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을 위한 한국기업 취업 박람회', '유학생 한국기업 취업 사례 보고', '유학생 취업을 위한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한국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유학을 마친 뒤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의 직업을 갖게 되는 유학생은 체류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Becker 1968).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는 모국의 학술 교육분야에 진출한 유학생에게 일본의 모교 연구자와 함께 단기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우종 2011).

(2) 대학의 전략

적응단계 및 숙달단계는 유학생활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해당되고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모국과 한국, 양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인력풀로 활용해야 한다.

재학 중에 유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관리하고 졸업한 뒤에는 동문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과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교에 대한 소속감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후배들의 모교 유학 유도 등은 물론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정서함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특히 졸업 후 유학생이 모국으로 귀국한 이후 현지 동문회를 결성하도록 지원해 유학생들끼리는 물론 출신 대학교,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술과 연구교육 분야 종사자는 모교의 교환교수, 방문학자, 공동연구 등의 기회를 제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제자들을 다시 모교로 유학을 추천하는 선순화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유학생은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유학을 올 때는 한류와 IT 기술, 높은 학문 수준과 선진 문화 등에 기대를 걸고 왔지만 공부를 마칠 때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실망과 불만 이 쌓인 상태에서 귀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학생을 유치해 친한 인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한 인사를 배출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은 체류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나 결혼 이주여성(남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기간 체류한 뒤 귀국하는 이주 노동자와는 여러모로 다르고 특수하다. 유학생은 문화자본인 학위취득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상승될 개연 성이 높다. 이는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이주 노동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유학생의 공공외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낮다. 정부도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공외교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형식적인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 유학생 정책의 경우에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해 20만 명 유학생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만 매진할 뿐 질적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유학생들이 체류 중 반한감정을 갖게 되고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2023년까지 20만 명을 유치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국 제화와 유학수지 개선 등과 함께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 인재풀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에 치우치고 있다. 대학 재정 확충과 유학수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해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실패하는 것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국 유학의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유학 홈페이지를 구축해 일원화함으로써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링크함으로써 유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개별적인 상세 소개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를 도입해 우수대학 모범 기

준을 제시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등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사에 대한 불만과 불편, 기숙사와 식당 등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의 불만, 교수와 동료 한국 학생들의 편견과 몰이해 등은 소외감과 부정적 정서감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반한감정으로 비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유학생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함께 유학생 전담조직을 운영해 24시간 지원체제를 갖춰 사소한 불만과 불편이 반한정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 내에 유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팀 프로젝트에 유학생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한국학생들이 극심한 취업난에다 동료 학생들 간 경쟁심이 작용한 결과로 대학과 교수가학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대학 현장에 천착해 이뤄져야 하며 대응책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은 소수자인데다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나 감정 밑바닥에 분노와 좌절, 반감을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간의 문화적 접촉은 단순히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도움이되는 것만은 아니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장래에는 친한파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한국 학생은 국제화와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득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U-curve 형태 이론은 수차 검증됐다.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U-curve 패턴은 검증됐다. 미국 유학생은 물론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도 U-curve 형태의 호감도 패턴을 보인 것은 U-curve 이론의 일반화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변화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구자억(2010)의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U-curve를 보인 것이 드문 연구사례다. 미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U-curve 패턴을 보인 것을 바탕으로 구자억의 연구와 몇몇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례를 원용해 본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학생 유치 이후 공공외교적 차원의 강화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 중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U-curve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적별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효적이고 정밀한 공공외교적 차원의 문화적응 대응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공공외교적 측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유학생의 체류국에 대한 호감도는 관계 당사국은 물론 양국 국민들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점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다.

ͺ참고문헌 ———

- ■구자억.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46.
- ■김명성·안혜경. 2007. 9.11 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 김선남. 2007.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10(1), 185-206.
- 김소영·양정애·양승목. 2013. 한국 미디어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지각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미디어 이용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예측변인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7, 33-75.
- 김수한·유다형, 2014, 인천시 중국인 유학생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김영기·김찬석·문송이·박진수. 2016. 외국인 유학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간의 경로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60(2), 305-337.
- 김우종. 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김한나·우한솔·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17(4), 311-337.
- 김현주·전관희·이혜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0, 105-139.
- 박경우 · 여은호. 2010.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소통 인식에 관한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14, 64-94.
- 박순영. 201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2), 75-102.
- ■백지숙.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 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서형. 2010. 재한 중국인의 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혜영·이윤희. 2018. 국내 대학 담당자들이 인식한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과 심리지원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01-121.

■윤지환. 2012.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체계적인 지원방안 논의. 주간한국. 3월 4일.

- ■이재신·이문광·류재미·최문훈. 2014.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통합에 대한 영향 요인 탐구. 한국언론학보 58(5), 233-454.
- 이현숙. 2002. 문화간 불확실성에 따른 교민들의 자국방송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 이션학연구 10(2), 152-186.
- ■이희성. 2012. 중국 유학생에 대한 공중외교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U-curve 이론의 단계별 전략 고찰. 언론과학연구 12(2), 451-477.
- _____. 2014.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 형성 요인 및 요인 간 관계 연구 : 공 중외교 관점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4, 229-263.
- 전용수·Tran Nguyen Nguyen Han·전규미.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별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언어학연구 50, 347-363.
- 정유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150-185.
- ■주동범·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진선규·박재수. 2000. 해외 주재원의 문화 적응과정에서 불확실성 감소와 해외체류에 대한 만족. 경영학연구 29(2), 197-212.
- ■최지영. 2011.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국제정치 논총 51(1).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 Amir, Yehuda.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5), 319-342.
- Becker, T. 1968. Pattern of attitudinal changes among foreign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4), 431-442.
- Black, J. Stewart., & Mendelhall, M. 1991. The U-curve adjustment hypothesis revisited: A review &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 Studies 22(2), 225-247.
- Campbell, D. 1963. Social attitudes and other acquired behavioral dispositions.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Wiley, 94-172.
- Chang, H. B. 1973. Attitudes of Chi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8, 66-77.
- Chung, T. G. 1998. Nihon(Irubon) no Imeji: Kankokujin no Nihonkan(The Image of Japan: Korean Perception of Japan). Chuo Koronsha.
- Coelho, G. V. 1958. Changing Images of America: A Study of Indian Students' Perceptions. Glencoe. Free Press.
- Cull, N.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31-54.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6, 211-226.
- Davis, J. 1971. The two-way mirror and the U-curve: America as seen by Turkish students returned home. Sociology & Social Research 56(1), 29-43.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Addison-Wesley.
- Gilboa, E. 2008.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55-77.
- Greenblat, C. 1971. Foreign students in the US: A study of attitudes and orientations. Sociological Focus 4(3), 17-35.
- Hayden, C. 2009. Applied public diplomacy: A marketing communications exchange program in Saudi Arab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4), 533-548.
- Heath, G. L. 1970. Foreign student attitudes at international house, Berkeley.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5(3), 66-70.
- Herskovits, M.J. 1938. Acculturation: The study of culture contact. J.J.Augustin.
- Kenkyukai, H. C. 1997. Tokyo Daigaku no Kankokujin Ryugakusei: Sono Seikatsu Jokyo to Nikan Kankei e no Teigen(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eir Living Condition and Proposals for Japan-Korean Relations). Tokyo

- University Press.
- Iwao, S., & Hagiwara, K. 1991. Nihon de Manabu Ryugakusei-Shakai Shinrigaku Bunseki(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Keisoushobo.

- Kealey, D. J., & Protheroe, D. R. 1996. The effectiveness of cross-cultural training for expatriate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on the issu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20(2), 41-165.
- Kim, Y. Y. 1977. Communication patterns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66-77.
- Kim, Y. Y. 2001. Becoming intercultural: An integrativ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ion. Sage.
- Kim, Y. Y., & GudyKunst, W. B. 1987.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Sage.
- Kuo, B., & Roysircar. 2004. Predictors of acculturation for Chinese adolescents in Canada: Age of arrival, length of stay, social class, and english reading ability.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 143-154.
-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45-51.
- Malone, G. 1985, Managing public diplomacy, Washington Quarterly 8(3), 199-213.
- Millinckrodt, B., & Leong, F. T. L.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71-78.
- Morris, R. T. 1960. The two-way mirro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ye, J.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94-109.
- Oberg, K. 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ortes, P. R. 1996. Ethnicity in education and psychology. In D. Berlinger & R. Calfee(Eds.). The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Macmillan, 331-358.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edmond, M., & Buny, J. 1993. The relationship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 stress and the handling of stress as reported by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17, 235-254.
- Rokeach, M. 1979. Understanding Human Value. Free Press.
- Ruben, Brent D., & Kealey, Daniel J. 1979. Behavioral assessment of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the prediction of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3(1), 15-47.
- Sam, D. L., & Berry, J. W. 2006.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hu, D., & Asrabadi,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 92-115.
-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1.
- Scott, F. D. 1956. The American experience of Swedish students: Retrospect and aftermath. Minnesota University Press.
- Sewell, W. H., & Davidsen, O. M. 1961. Scandinavian students on an American camp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ewell, W. H., Morris, R. T., & Davidsen, O. H. 1954. Scandinavian students' image of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cross-cultural educ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95, 126-135.
- Signitzer, B. H., & Wamser, C. 2006. Public diplomacy: A specific governmental public relations function. In C. Botan & V. Hazleton(Eds.), Public relation theory I.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35-464.
- Will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y 40, 501-510.
- Yun, S.H., & Vibber, K. 2012. The strategic values and communicative action of Chinese students for sociological Korean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6(1).

■교육부. 2011a.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결과(2011. 02. 21.).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34089 &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636&s=moe&m=020402&opType= N (검색일: 2019. 12. 31.).

- ______. 2011b.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2011. 08. 16.).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 294&boardSeq=3475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70&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_. 2011c.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본격 시행(2011. 09. 22.).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3488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56&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_.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2014. 03. 06.).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2792 &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25&s=moe&m=020402&opType= 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2015. 07. 07).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991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56&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9. 08. 29).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78 &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5&s=moe&m=020402&opType= N (검색일: 2019. 12, 31.).
- ■외교부. 2018.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 투고일: 2020.01.03.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8.

|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Song Moonseok (Kyung Sung Universit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This paper confirms the strategic value of foreign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and suggests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of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e age of 200,000 foreign students is ahead.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foreign students are an important strategic asset in public diplomacy, domestic research on them is less active than in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 also focuses on quantitatively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nd universities tend to recognize it as a poor fiscal balance. As a result, foreign students' attitude toward Korea gradually decreases with time, and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ith higher anti-establishment. Criticisms are raised that foreign student attraction is fostering anti-Korean and anti-Koreans, not pro-Korean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trends of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and their preference for their country of reside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based on trends in their attractiveness, using the "U-curve theory" established as a theory of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and attitude toward the country of residence.

(Key words) Foreign students, Public Diplomacy, U-curve theory, Anti-Korean Sentiment, Favorability, Cultural adaptation, Acculturation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과 그 특징 연구



안 병 삼 제1저자 삼육대학교 (bayusansan@syu.ac.kr)



김 수 진 교신저자 삼육대학교 (ksj818@syu.ac.kr)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은 음악의 3대 요소를 기준으로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리듬은 박자・리듬 꼴・갖춘마디와 못갖춘마디(센내기・여린내기)의 여부・시작 리듬 등 4가지로, 선율은 음계・음역・전주사용 여부등 3가지로, 화성은 조성・성부 조직・종지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본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은 첫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둘째, 악보의 오류를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셋째, 숨표나심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일본, 조선학교, 교가, 재일동포, 음악, 특징, 리듬, 선율, 화성

I. 들어가는 말

한민족들은 예로부터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원인으로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민족은 1903년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 이민을 시작으로 현재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2019년 현재 7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1)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1955년 이후부터는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들을2) 외국인 등록자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외국인 등록상의 재일조선인은 60만 명 전후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이러한 해외 한민족들은 대체로 현지국가에서 처음에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첫 이민을 떠났던 미국의 한민족이 그러했고, 유럽의 광부나 간호사 등의 한민족도 그러하였다. 심지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한민족인 조선족들도 현재는 과거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나 사

¹⁾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재외 동포는 193개국에 7,493,587명이다.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2,546,982명이고, 두 번째가 중국으로 2,461,386명이다. 세 번째가 일본으로 824,977명이다. 일본의 경우, 영주권자가 361,351명, 일반 체류자가 71,058명, 유학생이 17,050명, 외국국적(시민권자)이 375,518명이다. 출처: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major_area.do (검색일: 2019. 11. 21.).

^{2) &#}x27;재일동포'는 재일한국인·재일조선인·재일한국·조선인·재일 코리안·재일 한인 등 여러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줄여서 자이니치(在日)라고도 부른다. 본문에서는 재일동포를 사용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재일교포'와 '재일조선인'도 사용할 것이다.

^{3) &}quot;여기서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출신지) 관련 표기에 대한 이해를 간략히 구하자면, 재일동포들이 의무적으로 상시 휴대해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는 '한국' 혹은 '조선' 둘 중의 하나가 반드시 표기된다. '한국'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가 한국 국적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이라 표기된 외국인들은 북한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여기에서 조선이란 북한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조선)라고 하는 원래의 출신지를 의미한다. 북한과 국교가 없는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상에 '조선'이라는 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크게 두 부류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조선'을 북한과 동일시해 북한을 지지하는 이들과 '조선'을 단지 문화적 출신 배경으로만 해석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특별영주자)이다. 이처럼 외국인 등록상의 '조선'이라는 표기는 일본 정부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 등록을 자의적으로 해석/관리하기 위한 '편의상의 기호'에 불과하다(高英穀 2002, 38-39)."

회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의 한민족들은 중 국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나라 잃은 설움을 당했던 과거가 있지만, 점차 나아지는 삶 보다는 더욱 일본 정부의 차별과 사회적 냉대로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힘든 나날을 보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족학교인 조선학교4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사회적 불 이익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 조선족 학교는 일본이 패망하고 1949년 중 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모든 학교가 한족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 는 시스템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한족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조선학교의 경우 일본 이 패망한 1945년 이래로 끊임없는 일본 정부의 탄압과 차별로 지금까지도 계속 고 난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많은 재일동포가 거리로 나와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 최근 재일동포들이 거리로 나와 일본 정부에 항의하게 된 이유는 일본 정부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와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선총련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제 도 중 하나로 꼽힌다. 5) 더 심각한 것은 일본 법원도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지 원금 지급 소송에서 학교와 조총련의 과거 관계를 언급한 신문기사를 원용하며 지원 금이 조총련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 패소 판결 이후 지속해서 패소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⁴⁾ 조선학교는 조선인학교, 민족학교, 그리고 '우리학교' 등으로 불린다. 어떤 용어든 그 나름의 정치성을 함의하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선학교로 칭하고, 인용인 경우에는 인용문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⁵⁾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 엔(한국 돈 약 134만6천~269만3천 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운영하는 조선학교를 이 제도 대상에 넣을지 고민하였고, 새롭게 총리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자 조선학교는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현재조선학교만이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다른 중국계 화교학교, 브라질학교, 국제학교 등 40여 개의 일본 내 외국인학교는 동일하게 이 제도를 적용받아 취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6) 2019}년 10월 3일,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아이치(愛知)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자신들을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550만 엔(약 6천1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18년 4월 1심 판결에서 "조선총련의 개입에 따라 학교 운영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졸업생들은 항소했다.

이렇게 일본 한민족들은 일본에서의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후세교육은 포기하지 않고 조선학교를 꿋꿋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얼마남지 않은 일본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우리의 해방과 더불어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국내에서는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물론 조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문화'의 자료 발굴과 그 연구는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조선학교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1세대 재일동포들이⁷⁾ 우리말을 못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우리글·우리말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만든 국어강습소의 전신이다.

본 논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가란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한민족의 사회적·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족학교의 교육 정신이나 목표, 그리고 특성 등이 담겨있는 것이다. 흔히 교가는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길러주고, 동시에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학교가 특별히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로 정의된다(안 병삼 2011, 370). 이 때문에 교가는 가사 속 내용뿐만 아니라 운율에서도 학교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가 가사를 통해 학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학교 정신과학습 목표를 드러내놓고 있으며, 음악적 요소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하는 내용은 강한 리듬과 반복적 사용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가를 통한 교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일본의 한민족에게 민족정체성 유지는 물론 그들만의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²⁰¹⁹년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 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 엔(약 7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http://bit.ly/38WgMs8 (검색일: 2019, 11, 23.).

⁷⁾ 독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그 자손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고 한다. 일본 내에서는 줄여서 재일(자이니치)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과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두 부류가 있다. 재일동포 단체는 크게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 올드커머 한국계 단체. 한국 정부와 협력관계이지만 한국 정부에서 독립된 단체이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올드커머 북한계 단체. 북한 정부 산하에 있다)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 조선학교는 일반적으로 조총련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도 있고 북한 국적의 학생도 있다.

비록 그동안 한국 및 해외에서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학술 연구나 NGO 활동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일본의 조선학교 교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사실, 국내·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을 포함한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8) 해외 한민족 교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중국 조선족 학교 교가 연구이고, 일본 조선학교나 구소련지역의 고려인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구성과는 안병삼(2011, 2012, 2013, 2014)의 조선족 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이 다. 그는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학교 대부분을 수년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선생님을 만나 조선족 학교의 현황을 듣는 동시에 교가를 포함한 다른 '학교문화'와 관련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임영언·김태영(2017)의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과 안병삼ㆍ임영언(2018)의 논문「해외 한민족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 - 중국 조선족학교와 일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이 있다. 일본에서의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김리화(2015)의「故郷としての朝鮮学校-朝鮮学校の音楽教育に関 する一考察」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교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거나 교가 가사에 집중되어 있고 교가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에 관한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해외 한민족학교의 음악적 내용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는 사이 전 세계의 한민족학교는 집거지의 붕괴와 학생 수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교되는 학교가 급증하였고 수많은 교가도 함께 사라져갔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일본 조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한때 일본 전역에 600여 개의 조선학교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60여 개의 학교만이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민족들이 한반도를 떠나 타향에서 살면서 추구하였던 민족교육 이념과 민족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교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분야이고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반도를 벗어나 우리 민족 문화를

⁸⁾ 국내 학교들의 교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그 예로 승윤희의 논문을 참고할 만 하다(승윤희 2014, 1-16).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영토와 학문 영역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안병삼 외 2018, 153-175). 동시에 그동안 민족학교의 음악적 요소 분석 연구는 민족학교 교가 연구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출발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일본 조선학교에서 수집한 교가 50개 중 악보가 있는 교가 14개이다.9

Ⅱ. 일본 조선학교의 개황

재일동포의 시작은 대한제국 때 일본으로 유학한 학생들이다. 1923년에 일본 열도에 있던 조선인의 수는 8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1945년 패전 직전에는 200만에 이른다. 해방후 일본에 체류하던 조선인의 대부분은 한반도로 돌아갔지만, 불안한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경제 혼란으로 일본에 남은 숫자도 많았다. 이들은 한반도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했기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과거의 공장과 지역으로 돌아갔다. 오사카에 재일동포가 많은이유는 군수공장이 밀집하여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조선인이 일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일동포 1세대는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식민지 지배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은 어린아이들이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어 우리말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우리글・우리말을 잊지 않게 하도록 전국에 국어강습소 교육을 시작하였다. 국어강습소 또는 한글학원 등으로 불린 초기 민족교육의 장은 1946년 초에는 600~700개교를 웃돌았다고 한다. 당시 광범위한 재일동포들이 소속한 민족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련맹은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생겨난 국어강습소를 통합하고 정비해 학교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배지원 외 2017, 23). 이러한 조선학교들은 부지를 빌려 사용하고, 교재도 자체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낙후된 모습으로 출발하였지만, 자녀들을 민족의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당당한 조선 사람으로 교육했다. 당시 체계적이지 못했던 조선학교는 1947년 10월 학교체제로 전환되면서 소학교 541개교에 학생 56,961명, 교사 10,250명, 중학교 7개교에 학생 2,761명, 교사 95명, 청년학교 22개교에 학생 1,765명, 교사 101명, 고등학교 8개교에 학생 358명, 교사 59명이 재적하고 있었다(藤島宇

⁹⁾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과거 저자와 함께 교가 연구 작업을 한 연구자가 2010년대에 일본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그는 수차례 일본 조선학교의 방문과 지인을 통하여 일본 조선학교 교가 50여개를 수집하였고 그 중 악보가 있는 것이 14개였다. 본문에서 사용한 교가 악보들은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 및 낱장자료 등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内외 1966, 46-47).

1946년 초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한 채 1947년 4월 문부성은 지방 교육행정에 대해 통달을 발신하여 조선인이 세운 교육시설을 인가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48년 문부성의 태도는 갑자기 변하여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의무교육 학교에 취학해야 하며, 설립인가를 받은 조선학교라도 정규과목으로서의 조선어 수업은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일동포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오사카에서는 경관의 발포로 조선인 소년 한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신교육투쟁(4.24교육투쟁)이다. 이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선인 교육대책위원회와 문부성의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합의문도 발표하였지만, 1949년 9월 일본 정부는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을 강제 해산시켰고, 10월 13일 문부성은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라는 통달을 통하여 10월 19일에는 90개 학교에 폐쇄를 통고하는 등 일련의 폐쇄조치를 통해 1949년 시점에 전국의 약 360여 개 조선학교가 일제히 폐쇄되었다.

이후 재일동포들의 국적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조선학교는 무인가학교인 자주학교, 공립학교, 민족학급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그 명맥을 이어갔다. 1952년,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조선인학교의 모양새를 유지한 자주학교 형태는 효고(兵庫), 아이치(愛知), 히로시마(廣島) 등 44개교가 존재하였다. 조선인학교가 일본 공립학교 또는 그 분교로써 인가된 공립학교 형태는 도립 조선인학교 14개교, 기타 공립분교는 19개교가 운영되었다. 일본인학교 안에 정식으로 조선인 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된 것은 전국에 77개 학급이었고, 과외시간만 민족학급이 따로 구성된 경우는 이바라키(茨城) 11개 학급, 교토(京都) 8개 학급 등 이었다(배지원 외 2017, 94).

그러나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의 혼란이 시작되면서, 일본 내 재일교포 사회에서도 이념 대립이 발생해 남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라서기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조련의 후계 단체로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어 파괴되었던 조선학교 교육체계도 차츰 재정비되어 갔다. 1955년 5월 민전은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 결성을 선언하였다. 1957년에는 북한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송금이 시작되어 조선학교의 운영이 훨씬 원활해지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0) 한편 1958년 중반부터는 재일동포들의 북한 귀국운동이 고조되어나갔

¹⁰⁾ 재일조선인은 조국의 지원에 힘입어 민족교육 발전에 한층 힘을 쏟게 된다. 이 송금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버팀목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경제적 의미 이상으로, 당시 재일조선인들이 품게 되었다는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라는 뜨거운 감정이 대변하듯 정신적 버팀목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배지원 외 2017, 184).

고,¹¹⁾ 이 '북송운동'을 계기로 조선학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재일동포들이 귀국준비를 위해 조선학교에서 조선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학교의 증가 추이는 북송운동이 끝난 시점인 1970년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의 문부성은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공립학교의 계속된 운영을 부정하고, 한편으로 조선학교에 대해 각종 학교인가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에서 제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학교제도를 신설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매우 강압적인 조선학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68년 4월 도쿄도의 미노배(美浓部) 도지사의 혁신 도정이 조선학교 체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를 인가하였는데, 이것이 전국 각지에서의 인가 취득에 큰 영향을 주어 1975년까지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 학교 인가를 취득하게 되었다. 12) 즉 인가를 받은 학교는 1965년에 11개교, 1966년 39개교, 1967년 29개교, 1968년 8개교, 1969년에는 4개교, 1970년에는 10개교에 달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인학교에 집중 공격을 한 5년 사이인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101개교가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1971년 159개의 조선학교 중 3분의 2에 해당한 다. 그 이전 10년간(1955년~1964년)에 인가를 받은 학교 수가 총 45개교였음을 고려하면 얼마나 급격히 증가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71년에도 12개 학교는 아직도 미인가학교로 남아있었다(오자와 유사쿠 1999, 446-447).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60여 개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조선학교가 민족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의 학생을 받고는 있지만, 북한 국적 동포 위주로 구성된 조선학교 가 일본 내 겨우 3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직도 60개가 넘는 조선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13)

¹¹⁾ 일본 정부는 패전 초기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재일교포와 그에 따른 물자 부족, 치안악화, 잦은 민족단체들의 충돌에 따른 테러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의하여 자국에 있는 다수의 북한 출신이나 좌익인 재일동포들을 일본 적십자회의 이름으로 배에 태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 적십자회는 무려 1980년대까지 재일동포의 북송을 추진했다. 북한행 배에 탑승했던 인원은 9만 명의 재일동포와 1,800여 명의 일본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동포, 특히 조총련계의 반수 이상이 일본에서 떨어져 나갔다. 일본 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¹²⁾ 미노베 도지사는 문부성의 지시를 거스르고 조선대학교를 대학교육을 하는 곳으로 인정하였다. 교육문제로서 조선학교에 대처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후 조선학교를 학교로써 인정하고 처우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다(오자와 유사쿠 1999, 466).

¹³⁾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중 한국적과 조선적을 한국·조선적으로 통합하여 통계를 내다가, 2015년 12월부터 분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적으로의 이동률을

Ⅲ. 음악적 분석 : 음악의 3대 요소 분석

교가는 학창시절동안 꾸준히 부르면서 경험하게 될 음악교육 중 하나로, 작사자는 교가의 가사에 그 시대의 상황이나 관습, 학교의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정신, 학교가 속한 지역의 명칭이나 정서 등을 표현하게 되며, 작곡자는 이러한 가사에 적합한 음을 만든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특히 그 시대의 억압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서양음악에서 기본으로 정의하는 음악의 3대요소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생각된다. 음악의 3대 요소는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이다. 이들은음악을 이루는 3대 요소임과 동시에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적 구조를 이룬다. 이것을큰 틀로 잡아 다시 세부적으로 리듬은 박자・리듬꼴・갖춘마디와 못갖춘마디(센내기・여린내기)의 여부・시작 리듬 등 4가지로, 선율은 음계・음역・전주사용 여부 등 3가지로, 화성은 조성・성부 조직・종지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리듬 분석

'리듬'은 음악의 시간적 요소로 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밀하게 계산된 '구체적인' 특성을 보이며, 그 구체적인 특성이란 길이가 잴 수 있다는 객관성을 의미한다(김유희 2010, 26). 다양한 음표의 길고 짧은 길이들을 시간상으로 배열함으로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리듬은 곡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문에서는 '리듬'을 다시 세부적으로 '박자', '리듬꼴', '갖춘마디 · 못갖춘마디', '시작 리듬'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서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박자

리듬을 나타내는 최소의 기본 단위를 '박'이라고 하며, 일정한 박이 모여 셈여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박자'라고 한다. 2박자는 강・약, 3박자는 강・약・약, 4박자는 강・약・ 중강・약, 6박자는 강・약・약・중강・약・약과 같이 진행된다. 2/4박자는 】 (4분음표)가 한 마디에 2개씩 강・약의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3/4박자는 】 (4분음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5년 12월 현재 재일동포 전체 수는 한국 국적이 45만 7,772명, 조선적이 3만 3,939명이다. 이를 통해 조선적 학령아동 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정진성 2017, 235).

한 마디에 3개씩 강·약·약의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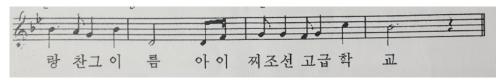
본문의 연구대상인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4/4박자를 사용한 학교는 13개 학교로 92.9%를 차지하였고, 6/8박자를 사용한 학교는 1개 학교로 7.1%를 차지하였다. 4/4박자를 사용한 13개 학교의 교가는 】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씩 강・약・중강・약의 규칙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4/4박자가 안정된 박자로 제창하기에 무난하고 4박자의 셈여림 규칙이 씩씩한 느낌을 주게 되어 학교의 교육이념과 이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박자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로 부르는 행진곡, 응원가의 성격을 갖는 교가의 특성에 맞는 박자라고 하겠다. 단 1개의 조선학교(혹가이도 초중고)에서만 ♪ (8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씩 강・약・약・중강・약・약의 규칙이 되는 6/8박자를 사용하였다. 6/8박자는 다시 빠른 6/8박자와 느린 6/8박자로 구분되는데, 빠른 6/8박자는 ♪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잡아 2박자처럼 빠르게 노래하고 느린 6/8박자는 ♪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잡아 느리게 6박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혹가이도(北海道)14)초중고 교가는 느린 6/8박자를 사용하여 서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2) 리듬꼴

¹⁴⁾ 본 논문에서는 일본 조선학교 한글 명칭은 학교에서 사용한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한자표기를 함께 하여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어울리는 리듬이 부점리듬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점리듬의 사용이 힘찬 기상과 의지, 애교의 마음 다짐 등을 표현하기에 쉬우며, 행진곡의 씩씩한 느낌을 줄 수 있어 교가에 적합하기도 하다. 그밖에도 음악적으로 가장 따라 부르기 쉬운 박자의 형태가 4/4박자라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일본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이유가 된다. 다양한 리듬꼴에는 당김음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당김음을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는 총 14개 중 4개가 있었다. 당김음이란 강박과 약박의 위치가 바뀌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강・약의 패턴이 바뀌는 리듬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당김음의 사용은 돌발적인 역행을 일으켜 악곡에 활력을 불어넣어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 예로, 아이찌(愛知)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마지막 소절 '아이찌조선고급학교' 가사에서 당김음 리듬꼴을 사용하여 교명을 강조하였다. 그 중 】(4분음표) 하나의 음에 '조선'이라는 두 개의 음절이 들어갔는데, 이는 당김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음절과 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 】 (4분음표)를 ♪ ♪(8분음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였다면 당김음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악보 1〉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



또한 붙임줄의 사용으로 당김음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당김음을 사용한 학교의 교가는 총 6개이고 모두 ↓ ○ ♪ 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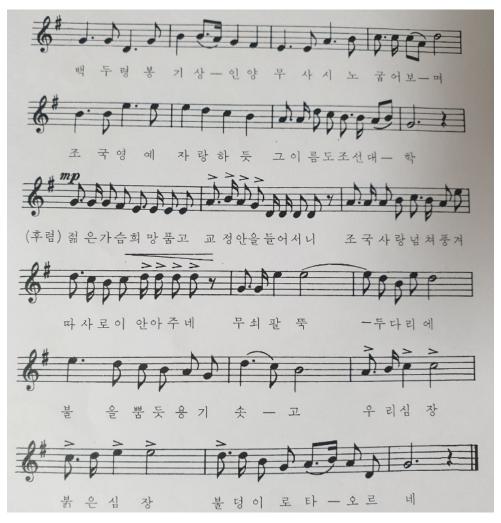
또 다른 다양한 리듬꼴의 사용에는 ♪ (16분음표)의 연속사용이 있는데, 총 14개의 교가 중 2개의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혹가이도초중고 교가에서는 곡의 마지막소절 가사인 교명 '혹가이도초중고'의 '가이' 부분에 ♪ ♪ (16분음표)를 연속 사용하여 교명을 강조하였다.

〈악보 2〉 혹가이도초중고 교가



또 다른 예로, 조선대학교의 교가에서는 후렴 시작 부분의 4마디에 ♪ (16분음표)의 연속사용으로 곡의 긴박감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부분의 앞・뒤로는 주로 ↓ (4분음표)와 ↓ ♪의 부점형태가 주된 리듬꼴의 골격을 이루며 힘찬 기상을 나타내고 있어 후렴 시작 부분의 리듬꼴 변형을 더욱 부각시킨다.

〈악보 3〉 조선대학교 교가



또 다른 다양한 리듬꼴의 사용으로 셋잇단음표를 들 수 있는데, 총 14개의 교가 중 1개의 교가에서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였다. '셋잇단음표'는 비정형 리듬으로, 일반적으로 기본박이 2등분 되어 」 (4분음표) 1박이 ♪ ♪ (8분음표) 두 개로 분할되고, 이는 또 다시 ♪ ♪ ♪ ♪ (16분음표) 네 개로 분할되는 것에 반해 셋잇단음표는 」 (4분음표) 1박이 ♪ ♪ ♪ (8분음표) 세 개로 3등분 되어 한 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미나미오사까(南大阪)조 선초급학교 교가에서는 마지막 소절 교명인 '미나미'에 셋잇단음표를 사용함으로 리듬과음절의 개수를 맞춤과 동시에 교명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악보 4〉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교가

〈표 1〉리듬꼴 분석

리듬꼴	교가수	학교명
부점리듬	11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슌조선초급학교, 고 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 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 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민음표 중심	3	혹가이도초중고,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당김음 사용	10	강박과 약박 위치 바꾼 당김음: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슌조선초 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붙임줄을 사용한 당김음: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 학교, 조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 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16분음표) 연속 사용	2	혹가이도초중고, 조선대학교
셋잇단음표 사용	1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3) 갖춘마디 · 못갖춘마디

'갖춘마디'는 박자표에서 나타낸 박의 수가 마디 안에 온전히 들어있는 마디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는 뜻으로, 셈여림을 강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센내기'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못갖춘마디'는 첫 음이 시작되는 마디에 박자표에서 나타낸 박의 수를 갖추지 못하여 마지막 마디 박자와 합쳤을 때 박자표에서 제시한 박자가 되는 것이다. 못갖춘마디는 셈여림을 약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린내기'라고도 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곡 중 13곡이 갖춘마디로 시작하였고, 1곡만이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였다. 갖춘마디로 시작한 13곡 중 8곡은 중간에 여린내기로 변하여 센내기와 여린내기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대부분 조선학교의 교가들에서 갖춘마디를 사용한 것은 센박으로 시작하여 힘찬 느낌을 주어 가사의 전달력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교가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 갖춘마디인지, 못갖춘마디인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사의 내용과 어울리고 적합한지가 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들은 갖춘마디의 형태가 가사와 더 잘 어울리는 적합성을 가졌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할 경우, 가사의 의미는 강한데 비해 여린내기로 시작하여 교가를 부를 때 가사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을 흐리게 하고 가사의 운율 역시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못갖춘마디를 사용한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의 첫 마디를 살펴보면, '영광찬 조국 땅에 평화 소리 드높아'의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린내기의 셈여림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영 광찬 조국땅에평화 소리드 높 아'로 들린다.

〈표 2〉 갖춘마디·못갖춘마디 분석

갖춘마	디 · 못갖춘마디 형태	교가수	학교명	
	갖춘마디를 끝까지 유지한 형태	5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혹가이도초중고, 세이방조선 초중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갖춘마디	갖춘마디로 시작하나 여린내기 혼합사용	8	도슌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못갖춘마디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4) 시작 리듬

악곡을 시작할 때 첫 마디에 가장 많이 사용한 리듬은 ↓ ♪ ↓ 로, 총 14곡의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5개의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따은따 딴딴'의 부점리듬으로 교가의 첫 구절을 시작하여 씩씩한 느낌과 기상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리듬꼴은 많이 어렵지 않고 부점리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기도 하다. ↓ ♪ ↓ 리듬 외에도 ↓ ♪ ↓ 나 ↓ ♪ ↓ ♪ 또는 ↓ ♪ ♪ ↓ 의 사용으로 3개의 학교가 첫 박에서 ↓ ♪ 의 부점리듬으로 시작하였고 1개의 학교에서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첫 박에 ♪ . ♪의 부점리듬을 사용하여, 14개의 학교 중 부점리듬으로 교가를 시작한 일본 조선학교는 총 9개였다. 나머지 5개 조선학교의 교가는 민음표로 악곡을 시작하였다.

〈표 3〉 악곡의 시작 리듬 분석

시작 리듬		교가수	학교명	
וועו		5	도슌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나고 야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J. "D."J	1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그 외	7777	1	조선대학교	
부점리듬	ل لرور ال	1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A. C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пота	J	2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민음표로 시작	J	2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시역	Þ	1	혹가이도초중고	

2. 선율 분석

'선율'은 음의 높고 낮은 각기 다른 소리의 음들이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선의 형태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조화롭게 울리는 것을 말한다. 선율은 순차적이든지 도약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방향성을 띠고 진행하면서 '음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음계', '음역', '전주사용 여부'로 분류된다.

1) 음계

사전적 의미의 음계란 '음악에 쓰이는 음을 높이의 차례대로 배열한 음의 층계'를 말한다.

| 156 | 민족연구 75호

이는 한 옥타브 안에서 정렬된 음의 구성이 5개이면 '5음 음계', 7개이면 '7음 음계', 12개이면 '12음 음계'가 된다. '5음 음계'는 일반적으로 동양 음계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5음 음계는 '솔·라·도·레·미' 음을 사용한다. 이러한 5음음계의 사용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적인 느낌을 준다. 반면 일본의 5음 음계는 '미·파·라·시·도' 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음계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는 우리나라의 5음 음계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의 5음 음계도 사용하지 않아 동양적이거나 민속적인 느낌은 없었다. 모든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모두 7음 음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서양의 문화와 교육이 들어감으로 음악의 요소들 또한 서양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음 음계'란 5음 음계의 음정 간격이 넓은 부분에 음을 넣어 7음으로 만든 것으로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한 옥타브 안의 구성음인 '도ㆍ레ㆍ미ㆍ파・솔ㆍ라ㆍ시'를 말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즐겨 듣고 있는 대부분 음악의 기초가 되며, 조성 음악의 모체가 되는 온음계의 한 형태이다 (김유희 2010, 26).

2) 음역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 '음역'은 한 노래에서의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까지의 넓이를 나타낸다. '가온 다'음을 c'로 기준으로 하여 한 옥타브 위는 c", 한 옥타브 아래는 c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은 음이름 표가 형성된다.

〈악보 5〉 음계의 음이름표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에서는 최저음이 Bb, 최고음이 D" 음역인 교가가 총 3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저음 C', 최고음 D" 음역의 교가 2개, 최저음 C', 최고음 E" 음역의 교가 2개, 최저음 C', 최고음 F" 음역의 교가 2개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고, 이 밖에도 최저음 Bb, 최고음 F" 음역, 최저음 Bb, 최고음 D" 음역, 최저음 A, 최고음 D" 음역, 최저음 A, 최고음 E" 음역, 최저음 D', 최고음 E" 음역이 각 1개씩 있었다.

〈표 4〉음역대 분석

음역	교가수	학교명
Bb-D"	3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C'-D"	2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C'-E"	2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C'-F"	2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Bb-F"	1	혹가이도초중고
B-D"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
A-D"	1	도슌조선초급학교
A-E"	1	교또조선중고급학교
D'-E"	1	조선대학교

최저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교가의 음은 C'음으로 총 6개였고, Bb음도 4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A음이 2개, B음이 1개, D음이 1개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작곡가들은 최저음으로 C'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부르기 가장 적합한 음역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B음과 Bb음도 노래 부르기에 크게 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져 5개 교가가 이 음역대를 사용하였다. 음역은 성별과 나이차이에 따라 낼 수 있는 영역이 틀려지며 초등학생의 경우 C'-C"정도의 한 옥타브음역이 적당하다. 그런데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A음을 최저음으로 사용한 교가가 2개 있었으며, 그 중 한 학교는 초급학교였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음역이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D'음을 최저음으로 사용한 교가도 1개 있었다.

〈표 5〉 교가의 최저음 분석

최저음	교가수	학교명
C'	6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Bb	4	혹가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 급학교
А	2	도슌조선초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В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
D'	1	조선대학교

최고음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D"음이 최고음인 교가가 총 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E"음이 4개, F"음이 3개였다. 최고음 D"음은 모든 학생이 부담 없이 소리내기에 적합한 음으로 여겨지나, E"음은 변성기 학생들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감이 있는 음역대이고, F"음은 아동이 부르기에 무리가 있는 곡이라 생각된다. 최고음 F"음을 사용한 조선학교 교가는 혹가이도 초중고, 고베(神戸)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廣島) 조선중고급학교로 총 3개의 교가였는데 이 중 혹가이도초중고는 초등학생도 같이 부르는 교가이기 때문에 더욱 최고음 F"음이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표 6〉 교가의 최고음 분석

최고음	교가수	학교명
D"	7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슌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 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E"	4	교또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F"	3	혹가이도초중고,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초·중·고등·대학생인지에 따라 교가 작곡할 때 음역 선택을 잘 해주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변성기를 거치면서 성대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최저음 C', 최고음 D"의 음역이 가장 노래 부르기에 편하고 좋으며, 최저음 Bb, 최고음 E"정도까지도 큰 무리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3) 전주 사용

'전주'는 음악이 시작되는 부분에 노래 없이 반주만 나오는 것으로, 그 곡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즉,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노래 부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듣는 사람에게도 앞으로 나올 노래가 어떠한 느낌의 노래인지에 대해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보통 전주는 노래 전체를 함축한 내용이 들어있어 전주만 들어보아도 그 노래에 대해 느낌이나 템포, 리듬 등을 알 수 있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는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교가에서만 8마디의 전주를 사용하였다. 곡 전체의 느낌을 알 수 있도록 기. 시의 부점음표와 시시(16분음표)의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씩씩하고 당당한 표현을 하였다. 특히 마지막 두 마디 전주는 노래의 끝부분 두 마디 멜로디와 동일하게 허용하여 통일성과 일치감을 주었다.

〈표 7〉 전주사용 분석

전주사용여부		교가수	학교명	
	미사용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혹가이도초충고, 도슌조선초급학교, 세이 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 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까조 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ILQ	8마디전주사용	1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사용	4마디쉼표사용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에서는 전주가 기보 되지는 않았지만 노래가 시작되기 전 4마디를 쉼표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반주자가 즉흥적으로 네 마디에 전주를 붙여넣어 연주하라는 뜻이라 생각된다. 보통 전주가 기보 되지 않은 경우 맨 끝의 네 마디를 전주 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네 마디의 전주는 마지막 네 마디로 대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화성 분석

음악구조는 '선법조직의 음악'과 '조성조직의 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법조직의음악'은 고대에서 중세와 근세에 걸쳐 음악의 짜임새를 지배하여 온 선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조성조직의 음악'은 주로 장조와 단조의 화성적 양식에 의한 음악을 말한다(윤양석 1986, 161). 선법조직의 음악은 다시 하나의 멜로디로 구성되는 단성 음악과 여러 선율로 구성되는 다성 음악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를 세부적으로 '조성', '성부 조직', '종지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성

'조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조 이름'을 말하며, 어떠한 '조'의 으뜸음과 음계의 종류인 장음계나 단음계를 같이 붙여서 부른다. 예를 들어 C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는 C장조라 일컬으며, C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는 c단조라 일컫게 된다. 조 이름을 적을 때는 '장조' 대신에 영어로 'Major', '단조' 대신에 'minor'를 사용하기도 한다. 'Major 음계'(장음계)는 으뜸음을 기준으로 '도ㆍ레ㆍ미ㆍ파・솔ㆍ라ㆍ시ㆍ도'를 차례 대로 나열했을 때 첫 음인 '도'를 1번으로 시작하여 8번까지 번호 매길 수 있다. 이때 3ㆍ4번과 7ㆍ8번 음의 간격이 반음이고 나머지 음의 간격은 모두 온음인 형태를 '장조'라 하고, 대체로 밝고 희망적이며 경쾌한 성격을 만든다. 반면에 'minor 음계'(단음계)는 똑같이 으뜸음을 기준으로 '라ㆍ시ㆍ도ㆍ레ㆍ미ㆍ파・솔ㆍ라'를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때 2ㆍ3번과 5ㆍ6번 음의 간격이 반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단조'라 하고, 대체로 어둡고 고요하며 조용한 느낌을 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는 모두 장조를 사용하였는데, 그중 12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장조의 조성을 유지하였다.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Bb장조에서 Eb 장조로 변조했다가 다시 Bb장조로 돌아오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고베조선고급학교 교가는 처음에 F Major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d minor의 단조 화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 14개 교가의 조성을 분류해보자면 C Major와 Bb Major가 각각 4개씩으로 가장 많았고, F Major와 D Major가 2개씩, G Major와 Eb Major는 1개씩으로 나타 났다. 15)

이렇듯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씩씩하고 위상을 나타내는 특성상 밝은 느낌의 장조를 선호하여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4개의 조선학교 가운데 초급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가는 9개인데 이들 중 4개의 조선학교에서 C Major의 교가를 사용하였고, 다른 4개 학교 교가는 조표가 b(플랫:내림표) 하나 붙은 F Major, 두 개 붙은 Bb Major, 또는 #(샾:올림표)이 두 개 붙은 D Major를 사용하여 초급학교에서 노래하거나 반주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하여 조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혹가이도초중고 교가에서는 b(플랫)3개의 Eb Major를 사용하여 초급학생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있는데, 이는 초·중·고급 학교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교가이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¹⁵⁾ 단,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Bb Major가 주를 이루므로 Bb Major로 분류하였다.

〈표 8〉 조성 분석

	조성	교가수	학교명
모두	처음-끝까지 계속 장조	12	도꾜조선제2초급학교(F), 혹가이도초충고(Eb), 도슌조선초급학교(D),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C), 교또조선중고급학교(D),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Bb), 조선대학교(G), 나고야조선초급학교(C),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C),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C),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Bb), 도꾜조선제9초급학교(Bb)
사용	중간에 단조 화음 사용 1	고베조선고급학교(F)	
	변조 사용	1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Bb-Eb-Bb)

2) 성부 조직

성악의 연주형태 중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독창'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같은 가락을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제창'이라고 한다. 두 성부 이상의 서로 다른 성부를 나누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은 '합창'이라고 하는데, 2성부의 합창은 '2부 합창', 3성부의 합창은 '3부 합창', 4성부의 합창은 '4부 합창'이라 부른다. 그러나 제창의 형식에서 노래 일부분만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부분 합창'이 될 것이고, 합창 부분이 2부로 구성되었다면 '부분 2부 합창'이 될 것이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13개는 제창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교가만 유일하게 부분 2부 합창으로 되어있었다. '제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힘차고 씩씩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조선학교 교가에서는 제창의 형식을 선호하여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화음이 곁들여지면 음악적으로 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지만 행진곡이나 응원가의 성격을 가진 교가에서는 단일선율의 제창 형태로 불렀을 때 더욱 공동체적 결속력을 느낄 수 있다.

〈표 9〉 성부조직 분석

성부조직	교가수	학교명
제창	13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혹가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슌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부분2부합창	1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3) 종지

'종지'란 악곡이 끝날 때, 혹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곡을 일시적으로 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곡이 끝날 때 사용하는 종지는 '닫힌 종지'라고도 하며 곡이 완전히 끝나는 종결감을 준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쉬게 하는 종지는 '열린 종지'라고도 하며 보통 IV(4도)- V(5도)의 진행을 일컫는다. 그 중 '정격종지'는 V(V7)도- I 도로의 진행을 말하며, 조성음악에서 가장 완전한 종지로 사용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는 모두 '정격종지'를 사용하여 곡이 완전하게 끝나는 종결감을 확실하게 주었다.

〈표 10〉 종지 분석

종지 유형	교가수	학교명	
정격 종지	14	도꾜조선제2초급학교, 혹가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슌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Ⅳ.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

지금까지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의 음악적 특징을 음악의 3대 요소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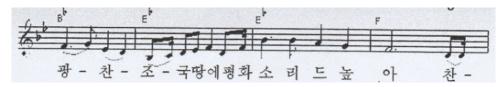
첫째,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도꾜(東京)조선제9급학교 교가의 경우로 둘째 단 둘째 마디에 』(2분음표) 대신에 」 (4분음표)가 사용되었고, 셋째 단 둘째 마디에는 』 (점2분음표) 대신에 」 (점4분음표)가, 셋째 단 셋째 마디에는 』(2분음표) 대신에 」 (4분음표)가 사용되었는데 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아래는 도꾜조선제9급학교 교가이다.

〈악보 6〉도꾜조선제9급학교 교가



후자의 경우는 가사의 음절 수와 음표가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로, ''의 사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음표의 수보다 가사의 음절 수가 적을 때 ''를 사용하여 어느음까지 그 음절의 가사를 부를 것인지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사의 표기에 있어서 보통은 멜로디 선율 밑에 1절·2절·3절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본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11개는 멜로디 선율 밑에 1절의 가사만 표기하고 나머지 절의 가사들은 악보의 우측이나 하단에 따로 글자로만 표기하여 1절 가사는 음절 수와 음표수가 ''표시 사용으로 명확히 표기된 데 반해, 글자로만 표기된 가사에서는 ''표기가 전혀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1절 가사의 음절 수와 다른 절의 가사 음절 수가 같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음표의 수가 4개이고 가사 음절의 수도 4글자인 경우 1절은 한음당 한 글자씩 맞춰서 부르면 되는데 2절에서 3음절의 가사로 바뀌면 어느 음절을 2개의음표로 끌어서 불러야 하는지 불명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이다.

〈악보 7〉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



나머지 3개의 학교 중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교가는 1절 한 절의 구성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고, 나고야조선초급학교와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의 교가는 멜로디 밑에 각각 2절과 3절의 가사를 적어놓았다.

둘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통일조선', '수령님', '영광찬 조국', '원쑤들과 싸워 이긴', '수령님의 이들 딸된', '붉은', '휘황차게', '사회주의 조국', '끓는 피', '조국 영예', '무쇠', '붉은 심장', '함홍색 깃발', '애국렬사'등과 같은 가사에서 이 단어들을 강하게 살리기 위해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어떠한 경우에는 가사의 음절이 한 개의 음절이라 ↓ (4분음표)를 사용하면 되었지만 ♪.♪의 부점리듬을 붙임줄로 묶어서 표기하였다. 음표의 소리 나는 길이는 두 가지가 동일하나 표기 방법적인 면에서 부점리듬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숨표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숨표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조선학교 교가는 14개 중 12개였다. 대다수 조선학교 교가가 숨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교가 작곡가들이 숨표 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또(京都)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2개의 교가만이 숨표 표시를 하였다. 이에 일본의 조선학교 교가들은 숨을 쉬는 곳을 명확하게 표기해주는 관심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쉼표를 사용하지 않은 조선학교의 교가는 14개 중 12개이다. 그 예로 혹가이도초중고 교가를 보면 노래가 음표와 쉼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음표로만 꽉차 있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다. 쉼표를 사용한 조선학교의 교가는 2개이며 도순(東春)조선초급학교의 교가가 대표적이다. 이 교가에서는 쉼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보기에도 좋고 따로 숨표의 표기가 없더라도 쉼표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모두가 장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씩씩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학교의 위상을 강조하려 는 의도로 밝은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빠르기의 규정은 메트로놈 박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빠르기말(Allegro, Moderato, Andante 등)이나 부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조선학교 7개 교가에서는 빠르기말 대신 각각 '자랑차게', '행진곡으로', '씩씩하게', '행진조로', '행진곡조로', '따뜻하게', '긍지와 자랑안고 당당히' 등을 사용하여 모두 힘차고 씩씩한 행진 곡조로 당당하게 부를 것을 요구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조선학교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조총련계 학교라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시위에 나서는 모습을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이 일본 정부의 차별과 일본 사회의 편견을 받아온 불쌍한 한민족학교라고 피상적으로만 바라보았다. 이로 인해 해방 후 조선학교가 걸어온 일본 내 민족교육의 다양한 많은 모습은 물론 조선학교의 어느 하나 정보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학교는 1945년 패망한 일본에서 1세대 재일동포들이 후세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세워진 국어강습소를 계승한 해외 한민족학교이다. 이 조선학교는 한때 일본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개의 학교가 운영되었지만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금은 60여 개만이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조선학교는 민족교육을 하여 일본에 사는 후세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의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본 논문은 해외 한민족학교인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음악적 요소 분석을 보면, 리듬 측면에서 교가의 박자는 4/4박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리듬꼴의 유형에서는 부점리듬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교가의 수가 민음표를 중심으로 사용한 교가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교가에 어울리는 씩씩하고 당당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라 판단되었다. 갖춘마디와 못갖춘마디의 분류에서는 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중간에 여린내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8개 교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작하는 리듬은 ↓ ♪ ↓ 로, 총 14곡의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5개의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선율적인 면에서 음계는 14개의 교가가 모두 '7음 음계'를 사용하였고, 음역대의 사용은 Bb-E"사이의 음역대를 선호하였다. 전주를 사용한 학교는 1개 학교로 학교 대부분이 전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적 면에서 조성은 12개 학교 교가가 장조를 사용하였고, 성부 조직은 제창의 형태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종지의 형태는 14개 모두 정격종지를 사용하였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숨표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이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 학교 교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 교가의 가사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나타난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한민족학교의 음악적 내용이나 그특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민족학교 교가의 음악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수 있겠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재일동포가 거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 연구는 물론 다양한 '학교문화'의 자료 발굴과 그 연구를 통해 민족학교로써의 일본 조선학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바로 이웃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우리 한민족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____

- 김리화. 2015. 故郷としての朝鮮学校一朝鮮学校の音楽教育に関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45.
- ■김유희. 2010. 음악기초이론의 이해. 예솔.
- ■배지원·조경희 엮음. 2017.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도서출판 선인.
- ■승윤희. 2014. 서울시중학교의 교가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12(1).
- 안병삼. 2011.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 _____. 2012. 中國 黑龍江省 朝鮮族學校 校歌 研究. 인문과학연구 35.
- ■_____. 2013. 중국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3.
- ■_____. 2014. 中國 朝鮮族學校 校歌에 나타난 한민족공동체의식. 민족문화논총 57.
- 안병삼·임영언. 2018. 해외 한민족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 중국 조선족학교와 일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4).
- ■오자와 유사쿠. 이충호 옮김. 1999. 재인조선인 교육의 역사. 도서출판 혜안.
- ■윤양석. 1986. 음악기초론-소재와 양식. 세광음악출판사.
- 임영언・김태영. 2017.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 일본문화학보 73.
- 정진성, 2017, 재일동포 민족학교, 일본비평 16.
- ■藤島宇内・小沢有作. 1966. 民族教育 日韓条約と在日朝鮮人の教育問題. 青木新書.
- 高英穀. 200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と在日コリアンの地位について. 東京大學社會情報研究所主催國際シンポジウム資料集.
- ■출처: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major_area.do (검색일: 2019.11.21.).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3064500073?input=1195m (검색일: 2019.11.23.).
- ■출처: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1649 (검색일: 2019.11.23.).
- 투고일: 2020,01,15. 심사일: 2020,01,17. 게재확정일: 2020,02,20.

| Abstract |

Analysis of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 School's School Songs in Japan

An Byungsam (SahmYook university) Kim Sujin (SahmY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usical elements and others of the Chosun Schools' school songs and examine the diverse musical characteristics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school song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hree major elements of music: rhythm, melody and harmony. Again, the rhythm was divided into beat, rhythm, complete or incomplete bar and beginning rhythm. On the other hand, the melod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scale, register, prelude or not. Lastly, the harmon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tonality, vocal part and fin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songs of Chosun Schools in Japan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y use the dotted rhythms or syncopation to clearly express the lyrics. Secondly, errors are easily found in the scores. The frequent errors are the case where the notes are not appropriately used to match the beats, and the case where the mark '-' is not indicated for the lyric. Thirdly, breathing or rest marks are not used. Fourthly, the major is used in all school songs. Fifthly, adverbs are used instead of the tempo marks to express the overall feeling of the songs. This study is deemed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Korean ethnic schools' school songs for the first time.

《Key words》 Japan, Choson-School(朝鮮學校), School song(校歌), Korean residents in Japan, Music, Characteristic, rhythm, melody, harmony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손 영 기 (대구가톨릭대학교) (syk52@hanmail.net)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들을 일상다반사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살고 일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난민 등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의 조기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돕는데 기여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보다 빈곤국가 출신이거나 피부색이 짙은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각이 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난민수용 등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내・외국인간의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395).

I. 시작하며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국가 간 인구이동의 증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교류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권영설 2009, 6). 한국사회도 외국인의 이주나 이민현상은 보편화되어 많은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2019년 9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454,515명으로 2018년 9월말 2,321,820명보다 132,695명이 증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월보 2019. 9. 및 2018. 9. 참조). 이에 따라 이들과 관련된 국가정책 및 법제도도 변화해 왔다.

2006년 4월 26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마련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입법에도 적극 나서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된 데 이어「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되었다. 1) 그리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처우와 지위 등에 관한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법·정책적 제도가 한국사회의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크게 기반을 다졌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한민족의 순수혈통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보다 빈곤국가 출신이거나 피부색이 짙은 외국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2)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생활에 대해 관련 법·정책적 측면에서 기존연구를 토대로 분석·평가해보고,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난민수용 등의 주요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서 내·외국인간의

^{1) [}이희용의 글로벌 시대] 새정부 다문화정책을 기대하는 까닭. 출처: (연합뉴스 2017/08/29).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8144400371?input=1179m (검색일: 2019, 10, 09).

²⁾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콜롬비아 국적의 레오 멘도자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건 당시 그는 아내(한국인)와 부산 수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 주차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멘도자의 아내는 한 아이가 차량 진입을 보지 못하고 뛰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 사고를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보호자와 멘도자 간 실랑이가 생겼다. 실랑이 중 아이의 할아버지는 멘도자가 콜롬비아인이라는 사실을 안 뒤 "더 못한 데서 왔네"라며 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 멘도자 부부가 경찰에게 "인종차별적 언행을 자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경찰은 "깜둥이'라고 부른 것도 아닌데…"라는 식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출처: (시사저널 2017/04/12).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494 (검색일: 2018, 04, 30.).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2.1. 한국사회와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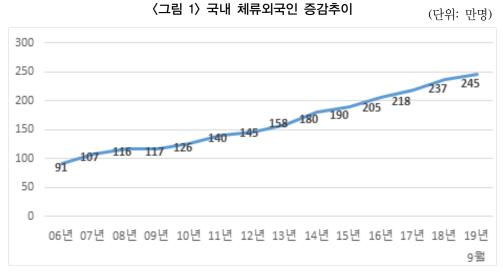
최근 한국사회를 말할 때 '다문화' 혹은 '다문화사회'는 빠져서는 안 될 용어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된 원인은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현상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서 생산성 저하, 노동인구의 부족, 소비력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2004년에 고용허가제로 전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나아가 재외동포나 우수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출입국과 장기거주 내지 영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다(이혜경 외 2017, 259-283).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장려하였고,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결혼중개업체들이 결합하면서 짧은 기간에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정주(定住) 외국인으로써 한국사회를 그간 단일민족적 순수혈연주의적 지향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 외국인이라 할 수있다(이혜경 외 2017, 359-381).

2.2. 한국사회 체류외국인3)의 현황

2019년 9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454,515명이며, 그중 외국인등록자는 1,274,775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55,099명, 단기체류자는 724,641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 9., 2). 다시 체류자격을 구분해 보면, 재외동포(F-4) 459,879명, 비전문취업(E-9) 278,560명, 방문취업(H-2) 238,220명, 사

³⁾ 체류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제31조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 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으로 체류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한 외국인이다.

증면제(B-1) 242,499명, 단기방문(C-3) 249,844명, 영주(F-5) 149,433명,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2011년 12월 이후 F-2-1, F-5-2, F-6) 164,463명, 외국인유학생(2014년 5월 이후 D-2 전체 및 D-4-1, D-4-7) 191,754명에 이른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 9., 17 및 27-29). 따라서 국내 체류외국인의 현황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 9.)를 토대로 재구성.

2.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관련 법·정책적 제도가 마련되고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영주(2008), 소라미 (2009), 송서순(2009), 표명환(2009), 장진숙(2010), 손영기(2011), 안진(2013), 임영수 (2013), 박승용(2014), 노호창(2017) 등은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개업자에 의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였다. 특히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높이기위해 한국 남성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외국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제정되었으나, 결혼중개 과정에서는 여전히 금전적 · 인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김정선 · 김재원(2010), 최현태(2011), 박흥식(2013), 김두년(2014), 정현미 외(2014), 손경찬(2019) 등은 결혼당사자가 받게 될 신상정보의 내용과 보호, 과대 환급금 및 적정중개수수료의 문제, 손해배상책임의 담보 문제, 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등을 언급하면서법 · 정책적인 시각에서의 법적판단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셋째, 재한외국인에 대해 인종, 출신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배제하는 등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 조상균 외(2006), 홍성필(2007), 이승우(2009), 최윤철(2009), 장선희(2010), 최윤철(2012), 권영호(2014), 김학태(2015), 신선미(2015), 전경근(2015), 김환학(2016), 박광동(2016) 최윤철(2016), 김종세(2017), 김태환(2017), 정상기(2018), 김종세(2019), 강명원(2019) 등은 재한외국인의 정치적 · 사회적 법적지위 및 인권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제언하였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손윤석(2013), 노호창(2015), 윤향희 (2015), 김남진(2016), 김지혜(2016), 이연옥·정영태(2016) 등은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 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회숫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다문화사회 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2000년대부터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일상다반사가 되었고, 또 이들과 함께 살고 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난민 등에 대한 개별 법률을 통해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허가를 두고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4) 왜 이러한 사회현상 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지금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 내지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예멘 난민만이 아닌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출신국가,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여성결 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난민수용 등의 주요 쟁점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내·외국인간의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1.1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총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재한외국인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살아가는 환경조성, 제5장 보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써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④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로간의 문화ㆍ역사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는 물론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재한외국인의 민원처리절차를 위하여 안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소정의교육을 이수하도록할 수 있고,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하고 있다.5)

⁴⁾ 지난해 예멘인 561명이 무(無)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 대량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됐다. 출처: (조선일보 2019/03/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 03/06/2019030600084.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 ws (검색일: 2019, 10, 09.).

⁵⁾ 출처: https://www.law.go.kr/ (검색일: 2019, 10, 12.).

3.1.2 쟁점 및 과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은 재한외국인 정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관련된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철우외 2019, 475-476; 박길남 2017, 114). 이 법은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조상균 외 2006, 153; 장선희 2010, 92). 향후 외국인 혐오와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보호에 대한 약간의 조항이라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재한외국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1호). 불법체류자는 재한외국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우리 사회의 적응 및 안정적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중에는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컨대 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밀린 임금체불로인해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으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한 상태에서 가정파탄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 ③ 특히 무국적으로살아가는 불법체류 미성년 · 이주아동 등이다. 이들은 자신의 귀책사유와 아무런 관계없이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멍에를 지고 불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합법체류 외국인만으로한정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에서 전향적 확대의 입법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여겨진다(노호창 2017, 191; 정상기 2018, 254-255). 따라서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법의 상당 부분이 권고적, 훈시적인 규정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실효성 없는 장식적 법률로써 전락할 우려가 크다(이승우 2009, 각주 24); 정기선 외 2011, 109; 장정은 2012, 3). 만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외국인 등이 이 법률을 근거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차용

호 2015, 626).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재한외국인 들의 진정한 권익보호에 어떠한 입법정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3.2.1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또한 세계화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이주의 여성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단일민족의 순혈주의에 빠져 결혼이주 여성 및 그 자녀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만이 아닌 한국사회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차용호 2015, 632; 이경희 2013, 4-5).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일부 개정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하였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다⁶⁾.

⁶⁾ 출처: https://www.law.go.kr/ (검색일: 2019, 11, 02.).

3.2.2 쟁점 및 과제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나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적용범위가 논란이 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안정적 정착 지원과 보호의 적용대상자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으로 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만 으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 부부 및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인유학생 부부와 그 가족, 재외동포,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족은 다문화가족에서 제외되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형태에 따르는 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외국인가족 등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조상균 외 2006, 162; 이승우 2009, 229; 이경희 2010, 509-536; 장선희 2010, 89; 권영호 2014, 101-102; 전경근 2015, 293-314; 강명원 2019, 273-293).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자를 모든 외국인가족 등으로 확대할 경우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등에 적용 대상자로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중복·충돌 및 추진체계의 중복·충돌이 발생하고, 관련된 부처 간에 갈등이 초래되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된다(차용호 2015, 638-639; 김종세 2019, 89). 그렇다면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외국인가족을 포함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가족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적용대상 범위를 폭넓게 정의할 경우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외국인가족을 포함한 모든 다문화가족에게는 의료 · 응급구호 · 아동교육과 같은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회서 비스는 소득기준 분위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모두 합법적 체류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이든 합법체류자이든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인권적 차원에서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자신의 귀책사유

가 아니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 · 응급구호 · 아동교육과 같은 기본적 지원은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반드시 인권보호와 함께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현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초등학교 · 중학교에는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법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이들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아파도 의료보험(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에 가는 건 엄두를 못 낸다. 진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이주아동권리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법안 제9조에서는 "모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7)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체류 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는 비판 때문에 곧 폐기되었다. 이후 2018년 9월 원혜영 의원이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국에 돌아간 경우에도 출생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자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한국관청에 별도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8),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권영호 2014, 103-104; 최윤철 2016, 5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 2017, 323-328),9)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선을 조율하고, 새로운 법 ·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정목적, 그 적용대상자와 각 조문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유사·중복성이 문제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표 1〉로 정리했다.

⁷⁾ 출처: http://likms.assembly. go.kr/bill/billDetail.do (검색일: 2019. 11. 06.).

⁸⁾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검색일: 2019. 11. 06.).

⁹⁾ 출처: (경남도민일보 19/06/1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895 &page=22&total=3996 (검색일: 2019. 11. 02.).

〈표 1〉「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비교

명칭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8. 3. 21	2007. 5. 17
입법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제1조)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 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적용 대상자	「외국인처우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와「국적법」제2부터 제4조까지의 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제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 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는 자와 결혼이민자(제2조)
조문의 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제6 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8조(가 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의2(다문 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등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3조(영주권 자의 처우), 제14조(난민의 처우),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 19조(세계인의 날)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main.html)의「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토대로 재구성.

「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각각 제1조(목적) 조항에서 '사회통합'을 그 목적의 하나로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차용호 2015, 63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그 적용 대상자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재한외국인으로 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보호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규정내용으로 볼 경우「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적용 대상자에서「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집행법적 하위의성격을 지니고 있다(차용호 2015, 634). 더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이러한 조문의내용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어떠한 내용의사회통합인지, 내・외국인 모두가 지향하여야 하는 한국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내용과모습이 아직도 혼동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정책과의 입법정책적으로 중복

되어 있다.¹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 정책이 도리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다.¹¹⁾ 그러나 시급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법과 정책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3.3.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3.1 주요내용

한국여성과 혼인하지 못하는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증가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상업화된 결혼중개가 증가하게 되면서모집과정부터 결혼성사까지 전반적인 결혼중개과정에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중매,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이러한 피해는 결혼 후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연결되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소라미 2009, 4; 이경희 2013, 3-4; 정현미외 2014, 159).

결혼중개업의 효율적인 관리 법·제도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12월 14일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이하「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불명확한 신상정보 및 과장·허위정보제공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13)

^{10)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따라서 주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3조(가족단위의 복지증진),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검색일 2019. 11. 02.).

^{11) &}quot;통합 저해"_'한국인 역차별' 다문화 정책 지적에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출처: (법률방송 2019.04.15.). http://www. 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7 (검색일: 2019. 11. 02.).

¹²⁾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73년 3월 13일)에서는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1993년 12월 27일)에서 행정규제 완화와 자율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9년 2월 8일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이경희 2013, 각주 15)).

^{13) &}quot;우린 물건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죽여버릴까요?" 결혼이민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자 추모제...

개정된「결혼중개업법」에서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으로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일방이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통역 ·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외국 현지형사법령등을 위반하여 처분을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수 없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외국현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제결혼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 · 송출하도록 하여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이룰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등록 이후에도 1억원이상의 자본금보유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14)

3.3.2 쟁점과 과제

첫째, 국제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이다. 신상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혼인파탄 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제10조의 2). 즉 '결혼중개 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혼인이 성사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개인정보(학력·직업·건강상태·범 죄경력)등을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최현태 2011, 106; 이경희 2013, 10-11; 손경찬 2019, 314).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하는 시점을 이원화하여 '맞선단계'에서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서식만을 제공하고 맞선결과 혼인에 합의('혼인단계')한 경우에만 혼인경력증명서·성명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 증빙서류 원본 및 번역본을 양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해야 한다(손경찬 2019, 330).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 판단된다.

[&]quot;우리도 인권이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1. 06. 02.). http://bit.ly/2HWjqCw (검색일: 2019. 11. 08.).

¹⁴⁾ 출처: https://www.law.go.kr/ (검색일: 2019, 11, 08.).

둘째, 법무부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0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를 개정함으로써15)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수가 감소하고, 국제결혼과 관련한 피해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혼인신고 후 외국인배우자 비자발급 불가로 인한 외국인배우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보면, ① 결혼중개업체에서 외국인배우자 비자발급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입국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② 외국인배우자가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비나 교육비를 자주 요구하여 계약취소를 하려고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이혼 수수료뿐만 아니라 위약금 등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설동훈 외 2017, 351-352).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관에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의무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중개업법」에 근거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는 영리목적의 결혼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경희 2013, 16-18). 그러나 임의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때, 현행 「결혼중개업법」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은 당시국 간의 서로 협력 없이는 법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우선 법적 규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여 현지에서의 불법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고, 국내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정현미 외 2014, 163). 따라서 불법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벌칙규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외국 현지에서의 인권침해적인 중개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결혼중개업법」제24조에서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여 법적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손경찬 2019, 334).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 중개업자보다 전문지식이나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요구한다. 국제결혼 관련 국내·외 법령과 직업윤리와 중개업 상담실무에 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장시간의 심화교육 과정이개설되어야 하고, 또한 주기적인 보수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¹⁵⁾ 현행「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시증 발급 기준 등) 참조.

3.4.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4.1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3년 8월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16)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 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하였다(제4조). 둘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 로자 고용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직업안 정기관의 장은 내국인의 우선채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제6조). 셋째, 고용노동부장 관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 관의 장은 인력부족의 확인을 받은 사용자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자중에서 적격자 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제7조 및 제8조). 넷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 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및 제18조), 다섯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보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 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보도록 하였다(제13조 및 제14조). 여섯째, 부칙

¹⁶⁾ 이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전, 1991년 법무부는 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시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가 단순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단순외국인력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여 시민단체,종교계,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여 정부의 정책의제로까지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2003년 8월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제정・공포되었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단순외국인력이 근로자의 신분으로처음부터 고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관리제도는 '고용허가제의 특례'로 통합되었다. 그 사이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산업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하여 같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7월 27일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단순외국인력의 활용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차용호 2015, 947-948).

제2조는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 간이 3년 미만인 자인 경우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로서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자인 경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17)

3.4.2 쟁점과 과제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제정된 이래 14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특히 2004년부터 '고용하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관리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 정주화(定住化) 방지라는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고용하가제'는 내국인고용 우선의 원칙과 국내고용시장의 우선적 고려 등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손윤석 2013, 3). 또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①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지 ② 노동허가제안 ③ 현행 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약갱신거절권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④ 다른 업종으로 변경시 제한적으로 단서 규정 추가 신설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였다(김남진 2016, 47-71; 김지혜 2016, 189-210; 손윤석 2013, 1-23; 이연옥 외 2016, 75-97; 노호창 2015, 193-222). 이러한 점에서 고용정책 분야의 탄력적 입법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마련되어야 하며, 그밖에 근로장소·시간·임금 등에 대한 노무관리로 인한 인권침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한편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사회에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18) 그밖에

¹⁷⁾ 출처: https://www.law.go.kr/ (검색일: 2019, 11, 28.).

¹⁸⁾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glaw.scourt.go.kr (검색일:

도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이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작업하는 도중에 단속반을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역시 근로자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되 는 범위가 문제된다(이철우 외 2019, 426).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강제퇴거의 대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2조의2에 의하면, ①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③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임금체불이나 작업도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통보의무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준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함 필요가 있다(이철우 외 2019, 426), 비록 불법체류라는 법규위반은 하였을 지라도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 권리마저 침해받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3.5. 난민의 인정절차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난민법

3.5.1 주요내용

「난민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난민,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2019. 11. 30.).}

¹⁹⁾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7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 12344 판결. 출처: glaw.scourt.go.kr (검색일: 2019. 11. 30.).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셋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넷째,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섯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 따라서 「난민법」 제정은 난민등의 처우와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그 의의 찾을 수 있다.

3.5.2 쟁점과 과제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 등을 신설 규정한 이후 2000년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2005년 9월이 돼서야 에티오피아출신 난민신청 자가 최초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0년 3월 19일에는 난민인정자 가운데에 최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²¹⁾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도에는 1,574명, 2014년에는 2,896명이, 2015년도에는 5,711명이, 2016년도에는 7,541명, 2017년도에는 9,942명, 2018년도에는 16,173명, 2019년 1월부터 9월말 까지 10,768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 9., 35).

1994년부터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누적 총계 난민신청자는 59,674명이며, 심사결과

²⁰⁾ 출처: https://www.law.go.kr/ (검색일 2019, 11, 29,).

²¹⁾ 법무부, 난민 韓국적 취득 첫 인정 난민 신분으로 귀화를 신청한 에티오피아인이 최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출처: (뉴시스 2010/03/19). https://news.v.daum.net/v/20100319084208389ff =o (검색일 2019. 12. 01.).

종료자는 26,205명이다. 그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145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129명이 난민인정(보호)를 받고 있는데, 난민신청자가 많은 국가는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등의 순이고, 난민인정자가 많은 국가는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순이며, 인도적체류자가 많은 국가는 시리아, 예멘,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등의 순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 9., 4 및 35-37). 따라서 난민신청자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가 국제협력과 공동발전 등을 도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2018년 예멘 난민 500여 명의 제주도 입국으로 한국 사회에 큰 이슈화가 된 것을 보면 이들의 국내 수용이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공포라고 했고, 누군가는 혐오라고 하면서 심지어 현행 「난민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문제이며, 특히 난민수용은 그 해당 국가의 재량이지만, 국제법과의 조화를 기하여 고려해야 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함께「난민법」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난민법」개정안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와 난민 불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적하였다.²²⁾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토론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재한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난민 등에 관한 개별 법률들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개별 법률들이 단기간에 마련되어 외국인정책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체계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에 맞물린 외국인유 입정책에 대한 빠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의 자율적 기제가 부족하여 법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최윤철 2016, 506).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이들의 존재에 더 주목하면서 이들과 함께 우리

^{22) &}quot;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강제송환금지 원칙' 무력화 우려." 출처: (법률신문 2019/11/21). http://bit.ly/2HXJBss (검색일: 2019. 12. 01.).

사회 공동체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법제의 정비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정책 및 실행계획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향적 온정주의와 시혜는 다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지나친 배려와 관심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오는 반다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나 교육을 제공하면서 그 외는 소득, 자산,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령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는 재한외국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우리 사회의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중에는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체인 만큼, 인권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편견과 차별이 없는 열린 한국사회를 조성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관련 법·정책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정책도 실행계획이 부실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는 물론실제 현장 속의 내·외국인 등 다문화 관련 법·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하나하나의 의견이 법·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합의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____

- 강명원. 2019.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프랑스 다문화 통합정책 관점에서-, 공법연구 20(3), 273-293.
- 권영설. 2009. 이주와 국적의 법과 다문화주의. 美國憲法研究 20(2), 1-57.
- 권영호. 2014.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0(1), 83-108.
- 김남진. 2016.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법학연구 16(2), 47-71.
- 김두년. 2014.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6, 95-117.
- 김정선·김재원. 20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경제와 사회 여름호(86), 305-344.
- 김종세. 2017.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법과 정책연구 17(3), 155-182.
- _____. 2019.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6(2), 71-94.
- 김지혜. 201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44(3), 189-210.
- 김태환. 2017.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국정관리연구 12(1), 127-161.
- 김학태. 2015.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9(1), 281-301.
- 김환학. 2016. 이민법체계의 형성과 문제점. 행정법연구 44, 159-189.
- 노호창. 2015.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연구 43, 193-222.
- _____. 2017.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이화젠더법학 9(2), 159-214.
- 박광동. 2016. 다문화 사회와 법제적 시사점. 법학연구 50, 59-81.
- 박길남. 2017.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정책형 성과정 연구. 정책개발연구 17(2), 95-118.
- 박승용. 2014.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연구 14(2), 107-130.

| 190 | 민족연구 75호

- 박흥식. 20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4(2), 95-139.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17, 이주민법연구, 서울: 경인출판사,
- 설동훈·한건수·박순영·심경섭. 2017.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 족부.
- 소라미. 2009.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한국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16(2), 43-74.
- 손경찬. 2019. 혼인중개계약의 효력과 국제결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법조 68(5), 310-353.
- 손영기.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 고찰. 인문과학연구 6, 109-131.
- 손윤석, 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49, 1-23.
- 송서순. 2009. 결혼이주여성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6, 289-320.
- 신선미. 2015. 이민자(다문화가족) 통합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법학연구 46, 269-296.
- 안진. 2013.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30(1), 41-74.
- 윤향희. 2015.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현대사회와 다문화 6(2), 127-149.
- 이경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32, 509-536.
- ____. 2013.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법적 규제. 한남법학연구 1(1), 1-24.
- 이승우. 2009.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23(3), 215-238.
- 이연옥·정영태. 2016. 외국인 고용법상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연구. 법과 인권교육연구 9(1), 75-97.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 209-236.
- 이철우 외. 2019. 이민법. 서울: 박영사.
- 이혜경 외. 2017.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 임영수. 2013.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58, 603-635.

■ 장선희. 2010.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민족연구 42, 83-102.

- 장정은. 20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관(官)주도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2(1), 1-25.
- 장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교정복지연구 20, 73-93.
- 전경근.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146(2), 293-314.
- 정기선·이선미·황필규 외. 2011.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정상기. 2018.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24(1), 221-261.
- 정현미 외. 2014. 결혼중개업법·제도에 대한 사회통합적 개선방안연구. 이화젠더법학 6(2), 159-196.
- 조상균 외. 2006. 다문화가정지원법제의 현황. 민주주의화 인권 8(1), 147-174.
- 차용호. 2015. 한국 이민법. 서울: 법문사.
- 최윤철. 2009.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라-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8(2), 147-173.
- _____. 2012.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1(2), 1-31.
- _____. 2016.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일감법학 33, 505-532.
- 최현대. 2011.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정책연구 11(1), 91-114.
- 표명환. 2009.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3), 97-120.
- 홍성필. 2007.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저스티스 96, 27-4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대법원 glaw.scourt.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경남도민일보 www.idomin.com

| 192 | 민족연구 75호

- 뉴시스 www.newsis.com
- 법률방송 www.lawtv.kr
- 법률신문 www.lawtimes.co.kr
- 시사저널 www.sisajournal.com
- 연합뉴스 www.yna.co.kr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 투고일: 2020.01.07.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21.

| Abstract |

A Study on the Present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ing to Multi-cultural Societies in Korea

Son Younggi (Daegu Catholic University)

We're now an era of 3 millio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Therefore, it is no longer strange to live and work with foreigners who have different skin color and different facial features in our society. Accordingly, individual laws on Korean nationals,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fugees were enacted. Particularly, they contributed to early adaptation and stable settlement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but our society still has more racial prejudice if it comes from poorer countries or foreigners with darker skin color than Korea. I've studied the major details of the related laws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also examined various problems such as treatment of foreigners who are still thought to be dissatisfie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nsisting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acceptance of refuge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sough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in our society and for the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Rule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